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719-01

Research Report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건축계획기준 개발

A study on the Architecture Planning Guideline and Evaluation of Community Facilities Demonstration Project supporting Rural Elderly

2014. 12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건축계획기준 개발”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연 구 책 임 자 : 김 진 환
연 구 원 : 이 정 환
윤 상 헌
이 일 구
위 촉 연 구 : 박 중 신((주)마을제작소)
양 금 석(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 승 근(강동대학교)
도 현 학(영남대학교)
박 선 욱(경남대학교)
정 건 채(남서울대학교)
조 원 석(관동대학교)
이 을 규(한경대학교)
남 해 경(전북대학교)
장 택 주(전남도립대학교)
길 종 원(조선이공대학교)

< 요 약 >

□ 연구과제명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건축계획기준 개발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 농촌 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도시지역과의 소득격차 확대, 다문화 가정의 증가, 핵가족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급증 등 사회 환경변화와 함께 복지 부분에서 취약계층이 확연히 증가하는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음

○ 농촌 지역 고령자의 생활여건은 주택 노후화, 주택개량 및 거주비용 부담 등에 따른 주거환경 열악,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불규칙적이고 불균형적인 식사로 영양불균형, 목욕시설 및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 저하 등 주거·영양·위생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농촌의 여건변화에 따른 주거·영양·위생 등 현실적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지역 거주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농촌 공동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농촌 고령자 노인인구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4년도 시범사업으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함

○ 따라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향후 농촌지역에 양질의 공동시설 확충·보급을 위하여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한 모니터링·평가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향후 지자체 사업 확산과 자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농촌 환경에 적합하며 안전하고, 편리하고, 아

름다운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 확충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이를 고려한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발굴함으로써 향후 농촌지역에 양질의 공동시설을 확충하고 지자체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지원함

1.2 연구 내용

○ 농촌 공동시설 관련 이론적 고찰

- 농촌 공동시설의 (유형별)개념 및 필요성
- 농촌 공동시설 관련 제도 검토
-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의 주요내용 검토
-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관련 사례

○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모니터링의 목적, 방법 및 내용
- 부문별·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시범사업 주민만족도 조사
- 시범사업 우수사례

○ 단계별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 사업 추진절차 및 사업 준비, 사업 선정, 계획수립, 시공, 준공 및 운영·관리의 각 단계별 가이드라인 제시

2. 농촌 공동시설 관련 이론적 고찰 및 시범사업 검토

2.1 농촌 공동시설의 유형별 개념

○ 본 연구에서 농촌 공동시설은 시범사업의 유형인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을 중심으로 유형별 개념을 검토함

○ 공동생활홈은 “고령자의 공동체적 생활을 통하여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주거유형으로, 노인복지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노유자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독립거주형, 독립침실형, 공동거주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공동급식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마을 또는 일정의 공동체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로서 조리 및 식사제공을 위한 설비를 갖춘 시설”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식사형태에 따라 좌식형과 테이블형으로 구분됨

○ 작은목욕탕은 “남녀가 격일제 등의 방식을 통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작은 규모의 목욕탕으로, 욕탕, 샤워기, 탈의실 등 목욕서비스 설비를 마련하고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이용 및 건축형태에 따라 남녀혼용형과 남녀구분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공동생활홈의 유형 및 장단점 >

유 형	독립거주형	독립침실형	공동거주형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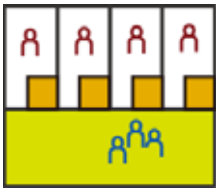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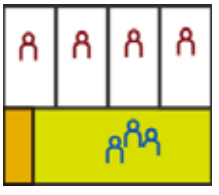	
비고	□ 개인생활공간 ■ 공동생활공간 ■ 부엌		
설명	시설 내에서 취침과 취사를 개별적으로 영위하는 유형	시설 내에서 취침은 개별적으로 하나 취사는 공동으로 영위하는 유형	시설 내에서 취침과 취사 모두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유형

< 공동급식시설의 유형 및 장단점 >

유 형	좌식형	테이블형
사례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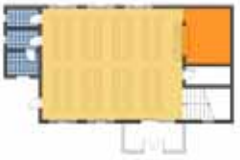
비고	식당 주방 화장실	
설명	좌식의 밥상에서 식사행위를 영위하는 유형	입식의 테이블에서 식사행위를 영위하는 유형

< 작은목욕탕의 유형 및 장단점 >

유 형	남녀혼용	남녀구분
사례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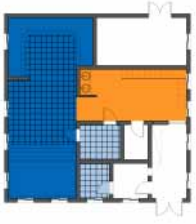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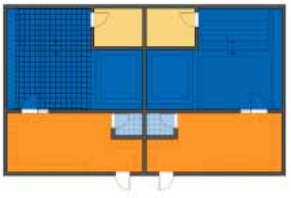
비고	탕 찜질방 탈의실 화장실	
설명	남녀구분 없이 하나의 목욕공간을 요일제 및 격일제로 운영하는 유형	남녀를 구분하여 목욕공간을 상시 2개로 운영하는 유형

2.2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1) 사업의 개요

○ 추진배경

- 농식품부 국정과제로 고령자 지원 사업 적극 추진
  · 국정과제(52.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 마을회관 등 리모델링 및 급식시설 설치 지원, 공동생활 홈 조성
- 농촌지역의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의 지원을 통해 농촌 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4년 시범사업 추진

○ 사업기간 : ‘14년 3월~12월

-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건축공사 등 1년 내에 완료

○ 사업비 : 설계비, 건축공사비, 감리비 및 안전진단 비용을 포함하며, 부지구입비는 제외

- 공동생활홈 120백만원/개소
- 공동급식시설 50백만원/개소
- 작은목욕탕 200백만원/개소

○ 지원 조건 : 지자체 경상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주요내용

- 농촌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 유형인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설치 지원

2) 시범사업 추진현황

○ 전국단위 공모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14년 시범사업에서는 총 75개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

- 75지구(공동생활홈 35, 공동급식시설 26, 작은목욕탕 14)

< 시도별 시범사업 대상지 현황 >

시도	계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계	75	35	26	14
세종	1	-	-	1
경기	3	-	1	2
강원	3	3	-	-
충북	2	-	2	-
충남	4	2	1	1
전북	14	7	7	-
전남	10	6	2	2
경북	19	7	8	4
경남	18	10	4	4
제주	1	-	1	-

3.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3.1 시범사업 모니터링

○ 모니터링은 시범사업의 수정·보완 필요사항 등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촌 지역에 양질의 공동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며 주요내용은 각 단계별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

< 시범사업 모니터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요내용 >

부문	문제점	개선방안
사업 신청 및 대상지 선정	○사업신청 시 사전교육 및 담당부서 한정 필요 - 기존 마을회관 및 경로당 소관부서에서 사업을 담당하여 농촌의 여건 및 건축 관련 이해도 부족	○사전교육 실시 ○지자체 농정관련 부서 등으로 담당부서 권장
	○주민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역량강화 및 주민교육 필요성 - 사업의 규모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주민요구의 과다 문제 발생	○주민협의체의 조기구성 ○사업홍보 및 주민이해도 향상을 위한 주민교육 추진
	○대상지 선정과정의 현장실사 필요성 - 실제여건과 맞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 - 리모델링이 신축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추진 일정 지체	○대상지 선정시 전문가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 ○리모델링, 신축 등 사업유형은 현장실사를 거쳐 결정
	○예산편성 및 계획수립의 조기집행을 위한 방안 마련 - 추경예산 편성 후 사업추진으로 인한 지연	○전년도에 충분한 사전조사 후 사업량 및 사업대상지 선정 ○예산확보 현황을 고려한 지자체 검토 후 대상지 선정
추진 주체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 - 경로당 중심으로 구성되어 전체주민의 의견수렴에 한계	○마을리더를 주축으로 한 협의체를 가능한 조기에 구성하고 선정기준에 반영
계획 수립 업체 선정	○시군 관행에 따른 설계업체 선정으로 인한 사업 이해도 및 품질 저하 - 시군 지역의 건축사가 수의계약함으로 인한 품질저하	○사전 기획설계를 도입하여 설계 적용 ○지명경쟁입찰 등 효율적 업체선정 방식을 가이드라인에 제시하여 활용 유도
총괄 계획가 운영	○총괄계획가의 선정 시기 - 대상지 선정 후 위촉에 따른 지역여건 파악과 일정 어려움	○선정 이전 사전 위촉하여 대상지 선정 및 기획설계 과정에서 총괄계획가 적극 활용
	○총괄계획가의 권한과 역할 강화 필요 - 형식적인 자문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문검토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	○기획설계 단계부터 총괄계획가가 참여하고 설계과정에서 변경은 총괄계획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 유도
운영 및 관리	○지속적 운영·관리 방안 마련 미흡 - 사업시행 후 시설물의 지속적 사용에 대한 운영방안 마련 미흡	○해당 지자체의 지원 등을 계획안에 반영 ○입주예정자 확보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이 수립된 대상지에 한정하여 대상지 선정 ○지자체의 지속적인 운영점검 및 확인
사업비 적절성	○적정수준의 사업비 산출과 규모 및 유형에 따른 차등지원 - 실질적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에 어려움 (친환경,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추가 부대비용 발생 등)	○적정 사업비 산출 ○시설과 관련된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활용 계획을 검토하고 연계하여 사업추진
	○ 신축으로 계획시 사업비 부족 및 사업추진이 어려운 문제 발생	○사업대상지 조건은 리모델링으로 한정하되, 대상지 여건을 감안하여 신축으로 계획시 지자체의 사업예산 확보 필요

< 지자체 담당자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주요내용 >

부문	문제점 및 애로사항
사업기간 및 준비기간 부족	·지자체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지연 및 기간부족
	·설계 및 설계변경 단계에서 관계자 의견조율 및 일정조절이 어려워 사업 장기화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지 물색 어려움과 준비기간 부족
사업비 부족	·신축, 무장애디자인, 기타 필요설비 등 현실적인 사업비 부족 문제
운영 및 관리	·시설비에 한하여 보조됨으로써 운영·관리에 대한 일정기간 보조 필요
기타	·담당부서의 일관성 문제(주민복지과 등 전문성 부족)
	·총괄계획가 자문 어려움(원거리, 일정조절이 힘듦)

3.2 시범사업 평가

○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14년 농식품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추진 대상지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혜자인 농촌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효과 및 사업성과를 정량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향후 각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경우 참고함으로써 농촌지역에 양질의 공동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기여함

○ 조사대상은 '14년 시범사업 준공 대상지 총 20개소, 각 시설이용자 및 거주자 총 255명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공동생활홈 5개소, 공동급식시설 13개소, 작은목욕탕 2개소
- 공동생활홈 21명(거주자), 공동급식시설 195명(이용자), 작은목욕탕 39명(이용자)

○ 종합 만족도 결과 : **78.8%**

- 공동생활홈 : **81.2%**, 공동급식시설 : **77.9%**, 작은목욕탕 : **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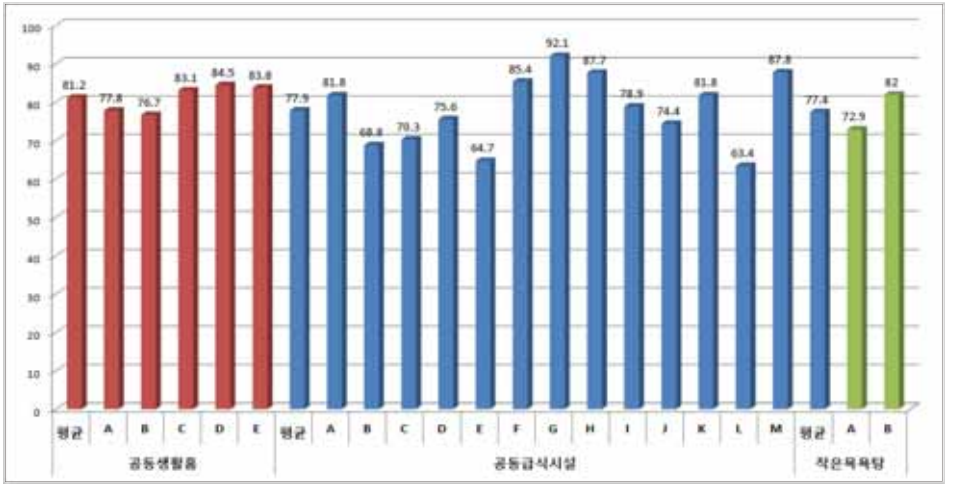

< 유형별·대상지별 종합 만족도 >

< 공동생활홈 부문별 만족도 결과 >

대분류	중분류	평가항목	만족도(%)
거주	입지조건	입지조건 및 접근성	96.2
	거주만족감	내부공간 및 거주 만족도	91.4
	소 계		**93.8**
정서	쾌적성	내부공간의 개방감 및 쾌적성	90.5
	친밀감	거주자 간 친밀감에 대한 만족도	95.2
	소 계		**92.9**
냉난방	난방	겨울철 난방비 변화 및 만족도	88.0
	냉방	여름철 냉방비 변화 및 만족도	100.0
	소 계		**88.0**
영양 및 위생	식사	식사 횟수(평균)의 변화 및 만족도	87.6
	목욕	목욕횟수의 변화 및 만족도	74.3
	청소	청소횟수의 변화 및 만족도	78.1
	세탁	세탁횟수의 변화 및 만족도	61.0
	소 계		**75.2**
유지 관리	거주비용	거주비용의 변화 및 만족도	82.9
	복지서비스	지자체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75.2
	운영방식	공동시설 운영방식의 전반적 만족도	84.8
	소 계		**81.4**

< 공동급식시설 부문별 만족도 결과 >

대분류	중분류	평가항목	만족도(%)
시설	입지조건	입지조건 및 접근성	79.2
	내부공간구성	식당 및 주방의 규모	86.9
		식당 및 주방의 위치	87.9
	소 계		84.6
정서	쾌적성	내부공간의 쾌적성	86.4
	친밀감	이용자 간 친밀감에 대한 만족도	89.2
	소 계		87.8
영양	식사	식사 횟수(평균)의 변화 및 만족도	76.2
		식사 인원(평균)의 변화 및 만족도	82.5
		반찬의 가지 수(평균) 변화 및 만족도	67.7
		음식의 질(평균) 만족도	79.5
	식비	식사 비용(평균)의 변화 및 만족도	68.4
	소 계		74.2
안전	안전성	사고 및 위험에 대한 안전성	85.8
	유니버설디자인	시설이용의 편리성	88.0
	소 계		86.9
유지관리	복지서비스	지자체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71.6
	운영비용	공동시설 운영비용에 대한 만족도	63.4
	소 계		67.5
시설이용	시설이용	전반적 시설 이용 만족도	83.8
	소 계		83.8

< 작은목욕탕 부문별 만족도 결과 >

대분류	중분류	평가항목	만족도(%)
시설	입지조건	입지조건 및 접근성	79.0
	내부공간구성	욕실의 규모	71.8
		욕탕의 크기	69.7
		탈의실의 규모	72.3
		휴게공간의 만족도	71.3
	정서	내부공간의 개방감 및 쾌적성	79.5
		이용자 간 친밀감에 대한 만족도	76.9
	소 계		74.4
위생	목욕	목욕횟수(월평균)의 변화 및 만족도	78.5
	청결	시설 내 위생상태 만족도	84.1
	수질	수질에 대한 만족도	85.6
	소 계		81.7
안전	안전성	안전사고 및 위험에 대한 안심도	78.5
	유니버설디자인	시설이용의 편리성	79.0
	소 계		78.8
유지관리	운영유지비	목욕이용료의 적정성	81.5
	복지서비스	지자체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73.8
	운영방식	운영방식 만족도	78.5
	소 계		77.9

4. 단계별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결과를 토대로 각 단계별 사업추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사업비 확보, 사업준비, 사업신청, 사업선정, 사업계획수립, 시공, 준공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주요내용을 제시함

< 사업 추진절차 >

단계	항목	주체	주요 내용	사업추진과정 주요 체크리스트
사업비 확보 (별도)	사업비 확보	시·군·구	국비 확보	(농식품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지방비 확보	도, 시·군 지방비 확보
※ 사업비 확보 단계는 재원(국비·지방비)에 따른 일정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별도로 추진				
사업준비 사업준비	추진체계	시·군·구	지자체 부서간 추진 체계 구축	전담 부서 및 협조 부서 지정 / 관련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			
	기본계획	시·군·구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확보 등을 고려, 시설 조성 규모·물량, 주요 사업 대상지 물색, 프로그램 발굴·검토, 운영계획 모색 등 주요내용 포함
	⬇			
	설명회 및 주민협의	읍·면·동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사업 추진 협의	사업 주요내용 설명 / 조성시설, 내부시설, 운영방식, 지원내용 등에 대한 주민협의 (필요시) 총괄계획가의 위촉 및 활용
	⬇			
	사업 준비	마을	사업 부지 마련 주민 협의체 구성 주민 역량강화	마을 또는 지자체 소유의 부지 확보 및 마련 마을리더 등을 중심으로 주민 협의체 구성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 현장포럼 등 활용 전문가 교육, 선진지 답사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 추진
	⬇			
사업선정	심사 및 타당성 검토	시·군·구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현장 실사	현장실사 계획수립 및 실사 진행
			사업 타당성 검토	입지조건 / 사업 방식 / 건물 및 내부 시설 규모 / 주민 역량 / 사업예산 / 추진 가능성 등 종합 검토
	⬇			

단계	항목	주체	주요 내용	사업추진과정 주요 체크리스트
사업계획수립	(필요시) 기획 설계	시·군·구	기획 설계안 마련	세부설계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획설계안 작성
	사업계획 수립	시·군·구	업체 선정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업체 선정 / 선정방식 및 기준 마련
		업체	시행계획 수립	건축물 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근거,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사업계획 검토	시·군·구	시행계획 검토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배리어프리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여부
				내·외부 건축자재의 적정여부
				구조계획(안전도 포함)의 적합여부
				부대 설비계획의 적정여부
				예정 공사비(원가계산 포함)의 적정여부
				운영 및 관리계획의 적정여부
	주민 협의	읍·면·동	주민 협의	수립된 시행계획 주요 내용 설명, 주민 협의
	사업계획 승인	시·군·구	사업계획승인	
시공	시공계획 수립	시·군·구	발주	시공업체 선정 / 선정방식 및 기준 마련
		업체	시공계획 수립	시행계획에 근거한 계획수립
		시·군·구	시공계획 검토	시공계획 및 공사비 집행계획 적합여부 등
	시공	시·군·구	시공	시공 진행과정 검토 및 체크
			준공(사용승인)	준공검사 체크리스트 작성
입주 등	입주·사용 및 평가	시·군·구	입주 및 사용	시행계획에 근거한 입주 및 사용자 선정·사용
			연계 프로그램 지원	각 부처 및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지원
			거주(사용) 후 평가	거주자 및 사용자의 거주(사용) 후 평가
운영 및 유지 관리				

5. 결 론

○ 농촌 지역은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독거노인이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생활여건은 주거·영양·위생 여건이 열악한 실정임. 이러한 시점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의 추진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동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농촌의 복지향상과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사업 준비기간의 부족, 주민의 사업 이해도 부족, 사업비의 한계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시설조성 미흡, 지자체의 사업비 확보 어려움과 대상지 여건에 따른 전체적인 사업기간 지연, 운영·관리 방안 마련 미흡 등을 들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시범사업은 지역의 개별 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중앙정부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공동시설 확충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지차체가 자율성을 갖고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추진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지자체 자체 예산 활용 또는 중앙정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관련 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향후 농촌지역의 여건변화와 함께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수요에 미리 대비하고 관심도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한편, 시범사업의 추진 상 문제점으로 시설 조성 이후의 운영·관리 방안 마련과 실제 프로그램 연계가 미흡한 점은 향후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며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지자체의 시설 준공 이후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적 사항들과 연계프로그램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summary

1. Title :

A study on the Architecture Planning Guideline and Evaluation of Community Facilities Demonstration Project supporting Rural Elderly

2. Research Period : February, 2014 ~ December, 2014

3. Background & purpose of study

- The rural area is being intensified declining population and aging gradually, expansion of the income gap with urban area, increasing elderly living alone especially increasing vulnerable social groups related to welfare section.
- Particularly, the living conditions of rural elderly such as residence, nutrition and sanitation are inferior situation due to housing deterioration, disproportionate meal and irregular, degradation of bathing facilities penetration rate.
- Henc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pushes ahead “Community Facilities Demonstration Project supporting Rural Elderly” in 2014, within needs for welfare improvement of rural elderly.
- In this study, we deduce improvement plan and project implementation problems through objective monitoring and assessment of demonstration project, excavate the typical guidelines for construct the high quality of community facilities to rural area and support the effective promotion of local government.

4. conclusion

- Implemantaton of “Community Facilities Demonstration Project supporting Rural Elderly” for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of rural elderly is appropriate. We look forward to promote the residence satisfaction and welfare of the rural areas through constructed a sustainable community facilities.
- The Problems revealed in process the demonstration project are lack of project comprehension for resident, lack of high quality construction facilities, difficulties of securing expense to local government and overall project duration delay and lack of operational management plans prepared etc. For improve these problems in this study, we present a guideline to effective project implementation.
- We expect that improve the demands for residents about elderly friendly joint expansion of facilities with changing conditions in local government moreover have to prepare on demands and need to be increase the attention.

목 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1. 배경 및 필요성 ····· 3
2. 연구 목적 ····· 4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5
1. 연구 내용 ····· 5
2. 연구 방법 ····· 6

제2장 농촌 공동시설 관련 이론적 고찰 ····· 7
제1절 농촌 공동시설의 개념 및 필요성 ····· 9
제2절 농촌 공동시설의 유형별 개념 ····· 13
1. 공동생활 홈 ····· 13
2. 공동급식시설 ····· 16
3. 작은목욕탕 ····· 18
제3절 농촌 공동시설 관련 제도 검토 ····· 21
1. 기존 정부의 지원제도 및 정책 ····· 21
2.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 26
제4절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관련 사례 ····· 33
1. 공동생활홈의 사례 ····· 33
2. 공동급식시설의 사례 ····· 38
3. 작은목욕탕의 사례 ····· 41
4. 사례분석의 시사점 ····· 42

제3장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45
제1절 시범사업 모니터링 ····· 47
1. 모니터링의 개요 ····· 47
2. 부문별·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8
제2절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평가 ····· 55
1. 시범사업 평가의 목적 및 내용 ····· 55
2. 주민만족도 조사 ····· 55
3. 시범사업 우수사례 ····· 98

제4장 단계별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 111
제1절 사업 추진절차 ····· 113
제2절 단계별 가이드라인 ····· 115
1. 사업비 확보(시·군·구) 단계 ····· 115
2. 사업준비 단계 ····· 123
3. 사업선정 단계 ····· 133
4. 사업계획 수립 단계 ····· 135
5. 시공 단계 ····· 154
6. 입주 및 평가 ····· 158
7. 운영 및 관리 단계 ····· 160

제5장 결론 및 제언 ····· 165

< 부록 > 고령자 공동시설 연계 가능 사업 ····· 169

<표 차례>

(표 2-1) 공동시설의 법적 정의 ····· 9
(표 2-2) 공동생활홈의 개념 ····· 14
(표 2-3) 지자체별 공동생활홈 현황 ····· 15
(표 2-4) 공동생활홈의 유형 및 장단점 ····· 15
(표 2-5) 공동급식시설의 개념 ····· 17
(표 2-6) 지역별 공동급식시설 현황 ····· 17
(표 2-7) 공동급식시설의 유형 및 장단점 ····· 18
(표 2-8) 작은목욕탕의 개념 ····· 19
(표 2-9) 지역별 작은목욕탕 시설현황 ····· 19
(표 2-10) 작은목욕탕의 유형 및 장단점 ····· 20
(표 2-11) 기초생활기반확충 세부내용 예시 ····· 23
(표 2-12) 사업유형별 지원 금액 ····· 23
(표 2-13)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관련사업 ····· 25
(표 2-14) 시도별 시범사업 대상지 현황 ····· 28
(표 2-15) 시범사업 유형별 건축형태 및 운영주체 ····· 30
(표 2-16) 월문리 공동생활홈 개요 ····· 34
(표 2-17) 부흥리 공동생활홈 개요 ····· 37
(표 2-18) 완주 학동마을 공동급식소 개요 ····· 39
(표 3-1) 단계별 모니터링 주요내용 ····· 48
(표 3-2) 시범사업 모니터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요내용 ····· 49
(표 3-3) 지자체 담당자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주요내용 ····· 50
(표 3-4) 주민만족도 조사 대상지 ····· 56
(표 3-5) 종합 만족도 결과 ····· 59
(표 3-6) 공동생활홈 부문별 만족도 결과 ····· 61
(표 3-7) 공동급식시설 부문별 만족도 결과 ····· 62
(표 3-8) 작은목욕탕 부문별 만족도 결과 ····· 63
(표 3-9) 입지조건 만족도 ····· 64
(표 3-10) 거주 만족감 ····· 65

(표 3-11) 쾌적성 만족도 ····· 66
(표 3-12) 친밀감 만족도 ····· 67
(표 3-13) 냉·난방비 비용 만족도 ····· 68
(표 3-14) 영양 및 위생 부문 만족도 및 변화 횟수 ····· 69
(표 3-15) 거주비용 만족도 ····· 70
(표 3-16) 복지서비스 만족도 ····· 70
(표 3-17) 운영방식 만족도 ····· 71
(표 3-18) 입지조건 만족도 ····· 72
(표 3-19) 식당 및 주방의 규모 만족도 ····· 73
(표 3-20) 식당 및 주방의 위치 만족도 ····· 74
(표 3-21) 쾌적성 만족도 ····· 75
(표 3-22) 친밀감 만족도 ····· 76
(표 3-23) 영양 부문 만족도 및 변화 ····· 78
(표 3-24) 안전성 만족도 ····· 79
(표 3-25) 편리성 만족도 ····· 80
(표 3-26) 복지서비스 만족도 ····· 81
(표 3-27) 운영 비용 만족도 ····· 82
(표 3-28) 전반적 시설이용 만족도 ····· 83
(표 3-29) 입지 조건 만족도 ····· 84
(표 3-30) 욕실의 규모 만족도 ····· 85
(표 3-31) 욕탕의 크기 만족도 ····· 85
(표 3-32) 탈의실의 규모 만족도 ····· 86
(표 3-33) 휴게 공간 만족도 ····· 87
(표 3-34) 쾌적성 만족도 ····· 88
(표 3-35) 친밀감 만족도 ····· 88
(표 3-36) 목욕횟수 만족도 ····· 89
(표 3-37) 목욕횟수 만족도 및 변화 ····· 90
(표 3-38) 청결 만족도 ····· 90
(표 3-39) 수질 만족도 ····· 91
(표 3-40) 안전성 만족도 ····· 92

(표 3-41) 편리성 만족도 ····· 93
(표 3-42) 이용료 만족도 ····· 93
(표 3-43) 복지서비스 만족도 ····· 94
(표 3-44) 운영방식 만족도 ····· 95
(표 3-45) 응답자 성별 비율 ····· 96
(표 3-46) 응답자 연령대 비율 ····· 96
(표 3-47) 응답자의 역할 비율 ····· 97
(표 3-48) 서화2리 공동생활홈 개요 ····· 100
(표 3-49) 청송 세장마을 공동급식시설 개요 ····· 105
(표 3-50) 월야면 작은목욕탕 개요 ····· 109
(표 4-1) 사업 추진절차 ····· 113
(표 4-2) 기본계획 수립 관련 체크리스트 ····· 124
(표 4-3) 토지 및 건축물의 임대 관련 참고 법령 ····· 129
(표 4-4) 현장실사 점검표(예시) ····· 134
(표 4-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기준단가(참고) ····· 151
(표 4-6) 욕실바닥 마감재 참고자료 ····· 152
(표 4-7) 공동시설의 용도 검토 ····· 158
(표 4-8) 공동시설 지자체 지원내용 권장사항 ····· 163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5
<그림 2-1>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의 기능 ····· 11
<그림 2-2> 농촌의 고령자 및 독거가구의 비중 ····· 11
<그림 2-3> 농촌의 영향 및 위생여건 ····· 12
<그림 2-4> 시범사업의 추진체계 ····· 29
<그림 2-5> 공동생활홈 거주유형 ····· 31
<그림 2-6> 공동생활홈 조성 마을의 규모 ····· 31
<그림 2-7> 운영비 조달(공동급식시설) ····· 32
<그림 2-8> 운영비 조달(작은목욕탕) ····· 32
<그림 2-9> 월문리 공동생활홈 평면구성 ····· 35
<그림 2-10> 월문리 공동생활홈 내외부 현황 ····· 35
<그림 2-11> 부흥리 공동생활홈 평면구성 및 변경 전후 사진 ····· 37
<그림 2-12> 부흥리 공동생활홈 내외부 현황 ····· 38
<그림 2-13> 학동마을 공동급식소 평면구성 ····· 40
<그림 2-14> 학동마을 공동급식소 내외부 현황 ····· 40
<그림 2-15> 안성면 작은목욕탕 내외부 현황 ····· 41
<그림 3-1> 유형별·대상지별 종합 만족도 ····· 60
<그림 3-2> 유형별·부문별 만족도 ····· 64
<그림 3-3> 거주 전·후 난방비 비용 변화 ····· 68
<그림 3-4> 입주 전·후 거주비용 변화 ····· 70
<그림 3-5> 응답자 성별 ····· 97
<그림 3-6> 응답자 연령대 ····· 97
<그림 3-7> 응답자의 역할 ····· 97
<그림 3-8> 서화2리 공동생활홈 평면구성 ····· 101
<그림 3-9> 서화2리 공동생활홈 내외부 현황 ····· 102
<그림 3-10> 세장마을 공동급식시설 내외부 현황 ····· 105
<그림 3-11> 세장마을 공동급식시설 평면구성 ····· 106
<그림 3-12> 월야면 작은목욕탕 평면구성 ····· 108
<그림 3-13> 월야면 작은목욕탕 내외부 현황 ····· 110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배경 및 필요성

○ 농촌 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도시 지역과의 소득격차 확대, 다문화 가정의 증가, 핵가족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급증 등 사회 환경 변화와 함께 복지 부분에서 취약계층이 확연히 증가하는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음

- 농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 138만명(14.7%)에서 2010년 183만명(20.9%)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독거가구의 비율 또한 2000년 28만 가구(9.2%)에서 2010년 44만 가구(13.3%)로 증가함[1)]

○ 농촌 지역 고령자의 생활여건은 주택 노후화, 주택개량 및 거주비용 부담 등에 따른 주거환경 열악,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불규칙적이고 불균형적인 식사로 영양불균형, 목욕시설 및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 저하 등 주거·영양·위생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

- 국토연구원(2009)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2.1%로 도시 지역의 7.7%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기름보일러 사용 비율이 높아(49.1%) 난방비는 도시지역의 3배(농촌경제연구원, 20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양측면에서는 1인 1일당 총 식품 섭취량(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2008)이 농촌 지역은 1,245.4g, 도시 지역은 1,308.8g으로 도시에 비해 열악하며, 위생 여건은 목욕시설 없는 가구(통계청, 2010년)가 농촌 지역은 2.1%, 도시 지역은 0.4%로 열악한 상황임

○ 따라서 이러한 농촌의 여건변화에 따른 주거·영양·위생 등 현실적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지역 거주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한편, 농촌 지역에는 기존의 마을회관, 경로당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시설이 존재하고 있으나, 시설 조성 후 20년~30년 이상이 경과되어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고 이용이 불편하여 제 기능을 상실한 채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을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로 기능을 부여한다면, 고령자의 생활여건 개선 및 공동시설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임

○ 이에 농촌 공동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농촌 고령자 노인인구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4년도 시범사업으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을 추진함

○ 따라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향후 농촌지역에 양질의 공동시설 확충·보급을 위하여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한 모니터링·평가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향후 지자체 사업 확산과 자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농촌 환경에 적합하며 안전하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 확충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이를 고려한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발굴함으로써 향후 농촌지역에 양질의 공동시설을 확충하고 지자체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지원함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농촌 공동시설 관련 이론적 고찰,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별 사업추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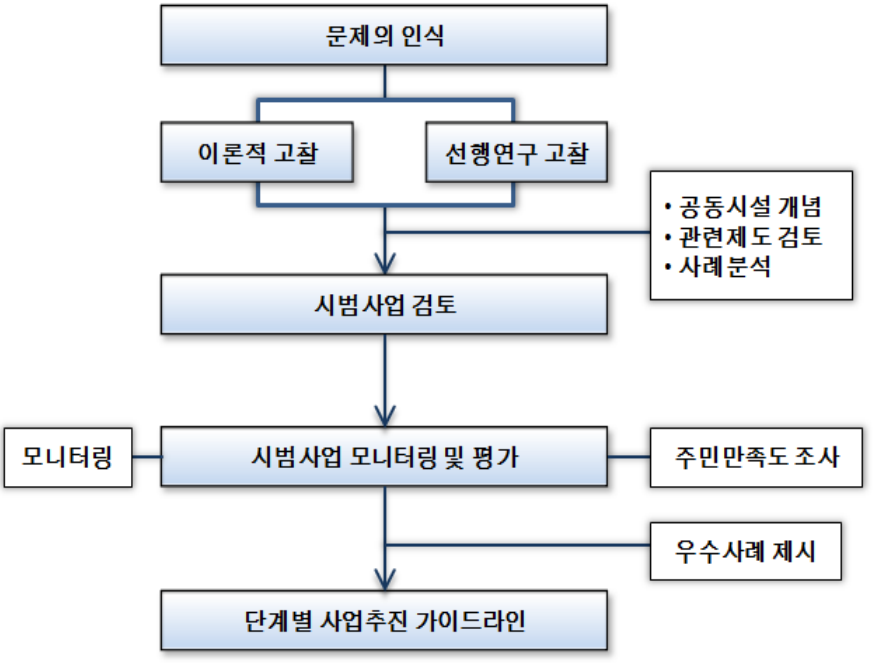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농촌 공동시설 관련 이론적 고찰
- 농촌 공동시설의 (유형별)개념 및 필요성
- 농촌 공동시설 관련 제도 검토
-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의 주요내용 검토
-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관련 사례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모니터링의 목적, 방법 및 내용
- 부문별·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시범사업 주민만족도 조사
- 시범사업 우수사례

○ 단계별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 사업 추진절차 및 사업 준비, 사업 선정, 계획수립, 시공, 준공 및 운영·관리의 각 단계별 가이드라인 제시

2. 연구 방법

○ 본 연구에서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국 75개 대상지(3개 유형 :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를 범위로 하여 현지자료를 수집·분석함

○ 특히, 객관적이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해 시범사업 대상지 도별 1~2명씩 선정하여 운영되는 총괄계획가를 본 연구의 참여연구진으로 위촉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함

○ 시범사업의 평가는 실제 조성된 각 유형별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고령자 주민의 시설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며,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한 유형별 우수사례를 발굴·제시함

○ 시범사업 추진과 향후 지자체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시범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반영한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함

제 2 장

농촌 공동시설 관련 이론적 고찰

제2장 농촌 공동시설 관련 이론적 고찰

제1절 농촌 공동시설의 개념 및 필요성

○ 농촌 공동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는 다양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을 총칭함

(표 2-1) 공동시설의 법적 정의

법명	정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12.18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과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13.6.4. 제정)	(제2조 정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공동작업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문화산업진흥시설지정 및관리에관한고시 ('09.9.1. 일부개정)	(제3조 지원시설 등의 범위)입주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장비실 2. 회의장 또는 전시장 및 휴게실 3. 문화산업 관련 인력교육 및 양성에 필요한 시설 4. 기타 문화산업관련 사업자 등의 사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공주시 마을 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지침 ('12.10.26)	(제2조 정의) 공동이용시설은 마을회관, 노인회관(경로당)을 말한다.

자료) 김진환 외,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농촌 공동이용시설물 리모델링 방안,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3

○ 선행연구에서는 고령자 공동시설에 대하여 고령자 노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시설측면과 주거측면에서 정의내리고 있음(이기용, 2015)

- 시설측면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공공, 의료, 케어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거주하는 공공 및 민간의 복지시설로 정의하며,
- 주거측면에서는 고령자의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공간으로 정의하였음

○ 또한 박헌춘(2011)은 노인의 일상생활, 휴식, 커뮤니케이션, 여가, 서비스 등의 기능을 통한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주거공간의 역할을 고령자 공동시설이 담당한다고 하였으며, 공동생활주거(Community Living Home)로서의 고령자 공동시설은 “주민이 하나의 공간(장소)에 공통으로 모여 사는 주택과 마을회관, 노인정, 경로당 등을 공동주거로 이용하는 건축물”이라고 정의함

○ 한편, 최근 농촌마을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서비스 수요의 증대로 농촌지역의 공동시설은 농촌 고령자의 생활편의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공동시설에 도입하고 확충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기능으로는 일상생활 영위 등의 거주기능, 휴식기능, 고령자의 모임 및 담화 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능, 오락, 창작, 체조 등의 여가기능, 식사와 건강유지를 위한 서비스 기능 등을 말하며, 각 기능별 목적달성을 위해 단일 공동시설 또는 여러 개의 기능별 공동시설을 설치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그림 2-1>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의 기능

○ 특히 최근 농촌 지역은 고령자 및 독거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영양·위생 등 기본적인 삶의 질 유지에 취약한 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관계 단절과 질병 등으로 인한 우울증, 자살, 고독사가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농촌 지역의 고령화율은 2010년 20.9%로 2000년 14.7%에 비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독거노인 가구는 농촌 지역이 13.3%로 도시 지역 4.5%에 비해 약 3배 이상 많은 가구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농촌 지역 연령별 인구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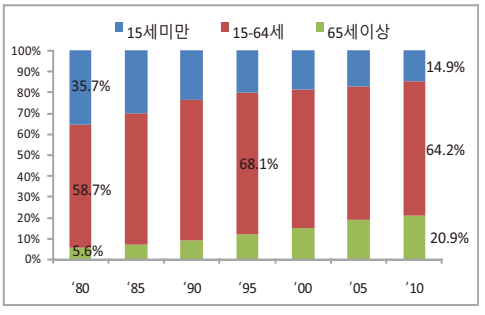

< 도시와 농촌간 가구별 비중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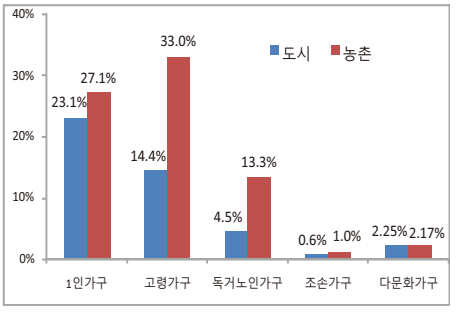

<그림 2-2> 농촌의 고령자 및 독거가구의 비중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거부문은 주택 노후화, 수선 및 거주 비용 부담으로 겨울철 난방을 실시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농촌 고

령자들이 생활하고 있음

-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09, 국토연구원) : 농촌 22.1%, 도시 7.7%
- 기름보일러 사용 비율이 높아(49.1%) 난방비는 도시지역의 3배('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영양부문은 불규칙적인 식사로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한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위생 부문 또한 목욕시설·수세식 화장실 보급률이 낮아 위생 여건이 불량한 상황임

- 농촌 노인의 식사습관('13, 농촌경제연구원) : 불규칙적인 식사가구 비율 24.3%, 이 중 단독 독거가구 비율은 32.8%, 부부가구 비율은 11.0%임
- 건강수준('12, 통계청) : 농촌주민 43.8%가 나쁘다고 생각(도시 24.3%)

<30년 이상 주택 비율> <농촌 노인의 가구형태별 식사습관> <목욕시설 및 재래식 화장실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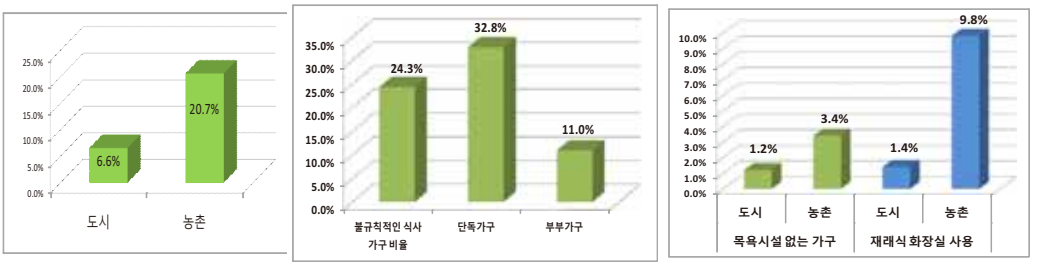

<그림 2-3> 농촌의 영향 및 위생여건

○ 이러한 여건 하에 농촌 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부문에서의 대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을 갖춘 공동시설의 조성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령자 공동시설은 외로움·불안감 감소 등의 정서적 측면 뿐만 아니라, 건강·경제·환경·안전 등의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2)]

- 정서적 측면 : 외로움 해소 81.5%, 의지하고 대화할 상대가 생겼음 94%
- 건강적 측면 : 세끼 끼니 챙겨 먹음 90%, 음식 골고루 섭취 81%

2) 이화여대, 독거노인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천모형 제안, 2013

제2절 농촌 공동시설의 유형별 개념

○ 본 연구는 정부 정책사업인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지자체 사업 추진 활성화, 이를 통한 공동시설 확충에 목적이 있으므로, 사업유형인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을 중심으로 개념을 정의함. 또한, 각 공동시설은 농촌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지속가능한 시설조성을 목표로 정책사업이 추진되는 바, 공동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기본전제로 하여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1. 공동생활 홈

○ 공동생활홈은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거시설로서 다양한 개념 및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

- 공동생활주거, 그룹 홈, 노인 홈, 경로 홈, 농어촌 소외계층 복합주거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집합주거, 노인주택, 노인공동생활주택, 공동생활홈 등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으며, 좀 더 광의적인 범위에서 경로당, 마을회관, 양로원(양로시설) 등도 공동주거시설의 유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3)]

○ 공동생활홈(Community Living Home)이라는 용어는 2007년부터 (사)한국농촌건축학회와 (재)다솜둥지복지재단을 통해 농어촌 집 고쳐주기 “희망 家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2011년부터 농어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동생활홈 조성을 통해 공동생활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됨.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프로그램 생산을 통해 주민과 교류하는 등 농어촌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써 시도되어 점차 보편화되고 있음[4)]

3) 김승근 외,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모델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13.12 p 13.
4) 김승근, 재생을 통한 농어촌 마을형 공동생활 홈 조성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5권 1호(통권48호), 2013. 2, p 22.

○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사랑의 집 독거노인 무료임대주택, 노인보금자리 등도 명칭만 다를 뿐 기능면에서 공동생활홈과 유사한 형태임[5)]

○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촌마을에 공동시설을 확충·보급하고 있으며, 사업유형으로 공동생활홈을 포함하고 있음

○ 특히, 김승근(2013)은 공동생활홈(Community Living House)의 정의를 '고령자의 공동체적 생활을 통하여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주거유형'으로, 개념적 범위에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제시하고 있음

(표 2-2) 공동생활홈의 개념

구 분	내 용
개 념	고령자의 공동체적 생활을 통하여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주거유형으로, 노인복지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노유자시설)을 포함하는 개념
건축법상의 용도	노유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유사 관련용어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법), 노인집합주거(Senior's Apartment House), 노인공동생활주택(Senior's Community Living House)

5) 김승근 외, 2013.12, 전게서, p 17.

(표 2-3) 지자체별 공동생활홈 현황

지자체	경기도(3)			강원도(7)		충북(22)		충남(22)		
	여주군	연천군	이천시	인제군	홍천군	괴산군	영동군	공주시	금산군	서산시
개소	1	1	1	1	6	2	20	3	5	3
지자체	충남(8)					경북(11)			경남(79)	
	서천군	아산시	청양군	천안시	예산군	의성군	청도군	예천군	통영시	의령군
개소	2	1	5	2	1	2	4	5	1	50
지자체	경남(79)					전북(463)			전남(77)	
	창녕군	산청군	거창군	하동군	익산시	김제시	진안군	완주군	신안군	순천시
개소	3	2	10	13	1	127	209	126	3	18
지자체	전남(77)									
	고흥군	해남군	여수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개소	10	10	3	2	1	1	2	1	1	2
지자체	전남(77)						합계	비 고		
	영광군	진도군	광양시	화순군	영암군	완도군		* ( )는 도별 공동생활홈의 개수 * 기재사항이 없는 지자체도 포함되어 있음		
개소	6	4	2	1	9	1	68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고령자 지원시설 현황 행정조사 자료, 2014.1

○ 공동생활홈의 유형은 거주공간과 취사공간을 개별 또는 공동으로 영위하는지에 따라 독립거주형, 독립침실형, 공동거주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의 개념과 장단점은 다음 (표 2-4)와 같음

(표 2-4) 공동생활홈의 유형 및 장단점

유 형	독립거주형	독립침실형	공동거주형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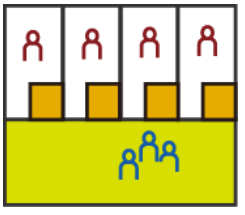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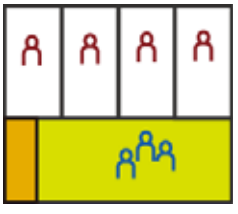	
비고	□ 개인생활공간 ■ 공동생활공간 ■ 부엌		
설명	시설 내에서 취침과 취사를 개별적으로 영위하는 유형	시설 내에서 취침은 개별적으로 하나 취사는 공동으로 영위하는 유형	시설 내에서 취침과 취사 모두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유형

<표 계속>

유 형	독립거주형	독립침실형	공동거주형
장점	① 개인 프라이버시 확보에 가장 용이 ② 기존의 서로 다른 생활습관에 대응 ③ 성별 생활공간을 구분·분리 용이	① 프라이버시 보호에 어느 정도 용이 ② 개인공간과 공공공간의 밸런스를 확보 ③ 관리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여 유지관리가 용이	① 기존의 경로당과 유사하여 친근함이 있음 ② 개인공간과 공공공간의 밸런스를 확보 ③ 초기 건축비가 저렴하며 기존 건물 활용도 높음
단점	① 주거비 및 난방비에 부담이 다소 큼 ② 실의 한정에 의해 거주가능 인원이 제한적임 ③ 건축비가 많이 소요됨	① 주거비 및 난방비에 부담이 다소 있음 ② 실의 한정에 의해 거주가능 인원이 제한적임 ③ 건축비가 다소 소요됨	① 프라이버시 확보 불리 ② 가사노동에 분배가 어려워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③ 구성원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해결이 어려움
사례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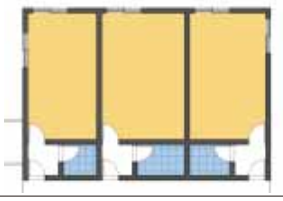		
비고	방 거실 주방 화장실		

2. 공동급식시설

○ 급식시설은 음식의 조리와 식사, 배식 등을 위해 마련된 식당, 주방, 창고 등의 관련시설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학교나 공장 등에서 단체의 식사를 위해 제공되는 일련의 급식 서비스를 포함한 개념임

○ 최근에는 공공의 복지센터와 민간단체(NGO, NPO, 종교단체 등)를 중심으로 저소득계층 및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임

○ 농촌마을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 기존 공동시설을 활용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마을 자체적으로 급식시설을 운영하는 형태의 공동급식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이러한 형태의 공동급식시설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농촌 독거노인의 영양여건을 개선하고 공동체로서의 마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로서 중요한 시설로 부각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으로 공동급식시설을 사업유형으로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공동급식시설의 정의로 김승근(2013)이 제시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마을 또는 일정의 공동체 또는 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공동급식시설'이라 정의하고, 특히,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보건진료소 등의 마을 공공시설 등에서 시설 내 또는 별동으로 조리 및 식사 제공을 위한 설비를 갖춘 시설로 정의함

(표 2-5) 공동급식시설의 개념

구 분	내 용
개 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마을 또는 일정의 공동체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로서 조리 및 식사제공을 위한 설비를 갖춘 시설
건축법상의 용도	노유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사 관련용어	경로식당(경남 의령), 공동급식소(전북 완주), 마을 공동식당 등

(표 2-6) 지역별 공동급식시설 현황

지자체	충남(20)			경북(226)	경남(19)				전북(61)	합계
	공주시	부여군	홍성군	울진군	의성군	밀양시	남해군	합천군	완주군	
개소	4	10	6	222	4	4	11	4	61	32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고령자 지원시설 현황 행정조사 자료, 2014.1

○ 공동급식시설의 유형은 식사공간의 형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좌식의 밥상에서 식사행위를 영위하는 좌식형과 입식의 테이블에서 식사행위를 영위하는 테이블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각 유형별 개념 및 장단점은 다음 (표 2-7)과 같음

(표 2-7) 공동급식시설의 유형 및 장단점

유 형	좌식형	테이블형
사례 도면		
비고	식당 주방 화장실	
관련 이미지		
설명	좌식의 밥상에서 식사행위를 영위하는 유형	입식의 테이블에서 식사행위를 영위하는 유형
장점	① 기존의 전래식 식사습관에 대응 ② 전래의 바닥난방에 대응가능 ③ 다양한 공간으로의 활용이 가능	① 관절 등 노환을 배려한 식사가능 ② 취사노동의 경감효과 있음 ③ 방문객 등의 대응에 편리
단점	① 관절 등 노환에 대한 배려 미비 ② 취사노동에 경감효과 미비 ③ 방문객 등의 대응에 어려움	① 다른 용도로의 공간활용에 어려움 ② 전래의 식사습관에 대응 불리 ③ 가구류 등 시설비가 다소 소요

3. 작은목욕탕

○ 목욕탕은 일반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목욕장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영업시설이자 생활편의시설의 하나임

○ 최근 농촌 지역에는 인구감소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민간이 운영하는 공중목욕탕이 운영 및 유지의 어려움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농촌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농촌 지역은 지자체 등 공공의 지원에 의해 목욕탕을 건립하여 농촌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위생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읍면소재지에 작은목욕탕을 건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작은목욕탕'은 전라북도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책으로 작은 규모의 공중목욕탕을 건립하면서 명명한 용어로서, 그 의미는 '남녀가 격일제로 공동 사용하는 작은 규모의 목욕탕'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6)]

(표 2-8) 작은목욕탕의 개념

구 분	내 용
개 념	남녀가 격일제 등의 방식을 통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작은 규모의 목욕탕으로, 욕탕, 샤워기, 탈의실 등 목욕서비스 설비를 마련하고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건축법상의 용도	노유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사 관련용어	장날 목욕탕, 공중목욕탕 등

(표 2-9) 지역별 작은목욕탕 시설현황

지자체	강원(3)	충남(4)		경남(5)		전북(11)			
	정선군	청양군	공주시	고성군	합천군	진안군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개소	3	1	3	2	3	1	1	1	1
지자체	전북(11)						전남(122)	합 계	
	김제시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임실군	무주군	-		
개소	1	1	1	1	1	2	122	14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고령자 지원시설 현황 행정조사 자료, 2014.1

○ 작은목욕탕은 이용형태에 따라 남녀구분 없이 하나의 목욕공간을 요일제 또는 격일제로 운영하는 남녀혼용 유형과 남녀를 구분하여 목욕공간을 상시 2개로 운영하는 남녀구분 유형으로 구분되며, 작은목욕탕 조성 마을의 이용수요와 건립비용, 건축현황 등 제반여건에 따라 적정유형을 판단하여 설치하고 있음. 각 유형별 개념 및 장단점은 다음 (표 2-10)과 같음

6) 김승근 외, 2013.12, 전게서, p 19.

(표 2-10) 작은목욕탕의 유형 및 장단점

유 형	남녀혼용	남녀구분
사례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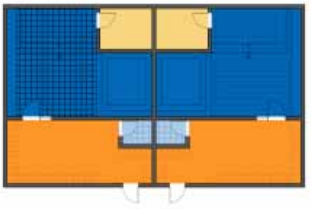
비고	■ 탕 ■ 찜질방 ■ 탈의실 ■ 화장실	
관련 이미지		
설명	남녀구분 없이 하나의 목욕공간을 요일제 및 격일제로 운영하는 유형	남녀를 구분하여 목욕공간을 상시 2개로 운영하는 유형
장점	① 공사비가 적게 소요 ② 유지 및 관리비가 적게 소요 ③ 가구류 등 시설비가 저렴	① 성별을 명확하게 구분 가능 ② 목욕탕 공간이 비교적 여유로움 ③ 운영일이 알기 쉬움
단점	① 성별구분이 안되어 불안감이 있음 ② 목욕탕 공간이 다소 협소 ③ 남녀 운영일이 알기 어려움	① 건축비가 많이 소요 ② 유지 및 관리비가 많이 소요 ③ 가구류 등 시설비가 많이 소요

제3절 농촌 공동시설 관련 제도 검토

1. 기존 정부의 지원제도 및 정책

○ 기존의 농촌 지역 공동시설 관련 정부정책은 주로 마을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주택개량 및 기반시설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정비사업의 일부로 공동시설을 확충하는 형태의 사업이 추진됨

○ 또한, 농촌 지역개발 정책이 과거 개별사업 위주에서 포괄보조사업으로 개편되고 최근 들어 물리적 환경 개선과 동시에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

○ 농촌 공동시설은 과거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건립하여 보급하거나, 또는 기존 마을회관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에서 최근에는 다양한 농촌 고령자의 수요를 반영한 공동시설을 개발·보급하는 등 사업이 다양화되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드웨어의 조성·지원에 머물러 시설물 유휴화의 우려가 존재하며, 향후 지속가능한 공동시설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음

○ 기존 공동시설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주로 추진되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공동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고령자 공동시설과 관련하여 농어촌 마을 공동생활홈 조성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공동시설 조성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의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 개·보수 사업 등 주로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주로 시설공급보다는 식생활지원, 건강지원, 주거지원 등 복지정책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이 주로 추진됨

○ 본 연구에서는 농촌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확충 방향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의 관련 사업을 위주로 검토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은 농어촌의 고령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2007년 (사)한국농촌건축학회 주관으로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농어촌의 '노후주택 고쳐주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재)다솜둥지복지재단을 설립하였음. 현재, (사)한국농촌건축학회와 (재)다솜둥지복지재단이 연계하여 매년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이 꾸준히 시행됨

나. 농어촌 마을 공동생활 홈 조성사업

○ 2008년부터 (재)다솜둥지복지재단에서는 매년 농어촌 마을의 낡은 마을회관, 노인회관, 보건진료소 등 기능이 상실되어 비어있는 공공건축물을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방식은 매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어 건축설계와 공사감리는 관련 전문가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고 있음

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농림축산식품부는 포괄포조사업으로 개편 이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농산어촌 지역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공동시설과 관련해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유형 중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기초생활기반확충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지원함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세부내용

- 주요내용 : 농촌중심지에 교육·의료·문화·복지·경제 등 중심기능의 활성화, 네트워크를 통한 배후마을에 서비스 제공
- 관련 세부사업 : 기초생활기반확충
  - 지원대상 :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 도로·주차장, 상·하수도, 재해대비, 중심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 시설**, 중심지-배후마을간 접근성 개선 및 주민이 체감하는 **작은목욕탕** 등

○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세부내용

- 주요내용 : 마을관련 사업 유형을 통합하고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사업지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어촌 마을 조성
- 관련 세부사업 : 기초생활기반확충
  - 지원대상 :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 도로·교통, 상·하수도, 재해대비, **복지시설**, 문화시설, 운동휴양 등

(표 2-11) 기초생활기반확충 세부내용 예시

기능별 사업	세부 사업	세부내용
기초생활 기반확충	복지 시설	마을회관리모델링(공동급식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공동생활홈 등

(표 2-12) 사업유형별 지원 금액

사 업 명			사업비 (국비70%, 지방비30%, 자부담 별도)	기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80억원 이하 (일반지구) 60억원 이하	5년 이내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 단위	종합개발	10억원 이하	
		공동문화·복지	5억원 이하	
		경제(체험·소득)		
		환경(경관·생태)		
		신규마을	1.5~36억원 이하	
	권역 단위	종합개발	40억원 이하	

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사업 대상지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주거 및 인프라 취약마을로서 개소당 70억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생활위생인프라 부문에서 공동생활홈 조성을 지원함.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기간** : 농어촌 3년, 도시 4년

□ **국비지원** : 개소당 70억원 이내, 사업비의 70%(지방비 30% 매칭)

○ 국비지원은 가구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200가구 이상 지역 최대 70억원, 100가구 최대 35억원

○ 안전 및 **생활인프라 관련 사업**은 추가적인 포괄보조금 우대(80%)

* 화재예방, 노후담장 보수, 상하수도, **공동생활홈** 등 생활인프라 지원

□ **사업내용**

○ (안전확보) 주민 안전에 직간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침수) 예방, 노후시설(건물, 축대) 보수, CCTV 설치 등

○ **(생활위생인프라)** 주민생활의 불편 및 위생문제 해소를 위해 상하수도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량, **공동생활홈 조성** 등 지원

○ (일자리·문화 등)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등을 목표로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취업지원, 복지·문화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사업지원

○ (노후·위험주택 정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위주로, 안전 및 위생에 위협이 되는 노후주택의 구조보강, 지붕 및 벽체 보수 등 지원

○ (주민역량강화)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확대, 사업 이후 자활 등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지원

마.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와의 공동사업 포함)의 관련사업

○ 각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시설 관련 사업은 독거노인 공동생활제[7], 사랑의 집[8], 저소득 독거노인 무료임대주택, 노인보금자리, 공동거주제(의령군), 한울타리 행복의 집(김제시)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표 2-13)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관련사업

시설명칭	시행주체	사업 내용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충남	2010년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시범사업'으로 추진, 경로당, 마을회관, 유휴시설 등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생활홈으로 활용하였으며, 천안, 공주, 예산, 서산의 네 곳에 조성함
사랑의 집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해당 지자체	노인 전용의 공동주택 형태이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용인, 제천, 장성, 강화의 네 곳에 조성·운영 중
	강원 인제군	'농촌형 임대주택 시범사업'에 의해 (사)문화도시연구소가 실시하는 농촌 집짓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된 사업
저소득 독거노인 무료임대주택	경북 봉화군	봉화군의 자체사업으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인에게 무료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봉화노인복지센터 내에 조성하였음
노인보금자리	충북 단양군	수몰 이주민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무료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에 위탁관리 중임
공동거주제	경남 의령군	2007년부터 기존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을 공동주거시설로 개보수 등을 통하여 활용한 사례로, 기존 마을회관 내부공간의 변경은 최소화하여 조성하고 있는 사업
한울타리 행복의 집	전북 김제시	

자료) 김승근 외,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모델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13.12, p 31.

7) 남윤철, 농촌지역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사례와 개선방향,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4권 2호(통권45호), 2012. 5, pp. 59~66

8) '사랑의 집'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시설과 강원도 인제군에서 농촌형 임대주택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시설에서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2.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가. 사업의 개요

○ 추진배경
- 농식품부 국정과제로 고령자 지원 사업 적극 추진
  · 국정과제(52.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 마을회관 등 리모델링 및 급식시설 설치 지원, 공동생활홈 조성
- 농촌지역의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의 지원을 통해 농촌 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4년 시범사업 추진

○ 사업기간 : '14년 3월~12월
-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건축공사 등 1년 내에 완료

○ 사업비 : 설계비, 건축공사비, 감리비 및 안전진단 비용을 포함하며, 부지구입비는 제외
- 공동생활홈 120백만원/개소
- 공동급식시설 50백만원/개소
- 작은목욕탕 200백만원/개소

○ 지원 조건 : 지자체 경상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주요내용
- 농촌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 유형인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설치 지원

○ 시범사업의 추진방향
-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추진방향 모색
  · 농촌 지역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공동시설은 노후화 정도가 심

각하고, 활용이 저조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유휴 공동시설의 비율 또한 매우 높은 실정임

·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창고 등 유휴 공동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촌 공동시설 활용 도모

* 마을회관 건축년수('12, 농촌경제연구원) : 건축한 지 20년 이상 비율 20.0%

* 유휴 공동시설 비율('12, 농촌경제연구원) : 마을회관 24.4%, 노인정 2.5%

· 현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조성되고 있는 농촌 공동시설은 체계적인 운영·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시설의 유휴화, 기능 상실 등의 문제점이 발생

·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의 합의에 따른 유지관리, 수혜자 선정, 이용료 부과 등 시설의 운영·관리 시스템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 주민자치회(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등)가 주체가 되어 공동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도록 유도

* 공동시설의 운영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동체회사 등 참여 가능

- 고령자를 감안한 입지선정 및 설계

· 농촌 지역은 고령자 비율이 높아 이용편의를 위한 입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자의 동선을 감안하여 공공시설이 밀집한 마을 또는 읍면소재지의 중심부에 공동시설을 설치

* 부지 확보의 용이성을 이유로 마을 외곽에 시설물을 구축하는 행위 지양

· 고령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무장애디자인(Barrier Free Design) 또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적용

* 무장애디자인 :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건물에서의 장애를 제거하는 디자인(노약자의 안전 측면 강조)

* 유니버설디자인 : 최대한 많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디자인(모든 사람의 편의성 측면 강조)

- 복지·의료·문화 등 체감형 서비스 연계

· 농촌 지역은 인구가 밀집한 도시와 달리 넓은 지역의 원격지 마을에서 적은 인구가 산재하여 입지하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복지·의료·문화 등의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이 곤란함

· 고령자가 모이는 공동시설에 의료(방문진료 등), 교육(한글교실 등), 문화(요가, 손공예 등) 등과 연계하여 서비스 효과 극대화

* 정부, 지자체의 관련 사업을 포괄적으로 연계하여, 농협(농가주부모임), 사회복지기관 등 지역 민간기관과도 협력

· 복지·의료·문화 서비스 연계를 위해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 지자체 내 농정, 복지, 문화 등 관련 부서간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는 등 협업 촉진

나. 시범사업 추진현황

○ 전국단위 공모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14년 시범사업에서는 총 75개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9)]

- 75지구(공동생활홈 35, 공동급식시설 26, 작은목욕탕 14)

(표 2-14) 시도별 시범사업 대상지 현황

시도	계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계	75	35	26	14
세종	1	-	-	1
경기	3	-	1	2
강원	3	3	-	-
충북	2	-	2	-
충남	4	2	1	1
전북	14	7	7	-
전남	10	6	2	2
경북	19	7	8	4
경남	18	10	4	4
제주	1	-	1	-

9) '14년 12월 현재 시범사업 추진현황 기준임

다. 시범사업 추진체계

○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주관 및 예산지원 아래 사업시행자는 시·군으로서 주민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사업계획 및 설계, 준공 후 운영·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며, 특히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전반 자문·모니터링을 위해 총괄계획가 제도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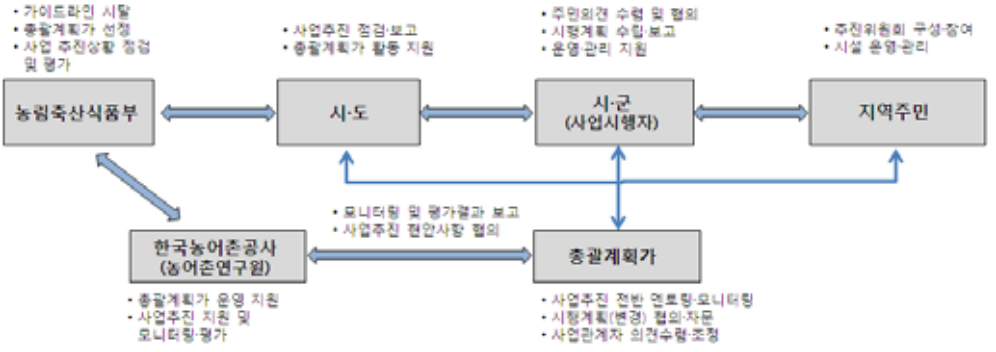

<그림 2-4> 시범사업의 추진체계

라. 시범사업 주요내용[10)]

○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의 시설 조성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건축형태 및 운영주체
- 건축형태는 전체 시설물 중 56.2%가 증축(15.1%) 또는 리모델링(41.1%)으로 시설을 조성하며, 신축은 43.8%로 나타남
- 유형별로는 공동생활홈의 경우 신축은 약 47%, 증축 또는 리모델링은 약 53%로 나타나며, 공동급식시설의 경우 대부분 기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리모델링(약 48%) 또는 증축(약 28%)하여 시설을 조성하는 비율이 높고, 신축(약 24%)의 사례는 건축년수가 오래된 노후건축물

10) '14. 12월 현재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향후 각 대상지별 사업추진 및 운영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계획 변경, 시공시 설계변경 등 세부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로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신축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유휴 공동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사업의 기본방향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작은목욕탕은 목욕시설 및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성으로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리모델링 또는 증축(약 29%)보다는 신축(약 71%)으로 추진하는 비율이 높음
- 시설의 운영주체는 세 가지 유형에서 모두 마을의 추진위원회와 같은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향후 운영 및 관리 단계에서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과 유지관리 등을 위한 조례제정 등 제반 지원책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15) 시범사업 유형별 건축형태 및 운영주체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건축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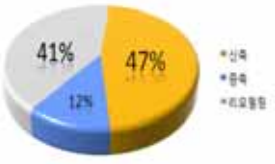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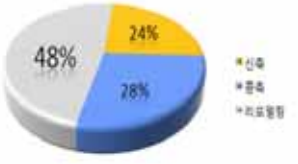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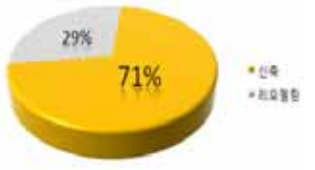
운영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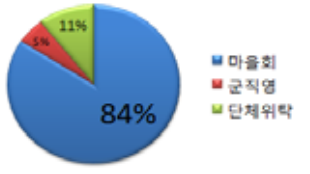

○ 공동생활홈의 주요내용 및 특징

- 유형별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생활홈의 경우 거주유형은 시설 내에서 취침과 취사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공동거주형이 62.5%, 시설 내에서 취침은 개별적으로 하나 취사는 공동으로 영위하는 독립침실형이 25.0%, 취침과 취사를 개별적으로 영위하는 독립거주형이 12.5%를 차지함. 공동거주형이 대부분인 이유는 기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기본 난방시설의 보수, 도배, 화장실 보수 등 적은 예산으로도 시설조성이 가능하고 이용자와 마을주민 등이 모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향후 거주자가 퇴소할 경우 마을회관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됨

- 공동생활홈에 입주할 예정인 입주예정자는 거주유형에 따라 다양함. 독립침실형과 독립거주형의 경우 3인~4인으로 비교적 입주자가 적고 1인당 면적 또한 평균 26.2㎡인데 반해, 공동거주형은 평균 6.8인이 거주하여 1인당 면적은 평균 16.7㎡로 나타남
- 공동생활홈이 조성되는 마을의 규모는 비교적 다양하나 50호~99호가 37%로 가장 많은 비율임. 마을의 규모와 공동생활홈의 시설면적은 큰 상관관계가 없이 지원되는 예산과 부지면적에 따라 시설규모가 다른 것으로 나타남

<그림 2-5> 공동생활홈 거주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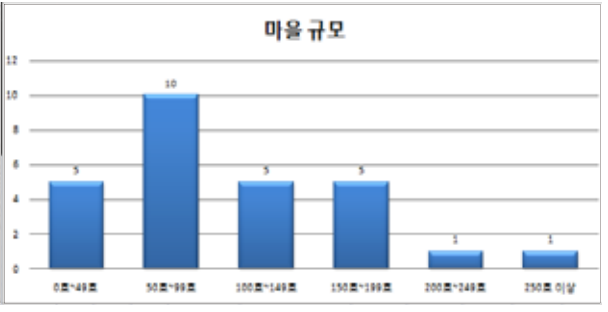

<그림 2-6> 공동생활홈 조성 마을의 규모

○ 공동급식시설의 주요내용 및 특징

- 공동급식시설의 규모는 시설면적 평균 107.8㎡로서 신축 및 증축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 특히, 건축형태가 신축인 경우는 급식시설만 단독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공동생활홈 또는 작은목욕탕과 연계하여 복합형으로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예산지원 및 운영관리상 효율성을 고려함
- 공동급식시설의 운영비는 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시설 이용자를 통해 조달하는 대상지가 가장 많으며(48%), 그 외에는 대부분 시군의 지원에 의지하고자 함

○ 작은목욕탕의 주요내용 및 특징

- 작은목욕탕은 인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고령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야 하는 시설로서 읍면 소재지의 중심부에 입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시범사업으로 조성되는 작은목욕탕의 입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읍면소재지에서 1㎞ 이내에 입지하고 인근에 목욕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시설규모는 평균 124.3㎡로서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큰 규모이며, 1일 이용예정자는 평균 56.7명으로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 운영을 위한 재원은 대부분 마을회와 시설 이용자를 통해 조달할 예정이며, 시군의 지원에 의지하는 대상지가 상당 수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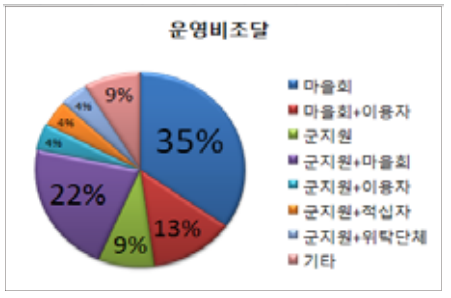

<그림 2-7> 운영비 조달(공동급식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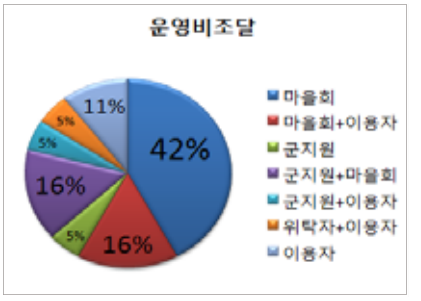

<그림 2-8> 운영비 조달(작은목욕탕)

제4절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관련 사례[11)]

○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까지 정부 정책사업 또는 각 지자체의 자체사업으로 다양한 유형의 공동시설이 건립되어 운영 중임. 이 중 본 연구의 대상인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의 사례를 각 유형별로 건축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1. 공동생활홈의 사례

가. 괴산군 월문리 공동생활홈 (독립거주형)

○ 월문리 공동생활홈은 (재)다솜둥지복지재단이 2007년부터 추진 중인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에 조성됨. 이 시설은 (재)다솜둥지복지재단에서 첫 번째로 시행한 시설로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은 개인 소유의 토지에 마을 소유의 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현재 총 3인의 독거노인이 생활함

○ 운영주체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가 스스로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괴산군에서 연간 운영비로 난방연료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료는 120천원/년임. 또한, 각 입주자의 생활비 등은 거주자가 스스로 충당하여 연간 총 360천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입주 자격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공동생활홈의 거주유형은 여성전용의 독립거주형으로 방 3개소에 각각의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남녀 각각 1인과 2인이 생활을 영위하며, 거실,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은 개별로 사용됨

11)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우수사례 조사 자료 및 김승근 외,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모델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13.12, pp.141~187를 토대로 재구성함

○ 기존 1층 규모의 월문리 마을회관을 공동생활홈으로 활용하였고, 전체 면적은 68.2㎡로 1인당 점유면적은 22.7㎡/인의 수준으로 나타남

○ 평면구성은 건축물의 장변을 크게 3등분하여 각각의 개별 주거공간으로 구획하고, 각 개별 주거공간 내에 주방과 화장실을 설치함. 개별 주거공간의 폭원은 약 3,400㎜ 모듈을 기본으로 구획하였고, 주거공간의 전면에 폭원 약 2,700㎜의 목재데크가 설치됨

(표 2-16) 월문리 공동생활홈 개요

구 분	항 목	내 용		비 고
일반 사항	명 칭	월문리 공동생활홈		
	주 소	괴산군 청천면 월문리 205		
	거주인원	3인(남성 1인, 여성 2인)		
	거주유형	독립거주형		
	건축방식	리모델링(마을회관)		
운영 형태	사업주체	괴산군+(재)다솜둥지복지재단		
	운영주체	월문리 마을회		
	연간 운영비	(마을지원) 시설관리 (거주자) 자체 생활비 부담 약 360천원/연		마을회 + 거주자
	입주자부담	120천원/연(10천원/월)		
	입주자격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건축 개요	법적용도	노유자시설		
	대지면적	424㎡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건물규모	1층		
	건축면적	68.2㎡		
	건폐율	16.1%(법정 40%)		
	연면적	68.2㎡		
	용적율	16.1%(법정 100%)		
실별 면적	실 명	실 면적(㎡)	1인당 면적(㎡)	개 소
	방	56.6㎡	18.9㎡	3
	거실	-	-	-
	주방	-	-	-
	화장실	8.2㎡	2.7㎡	2
	기타	3.4㎡	1.1㎡	-
	계	68.2㎡	22.7㎡	

<공동생활홈 변경 전>	<공동생활홈 변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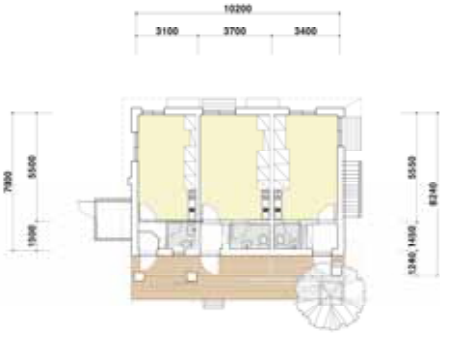

<그림 2-9> 월문리 공동생활홈 평면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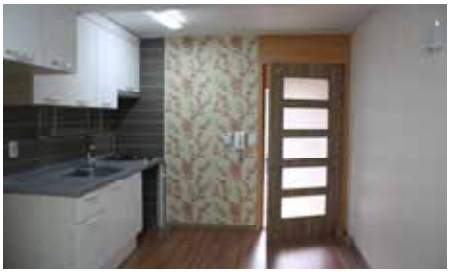

<그림 2-10> 월문리 공동생활홈 내외부 현황

나. 괴산군 부흥리 공동생활홈 (독립거주형)

○ 부흥리 공동생활홈은 월문리와 마찬가지로 (재)다솜둥지복지재단의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며, 2013년 11월에 건립됨. 구 부흥5리 노인회관을 공동생활홈으로 리모델링하였으며, 현재 남자 1인, 여자 2인의 총 3인이 생활하고 있음

○ 운영주체는 기본적으로 부흥리 마을회이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 스스로가 생활을 영위함.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료는 360천원/년으로, 연간 총 1,080천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입주 자격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유형은 독립거주형으로 방 3개소에 각각의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남녀 각각 1인과 2인이 생활하며, 거실,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은 개별로 사용함

○ 기존 1층 규모의 부흥리 노인회관을 공동생활홈으로 활용하였고, 공동생활홈의 전체면적은 62.0㎡로 1인당 점유면적은 20.7㎡/인의 수준으로 나타남

○ 평면구성은 건축물의 장변을 크게 3개의 개별 거주공간으로 구획하고, 각 개별 주거공간 내에 주방과 화장실을 설치함. 개별 거주공간의 폭원은 약 4,000㎜ 모듈을 기본으로 구획하였고, 주거공간의 전면에 폭원 약 3,500㎜의 목재 데크가 설치된 점과 상부에 아크릴로 된 지붕을 설치한 점이 특이함

○ 데크 공간의 상부에 지붕을 설치한 이유로는 반 내부공간을 설치하여 각 개별 거주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의 커뮤니티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때로는 곡식 또는 빨래 건조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등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됨

(표 2-17) 부흥리 공동생활홈 개요

구 분	항 목	내 용		비 고
일반 사항	명 칭	부흥리 공동생활홈		
	주 소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160-21		
	거주인원	3인(남성 1인, 여성2인)		
	거주유형	독립거주형		
	건축방식	리모델링(마을회관)		
운영 형태	사업주체	괴산군+(재)다솜둥지복지재단		
	운영주체	부흥5리 마을회		
	연간 운영비	(시지원) 시설 유지관리 (거주자) 자체 생활비 부담 약 1,080천원/연		마을회 + 거주자
	입주자부담	360천원/연(30천원/월)		
	입주자격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건축 개요	법적용도	노유자시설		
	대지면적	164㎡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건물규모	1층		
	건축면적	84.6㎡		
	건폐율	51.6(법정 40%)		
	연면적	84.6㎡		
	용적율	51.6%(법정 100%)		
실별 면적	실 명	실 면적(㎡)	1인당 면적(㎡)	개 소
	방	62㎡	20.7㎡	3
	거실	-	-	-
	주방	-	-	-
	화장실	12.7㎡	4.2㎡	3
	기타	8.9㎡	3㎡	-
	계	83.6㎡	27.9㎡	

< 부흥리 공동생활홈 평면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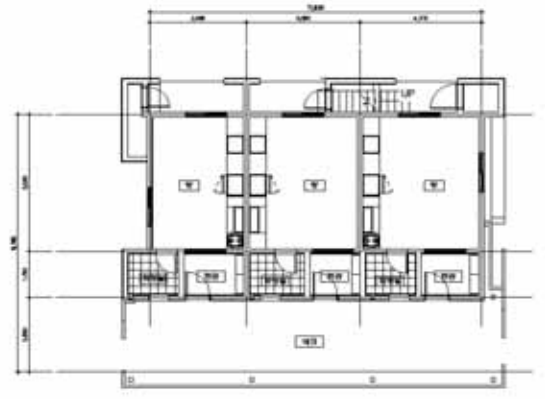

< 공동생활홈 변경 전 >

< 공동생활홈 변경 후 >

<그림 2-11> 부흥리 공동생활홈 평면구성 및 변경 전후 사진

<그림 2-12> 부흥리 공동생활홈 내외부 현황

2. 공동급식시설의 사례

○ 공동급식시설의 사례는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학동마을 공동급식소를 조사하였으며, 본 시설은 농촌체험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됨. 기존시설 일부를 이용하는 유형으로 경로당과 화장실 부분을 연결,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음

○ 운영주체는 학동마을 부녀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급식소의 운영비는 완주군에서 조리사 인건비와 부식비로 연간 140여만원을 지원받고 있고, 부족한 비용은 마을기금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회사의 기부금으로 해결하고 있음. 운영횟수는 봄과 가을에 지원금으로 40회씩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운영은 마을자체에서 공동으로 재료를 조달하여 운영함

○ 화장실이 급식소와 경로당 양쪽 내부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급식소는 현관, 식당, 주방, 보일러실로 구분되고, 일일 이용자를 20명으로 볼 때 급식소 전체면적(60.3㎡)에 대하여 1인당 점유면적은 약 3㎡/인 정도 수준으로 나타남

○ 평면구성은 현관, 식당, 주방, 보일러실로 구성되어 있고, 화장실은 급식소와 경로당 두 곳으로 연결되는 문이 있어 사용하는데 다소 불편할 것으로 보임. 식당 내부에는 식탁이 4개가 있어 20명이 한 번에 식사가 가능함

(표 2-18) 완주 학동마을 공동급식소 개요

구분	항 목	내 용		비 고
일반 사항	명 칭	완주 학동마을 공동급식소		
	주 소	전북 완주군 삼례읍 석전리 71-24		
	사용인원	일일 20명 내외		
	건축유형	기존시설 일부 이용		
	건축방식	기존 경로당 일부 증축		
운영 형태	사업주체	학동마을 부녀회		
	운영주체	학동마을 부녀회		
	연간 운영비	농촌체험마을 국비지원, 마을 자체 조달		마을회 + 국비
	운영횟수	봄, 가을에 40회씩 고정 운영, 수시운영		
건축 개요	법적용도	노유자시설		
	대지면적	383.0㎡		
	지역・지구	생산녹지지역		
	건물규모	지상 2층		
	건축면적	173.8㎡(급식시설 60.3㎡)		
	건폐율	46%		
	연면적	231.8㎡		
	용적율	61%		
실별 면적	실 명	실 면적	1인당 점유면적	
	식당	27.6㎡	약 3㎡/인	
	주방	10.8㎡		
	화장실	4.9㎡		
	기타	17㎡		
	계	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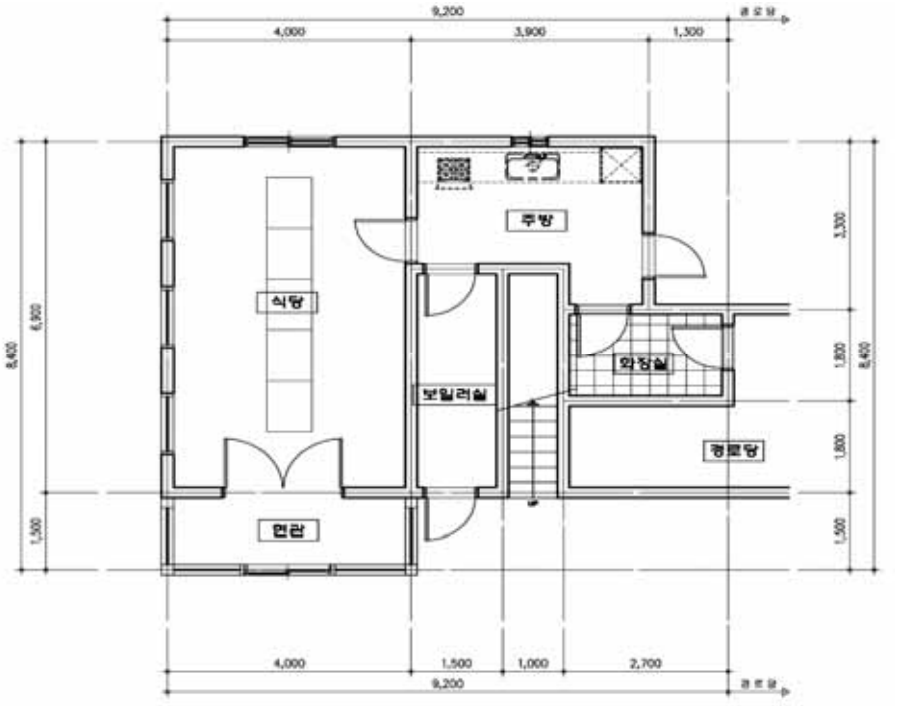

<그림 2-13> 학동마을 공동급식소 평면구성

<그림 2-14> 학동마을 공동급식소 내외부 현황

3. 작은목욕탕의 사례

○ 작은목욕탕의 사례는 전북 무주군 안성면의 작은목욕탕 사례를 조사·분석함. 안성면 작은목욕탕은 안성면사무소 내부에 조성되어 있으며, 건축가 정기용의 무주 프로젝트의 하나인 안성면사무소 신축사업으로 약 890백만원을 지원받아 신축되어 안성면사무소의 관리 하에 운영 중임

○ 마을의 면사무소에 작은 목욕탕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고령자분들의 목욕에 애로가 많았으며, 주변과 대중교통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금산읍까지 나가야 하는 등 불편을 감수함. 따라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의 지원으로 목욕탕이 건립되었으며, 지자체 최초 지원마을이라 현재 선진지 견학으로 마을을 찾는 이들이 많은 실정임

<그림 2-15> 안성면 작은목욕탕 내외부 현황

○ 목욕탕은 안성면에서 주체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약 30~4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음. 이용요금은 일반인은 2,000원, 65세 이상 고령자는 1,500원이며, 1개의 탕을 남녀 격일제로 주 5일 운영 중이고 매표창구의 직원도 남녀가 격일제로 담당함(시급 4,500원). 특히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설비시설로 태양열 온수 시스템을 적용함

○ 건축형태는 RC조의 지하 1층, 지상2층 건물인 안성면사무소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면적 864㎡중 19.5%인 168.3㎡를 목욕탕이 차지함. 목욕탕 내부는 탕 1개소(40.2㎡), 탈의 및 휴게실(39.6㎡), 화장실(9㎡), 기타시설(11.2㎡)로 구성됨

4. 사례분석의 시사점

○ 이상과 같은 국내의 사례를 종합하면, 공동생활홈의 경우 독거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최근에는 고령자 주거시설에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에 밀착한 공동체적 생활 거주환경을 추구하고 있음

○ 또한, 공동생활홈의 각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으며,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살펴보면, 공동거주형은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면서 도움을 주고 받는데 용이하지만, 거주공간의 협소, 프라이버시의 미확보 등의 문제가 있고, 독립침실형은 개별 취침공간 확보로 프라이버시 확보와 취사에는 용이하지만, 개인 취침공간의 기본 점유면적을 무시한 채 구획되어 취침 시 불편을 주고, 배리어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독립거주형은 프라이버시 확보에 가장 유리한 한편, 거주자 서로 간의 커뮤니티를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마을의 여건과 입주자의 기호를 면밀히 파악하여 거주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동급식시설은 독거 고령자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속적 운영을 위해 예상 급식 소요인원을 파악하여 시설 규모, 설비의 종류 및 수량 등을 파악해야 함. 또

한, 조리구역과 식사구역, 식자재 보관시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농번기와 농한기의 급식수요가 다를 것을 대비해 계획 시에 유동적 공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작은목욕탕은 높은 운영비 문제가 걸림돌로서 운영비 절감을 위해 적정 규모로 설치하고, 격일제로 남녀를 교대로 운영하는 방안, 운영기간 조정 및 공공근로 등을 적극 활용하며, 공기열원히트펌프, 태양광, 태양열과 같은 에너지 절감 설비를 설치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마을공동체가 합의하여 유지관리, 이용료 부과 등의 시설 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고안하여 원활한 운영체계의 정착 또한 필요함

제 3 장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제3장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제1절 시범사업 모니터링

1. 모니터링의 개요

가. 모니터링의 목적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의 추진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의 수정·보완 필요사항 등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촌 지역에 양질의 공동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 마련에 활용함

나. 모니터링 방법 및 내용

○ 모니터링은 사업 대상지 선정부터 준공까지의 전 단계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효율적이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해 본 연구의 참여연구진이면서 시범사업 대상지의 총괄적인 멘토링·자문을 담당하는 도별 총괄계획가를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함

○ 한편, 농촌 지역의 공동시설 조성은 농촌 고령자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주된 목표로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따라서 사업을 주관하고 이끌어갈 지자체 담당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주요 내용은 계획수립 단계, 시공 단계, 준공 및 완료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각 단계별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

(표 3-1) 단계별 모니터링 주요내용

단 계	모니터링 주요내용
사업 준비 및 대상지 선정 단계	·사업 대상지 선정방법 및 절차 ·지자체 사업신청 및 예산확보 현황 ·해당지역 주민들의 사업의 이해도 및 준비 상황 ·사업추진 주체 구성 등 지자체 사업 준비 현황
계획수립 단계	·시설개요 : 건축개요, 시설이용자 예상현황, 대상지 여건 등 현황 ·사업추진과정 및 주요 자문내용 - 사업추진과정, 사전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수렴 내용 및 결과 - 총괄계획가 자문내용(현장조사, 면담, 협의 등의 내용 및 결과) ·시설계획 검토 및 평가 - 법규검토, 구조안전진단 및 확인, 예정공사비의 적정여부 검토 - 건축계획(배치, 평면, 입면, 단면)의 검토 결과 - 전기 및 기계설비 등 관련 부대시설 계획 검토 결과 ·운영관리계획 검토 - 운영주체 및 조직/운영비 절감방안/복지·문화 프로그램 연계방안 등
시공 단계	·시공현황 : 공사관계자 및 업체선정방식, 시공과정 등 ·시공과정 모니터링 평가 : 토공사,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
준공 및 완료 단계	·시설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운영주체, 운영비, 복지·문화 프로그램 연계, 기타사항 등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 주민 / 지자체 / 정부기관

2. 부문별·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앞서 제시한 시범사업 모니터링 방법에 의한 부문별·단계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 (표 3-2), (표 3-3)과 같음

(표 3-2) 시범사업 모니터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요내용

부문	문제점	개선방안
사업 신청 및 대상지 선정	○사업신청 시 사전교육 및 담당부서 한정 필요 - 기존 마을회관 및 경로당 소관부서에서 사업을 담당하여 농촌의 여건 및 건축 관련 이해도 부족	○사전교육 실시 ○지자체 농정관련 부서 등으로 담당부서 권장
	○주민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역량강화 및 주민교육 필요성 - 사업의 규모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주민요구의 과다 문제 발생	○주민협의체의 조기구성 ○사업홍보 및 주민이해도 향상을 위한 주민교육 추진
	○대상지 선정과정의 현장실사 필요성 - 실제여건과 맞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 - 리모델링이 신축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추진 일정 지체	○대상지 선정시 전문가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 ○리모델링, 신축 등 사업유형은 현장실사를 거쳐 결정
	○예산편성 및 계획수립의 조기집행을 위한 방안 마련 - 추경예산 편성 후 사업추진으로 인한 지연	○전년도에 충분한 사전조사 후 사업량 및 사업대상지 선정 ○예산확보 현황을 고려한 지자체 검토 후 대상지 선정
추진 주체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 - 경로당 중심으로 구성되어 전체주민의 의견수렴에 한계	○마을리더를 주축으로 한 협의체를 가능한 조기에 구성하고 선정기준에 반영
계획 수립 업체 선정	○시군 관행에 따른 설계업체 선정으로 인한 사업 이해도 및 품질 저하 - 시군 지역의 건축사가 수의계약함으로 인한 품질저하	○사전 기획설계를 도입하여 설계 적용 ○지명경쟁입찰 등 효율적 업체선정 방식을 가이드라인에 제시하여 활용 유도
총괄 계획가 운영	○총괄계획가의 선정 시기 - 대상지 선정 후 위촉에 따른 지역여건 파악과 일정 어려움	○선정 이전 사전 위촉하여 대상지 선정 및 기획설계 과정에서 총괄계획가 적극 활용
	○총괄계획가의 권한과 역할 강화 필요 - 형식적인 자문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문검토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	○기획설계 단계부터 총괄계획가가 참여하고 설계과정에서 변경은 총괄계획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 유도
운영 및 관리	○지속적 운영·관리 방안 마련 미흡 - 사업시행 후 시설물의 지속적 사용에 대한 운영방안 마련 미흡	○해당 지자체의 지원 등을 계획안에 반영 ○입주예정자 확보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이 수립된 대상지에 한정하여 대상지 선정 ○지자체의 지속적인 운영점검 및 확인
사업비 적절성	○적정수준의 사업비 산출과 규모 및 유형에 따른 차등지원 - 실질적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에 어려움 (친환경,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추가 부대비용 발생 등)	○적정 사업비 산출 ○시설과 관련된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활용 계획을 검토하고 연계하여 사업추진
	○ 신축으로 계획시 사업비 부족 및 사업추진이 어려운 문제 발생	○사업대상지 조건은 리모델링으로 한정하되, 대상지 여건을 감안하여 신축으로 계획시 지자체의 사업예산 확보 필요

(표 3-3) 지자체 담당자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주요내용

부문	문제점 및 애로사항
사업기간 및 준비기간 부족	·지자체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지연 및 기간부족
	·설계 및 설계변경 단계에서 관계자 의견조율 및 일정조절 어려워 사업 장기화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지 물색 어려움과 준비기간 부족
사업비 부족	·신축, 무장애디자인, 기타 필요설비 등 현실적인 사업비 부족 문제
운영 및 관리	·시설비에 한하여 보조됨으로써 운영·관리에 대한 일정기간 보조 필요
기타	·담당부서의 일관성 문제(주민복지과 등 전문성 부족)
	·총괄계획가 자문 어려움(원거리, 일정조절이 힘듦)

○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정리하면, 대상지에 따라 각 부문별·단계별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사업신청 및 대상지 선정

○ 사업신청 시, 또는 지자체 자체사업을 추진할 경우 담당부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시범사업에서 지자체의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 등 기존 마을회관 및 경로당 소관부서에서 사업을 담당하여 농촌의 여건 및 건축 관련 이해도가 부족하여 담당부서를 농정관련 부서 등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동시설 조성에 대한 담당부서와 시설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실제 운영과정에서 담당자의 이해부족과 문제발생에 따른 대응능력 부족 등이 발생함

○ 주민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역량강화 및 주민교육 필요성
- 주민들의 의견 및 요구 등이 사업의 규모나 취지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전설명 등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사전 이해과정 및 역량강화가 필요

○ 대상지 선정과정의 현장실사 필요성
- 각 대상지에서 제출한 제안서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대상지 방문결과, 실제여건과 맞지 않고 유지·관리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한 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 발생
- 사업 신청 시 리모델링으로 계획하고, 현장점검을 거쳐 신축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추진 일정이 지체되는 문제점 발생

○ 대상지 선정기준 검토
-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상지를 선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재검토하고 대상부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예산편성 및 계획수립의 조기집행을 위한 방안 마련
- '14년 시범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을 확보한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지연 문제가 발생하여 지자체의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이 면밀히 수립될 필요가 있음

나. 추진주체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
- 현실적으로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녀회, 노인회 등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어 전체주민의 의견수렴에 한계가 있음

○ 지자체 담당자의 잦은 교체 문제
- 사업을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가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기 힘들어 사업이 지연되고 총괄계획가 협의, 주민협의 등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함

다. 계획수립 업체선정

○ 시군 관행에 따른 업체선정으로 인한 사업 이해도 및 품질 저하
- 계획수립을 위한 업체선정에 있어 시군 관행에 따라 관계를 유지하던

지역의 건축사가 수의계약함에 따라 양질의 계획안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라. 총괄계획가 운영

○ 총괄계획가의 선정 시기
- '14년 시범사업에서는 사업대상지 선정 후, 총괄계획가를 위촉하였으나 사업선정 및 초기 계획단계에서 지역여건 파악과 일정상 어려움이 많음

○ 총괄계획가의 권한과 역할의 강화 필요
- 일부 지자체에서 계획수립 과정 중이 아닌 마무리 단계에서 총괄계획가의 자문검토를 진행하거나 자문검토를 받고 계획에는 반영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역할에만 그쳐 자문검토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마. 운영 및 관리

○ 지속적 운영·관리 방안 마련 미흡
- 사업시행 후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시설물의 지속적 사용에 대한 지자체 및 해당지역의 방안 마련이 미흡하고, 연계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향후 운영·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자체의 대응이 필요함

바. 사업비 적절성

○ 적정수준의 사업비 산출과 규모 및 유형에 따른 차등지원
- 사업비가 적어 실질적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친환경,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재료선택, 가구 및 집기 등 추가 부대비용 발생

○ 신축으로 계획 시 사업비 부족 및 사업추진이 어려운 문제 발생
- 사업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으로 계획함으로써 사업비 부족 및 사업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사. 지자체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사업기간의 부족
-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지연 및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연내 마무리가 불가한 대상지가 일부 나타남(동절기 공사 중지 포함)
- 설계 및 설계변경 단계에서 마을주민, 설계사무소, 지자체 담당자, 총괄계획가 등의 의견조율 및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 사업기간이 길어지며, 소규모 시설인데 반해 기간의 장기화로 사업추진에 애로

○ 사전조사 및 대상지 선정 등 준비기간 부족
- 기존 유휴시설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지를 물색하기에는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 또는 마을회 등에서 소유하거나 장기 임대가 가능한 시설물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사업신청 이전에 사전조사와 대지마련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

○ 사업비 부족 문제
- 신축으로 사업추진 시, 무장애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함
- 건축물 공사비 이외 화장실, 전기용량, 보일러, 고효율 에너지 설비 등 추가증설에 따른 비용과 급식시설의 경우 필요한 집기류 지출 등 추가예산 필요

○ 향후 운영관리 지원 부재
- 본 사업이 시설비에 한하여 보조됨으로써 운영 및 관리가 미흡할 것

을 감안, 향후 일정기간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
- 급식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주민협약안 마련에 도움이 필요함. 일률적이고 일반적인 협약안 마련에 그치고 있음

○ 시군 담당부서의 일관성 문제
- 사업의 주체는 농식품부인데 반해 시군 담당부서는 주민복지과 등에서 담당하여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농식품부에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

○ 총괄계획가 자문 관련
- 도별로 1~2명씩 총괄계획가가 운영되어 원거리 시군의 경우 자문기회가 어렵고,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음

○ 이상의 모니터링 결과 문제점들은 향후 농촌고령자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또는 지자체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이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4장. 단계별 사업추진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함

제2절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평가

1. 시범사업 평가의 목적 및 내용

○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14년 농식품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추진 대상지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혜자인 농촌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효과 및 사업성과를 정량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향후 각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경우 참고함으로써 농촌지역에 양질의 공동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기여함

○ 또한, '14년 시범사업에 대하여 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우수사례를 발굴, 제시함으로써 사업성과 확산 및 향후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주민만족도 조사

가. 조사내용

○ 공동생활홈 (5개 분야) : 거주, 정서, 냉난방, 영양 및 위생, 유지관리

○ 공동급식시설 (6개 분야) : 시설, 정서, 영양, 안전, 유지관리, 시설이용

○ 작은목욕탕 (4개 분야) : 시설, 위생, 안전, 유지관리

나. 조사 및 분석방법

○ 시설 유형별 설문조사표에 의한 조사자 직접조사

○ 조사결과 분석은 조사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배점(라. 세부항목별 조사내용 참조)을 적용하며,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유형별·시설별 종합 만족도 점수를 산정

다. 조사대상

○ '14년 시범사업 준공 대상지 : **총 20개소**

- 공동생활홈 5개소, 공동급식시설 13개소, 작은목욕탕 2개소
- 조사 대상지 선정 기준 : 시설 준공 후 운영 중인 시설을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미준공 대상지 및 준공은 완료하였으나 운영기간이 부족한 시설(최소 1개월 이상)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12)]

○ 조사대상자 : 각 시설이용자 및 거주자, **총 255명**

- 공동생활홈 21명(거주자), 공동급식시설 195명(이용자), 작은목욕탕 39명(이용자)

(표 3-4) 주민만족도 조사 대상지

구분	공동생활홈(5개소)		공동급식시설(13개소)		작은목욕탕(2개소)	
	조사대상	설문부수	조사대상	설문부수	조사대상	설문부수
	5	**21**	13	**195**	2	**39**
경기			이천시 신둔면 수하1리	20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19
강원	영월군 북면 공기2리	3				
	인제군 서화면 서화2리	3				
충북						
충남 (세종)			서천군 한산면 마양리 마을	15		
전북	김제시 금산면 봉은마을	8	군산시 옥서면 장전마을	9		
			남원시 이백면 초동마을	10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	10		
			정읍시 감곡면 원삼마을	21		
전남			곡성군 석곡면 죽산마을	26	함평군 월야면 진하마을	20
경북			김천시 지례면 삼실마을	10		
			의성군 가음면 가산3리	20		
			청송군 진보면 세장마을	9		
			칠곡군 북삼읍 어로1리	20		
경남	남해군 삼동면 내산마을	2	사천시 사남면 연천마을	20		
	사천시 축동면 가산마을	5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5		

12) 일반적으로 주민 만족도 조사 및 거주 후 평가(POE)는 구체적으로 최소한의 이용(거주)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점검·평가하는 측면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을 권장함. 본 조사에서는 성과 점검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1개월 이상 운영실적을 보유한 시설을 조사대상지로 선정함

라. 세부항목별 조사내용

1) 공동생활홈

대분류	중분류	평가항목	방식	배점
거주	입지조건	입지조건 및 접근성	선택형	5
	거주만족감	내부공간 및 거주 만족도	선택형	5
	소 계		-	10
정서	쾌적성	내부공간의 개방감 및 쾌적성	선택형	5
	친밀감	거주자 간 친밀감에 대한 만족도	선택형	5
	소 계		-	10
냉난방	난방	겨울철 난방비 전·후 변화 및 만족도	선택형+기술형	10
	냉방	여름철 냉방비 전·후 변화 및 만족도	선택형+기술형	10
	소 계		-	20
영양 및 위생	식사	식사 횟수(평균)의 전·후 변화 및 만족도	선택형+기술형	10
	목욕	목욕횟수의 전·후 변화 및 만족도	선택형+기술형	10
	청소	청소횟수의 전·후 변화 및 만족도	선택형+기술형	10
	세탁	세탁횟수의 전·후 변화 및 만족도	선택형+기술형	10
	소 계		-	40
유지 관리	거주비용	거주비용(월 단위)의 전·후 변화 및 만족도	선택형+기술형	10
	복지서비스	지자체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선택형	5
	운영방식	공동시설 운영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선택형	5
	소 계		-	20
총 계			13문항	100

2) 공동급식시설

대분류	중분류	평가항목	방식	배점
시설	입지조건	입지조건 및 접근성	선택형	5
	내부 공간구성	식당 및 주방의 규모	선택형	5
		식당 및 주방의 위치	선택형	5
	소 계		-	15
정서	쾌적성	내부공간의 쾌적성	선택형	5
	친밀감	이용자 간 친밀감에 대한 만족도	선택형	5
	소 계		-	10
영양	식사	식사 횟수(평균)의 전·후 변화 및 만족도	선택형	10
		식사 인원(평균)의 전·후 변화 및 만족도	선택형+기술형	10
		반찬의 가지 수(평균) 전·후 변화 및 만족도	선택형+기술형	10
		음식의 질(평균) 만족도	선택형	5
	식비	식사 비용(평균)의 전·후 변화 및 만족도	선택형+기술형	10
	소 계		-	45
안전	안전성	사고 및 위험에 대한 안전성	선택형	5
	유니버설디자인	시설이용의 편리성	선택형	5
	소 계		-	10
유지 관리	복지서비스	지자체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선택형+기술형	5
	운영비용	공동시설 운영비용에 대한 만족도	선택형	5
	소 계		-	10
시설 이용	시설 이용	전반적 시설 이용 만족도	선택형	10
	소 계		-	10
총 계			15문항	100

3) 작은목욕탕

대분류	중분류	평가항목	방식	배점
시설	입지조건	입지조건 및 접근성	선택형	5
	내부 공간구성	욕실의 규모	선택형	5
		욕탕의 크기	선택형	5
		탈의실의 규모	선택형	5
		휴게공간의 만족도	선택형	5
	정서	내부공간의 개방감 및 쾌적성	선택형	5
		이용자 간 친밀감에 대한 만족도	선택형	5
	소 계		-	35
위생	목욕	목욕횟수(월평균)의 전·후 변화 및 만족도	선택형+기술형	10
	청결	시설 내 위생상태 만족도	선택형	5
	수질	수질에 대한 만족도	선택형	5
	소 계		-	20
안전	안전성	안전사고 및 위험에 대한 안심도	선택형	5
	유니버설디자인	시설이용의 편리성	선택형+기술형	10
	소 계		-	15
유지 관리	운영유지비	목욕이용료의 적정성	선택형+기술형	10
	복지서비스	지자체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선택형+기술형	10
	운영방식	운영방식 만족도	선택형+기술형	10
	소 계		-	30
총 계			15문항	100

마. 종합분석 결과

1) 종합 만족도 결과

○ 종합 만족도 : 78.8%

- 공동생활홈 : 81.2%, 공동급식시설 : 77.9%, 작은목욕탕 : 77.4%

(표 3-5) 종합 만족도 결과

구분	공동생활홈(5개소)		공동급식시설(13개소)		작은목욕탕(2개소)	
	조사대상	종합 만족도 (%)	조사대상	종합 만족도 (%)	조사대상	종합 만족도 (%)
경기			이천시 신둔면 수하1리	81.8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72.9
강원	영월군 북면 공기2리	77.8				
	인제군 서화면 서화2리	76.7				
충북						
충남 (세종)			서천군 한산면 마양리 마을	68.8		
전북	김제시 금산면 봉은마을	83.1	군산시 옥서면 장전마을	70.3		
			남원시 이백면 초동마을	75.6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	64.7		
			정읍시 감곡면 원삼마을	85.4		
전남			곡성군 석곡면 죽산마을	92.1	함평군 월야면 진하마을	82.0
경북			김천시 지례면 삼실마을	87.7		
			의성군 가음면 가산3리	78.9		
			청송군 진보면 세장마을	74.4		
			칠곡군 북삼읍 어로1리	81.8		
경남	남해군 삼동면 내산마을	84.5	사천시 사남면 연천마을	63.4		
	사천시 축동면 가산마을	83.8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87.8		
계		81.2		77.9		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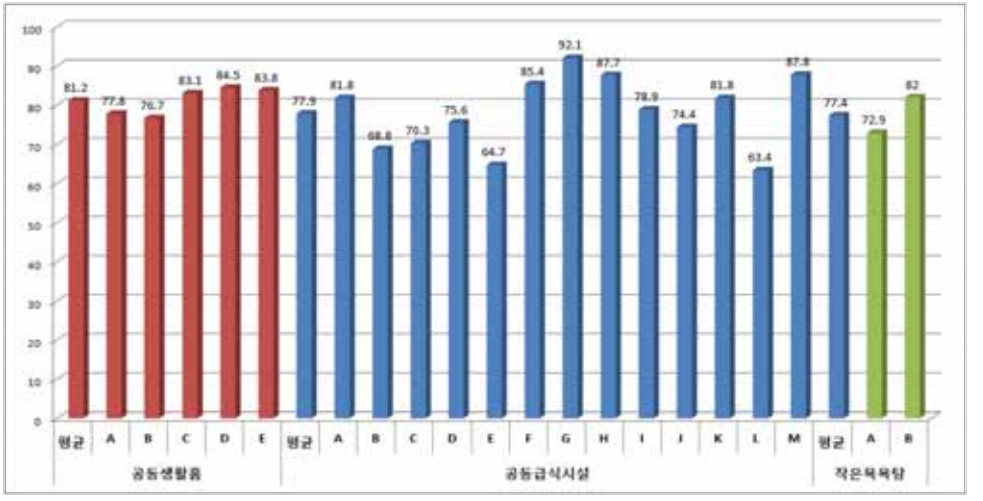

<그림 3-1> 유형별·대상지별 종합 만족도

○ 유형별·대상지별 만족도를 모두 합산한 공동시설의 종합 만족도는 78.8%로 나타남. 유형별로는 공동생활홈이 가장 높은 81.2%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공동급식시설과 작은목욕탕은 각각 77.9%, 77.4%로서 유형별로는 만족도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 대상지별로는 곡성군 죽산마을 공동급식시설이 가장 높은 92.1%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귀포시 신평리 공동급식시설(87.8%), 김천시 삼실마을 공동급식시설(87.7%)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상지는 사천시 연천마을 공동급식시설(63.4%), 무주군 두문마을 공동급식시설(64.7%) 등이 가장 낮게 조사됨

○ 공동생활홈의 경우, 편차가 심하지는 않으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대상지는 남해군 내산마을 공동생활홈이 84.5%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장 낮은 대상지는 인제군 서화2리 공동생활홈이 76.7%의 만족도로 조사됨

○ 작은목욕탕은 만족도 조사의 대상지가 2개소인 것을 고려할 때, 표본의 수가 작아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으나, 포천시 우금리 작은목욕탕이 72.9%, 함평군 진하마을 작은목욕탕이 82.0%의 만족도로 조사됨

2) 부문별 만족도 결과

○ 공동생활홈

- 각 유형별 조사항목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면, 공동생활홈의 경우 거주 부문(입지조건, 거주만족감)과 정서 부문(쾌적성, 친밀감)에서 각각 93.8%, 92.9%의 만족도로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으며, 영양 및 위생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75.2%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공동생활홈에 입주함으로써 기존의 낡은 주택에서 새로운 시설 및 공간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상대적으로 식사, 목욕, 청소, 세탁 등 생활패턴의 변화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일부 공동생활홈의 경우 입주 후 아직까지 세탁기, 냉장고 등 집기가 구비되지 않은 점이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표 3-6) 공동생활홈 부문별 만족도 결과

대분류	중분류	평가항목	만족도(%)
거주	입지조건	입지조건 및 접근성	96.2
	거주만족감	내부공간 및 거주 만족도	91.4
	소 계		**93.8**
정서	쾌적성	내부공간의 개방감 및 쾌적성	90.5
	친밀감	거주자 간 친밀감에 대한 만족도	95.2
	소 계		**92.9**
냉난방	난방	겨울철 난방비 변화 및 만족도	88.0
	냉방	여름철 냉방비 변화 및 만족도	100.0
	소 계		**88.0**
영양 및 위생	식사	식사 횟수(평균)의 변화 및 만족도	87.6
	목욕	목욕횟수의 변화 및 만족도	74.3
	청소	청소횟수의 변화 및 만족도	78.1
	세탁	세탁횟수의 변화 및 만족도	61.0
	소 계		**75.2**
유지 관리	거주비용	거주비용의 변화 및 만족도	82.9
	복지서비스	지자체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75.2
	운영방식	공동시설 운영방식의 전반적 만족도	84.8
	소 계		**81.4**

주) 만족도(%)는 각 항목별 점수의 100% 환산 지수임

○ 공동급식시설

- 공동급식시설은 공간구성과 관련된 시설 부문과 정서 부문, 안전 및 시설이용 부문에서 8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영양 부문의 만족도는 74.2%로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항목별로 보면 식사 인원에 대한 만족도(82.5%)가 가장 높아 공동급식시설에서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음식의 맛과 질에 대한 만족도(79.5%) 또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됨. 반면 식사비용 부문과 반찬의 가지 수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3-7) 공동급식시설 부문별 만족도 결과

대분류	중분류	평가항목	만족도(%)
시설	입지조건	입지조건 및 접근성	79.2
	내부공간구성	식당 및 주방의 규모	86.9
		식당 및 주방의 위치	87.9
	소 계		**84.6**
정서	쾌적성	내부공간의 쾌적성	86.4
	친밀감	이용자 간 친밀감에 대한 만족도	89.2
	소 계		**87.8**
영양	식사	식사 횟수(평균)의 변화 및 만족도	76.2
		식사 인원(평균)의 변화 및 만족도	82.5
		반찬의 가지 수(평균) 변화 및 만족도	67.7
		음식의 질(평균) 만족도	79.5
	식비	식사 비용(평균)의 변화 및 만족도	68.4
	소 계		**74.2**
안전	안전성	사고 및 위험에 대한 안전성	85.8
	유니버설 디자인	시설이용의 편리성	88.0
	소 계		**86.9**
유지 관리	복지서비스	지자체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71.6
	운영비용	공동시설 운영비용에 대한 만족도	63.4
	소 계		**67.5**
시설이용	시설이용	전반적 시설 이용 만족도	83.8
	소 계		**83.8**

주) 만족도(%)는 각 항목별 점수의 100% 환산 지수임

○ 작은목욕탕

- 작은목욕탕은 각 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위생 부문에서 청결(84.1%)과 수질(85.6%)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목욕횟수 또한 증가하여 높은 만족도(78.5%)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시설 부문에서 욕실의 규모(71.8%)와 욕탕의 크기(69.7%)는 이용자의 수에 비해 작다고 느끼며, 휴계공간의 만족도(71.3%)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3-8) 작은목욕탕 부문별 만족도 결과

대분류	중분류	평가항목	만족도(%)
시설	입지조건	입지조건 및 접근성	79.0
	내부공간구성	욕실의 규모	71.8
		욕탕의 크기	69.7
		탈의실의 규모	72.3
		휴계공간의 만족도	71.3
	정서	내부공간의 개방감 및 쾌적성	79.5
		이용자 간 친밀감에 대한 만족도	76.9
	소 계		**74.4**
위생	목욕	목욕횟수(월평균)의 변화 및 만족도	78.5
	청결	시설 내 위생상태 만족도	84.1
	수질	수질에 대한 만족도	85.6
	소 계		**81.7**
안전	안전성	안전사고 및 위험에 대한 안심도	78.5
	유니버설 디자인	시설이용의 편리성	79.0
	소 계		**78.8**
유지 관리	운영유지비	목욕이용료의 적정성	81.5
	복지서비스	지자체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73.8
	운영방식	운영방식 만족도	78.5
	소 계		**77.9**

주) 만족도(%)는 각 항목별 점수의 100% 환산 지수임

<그림 3-2> 유형별·부문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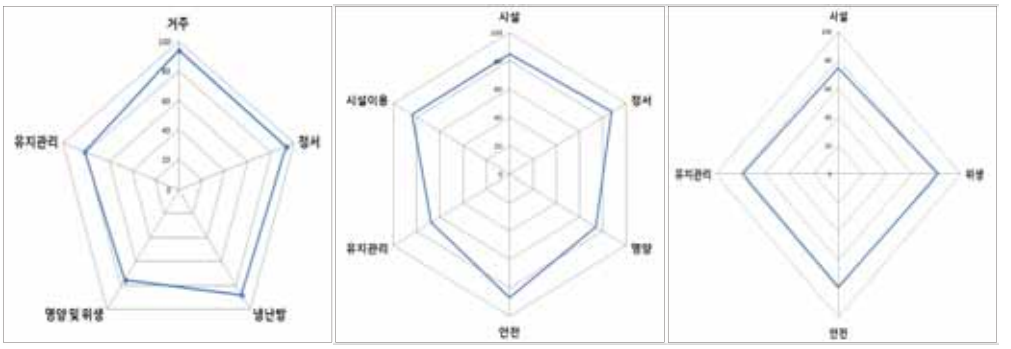

< 공동생활홈 > < 공동급식시설 > < 작은목욕탕 >

바. 유형별 분석 결과

1) 공동생활홈

□ 거주 부문

○ 입지조건

- 공동생활홈의 입지조건은 모든 대상지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81.0%,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19.0%로 조사됨

(표 3-9) 입지조건 만족도

구분	영월 공기2리		인제 서화2리		김제 봉은마을		남해 내산마을		사천 가산마을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만족	3	100.0	1	33.3	8	100.0	-	-	5	100.0	17	**81.0**
대체로 만족	-	-	2	66.7	-	-	2	100.0	-	-	4	**19.0**
보통	-	-	-	-	-	-	-	-	-	-	-	-
불만족	-	-	-	-	-	-	-	-	-	-	-	-
매우 불만족	-	-	-	-	-	-	-	-	-	-	-	-
계	3	100.0	3	100.0	8	100.0	2	100.0	5	100.0	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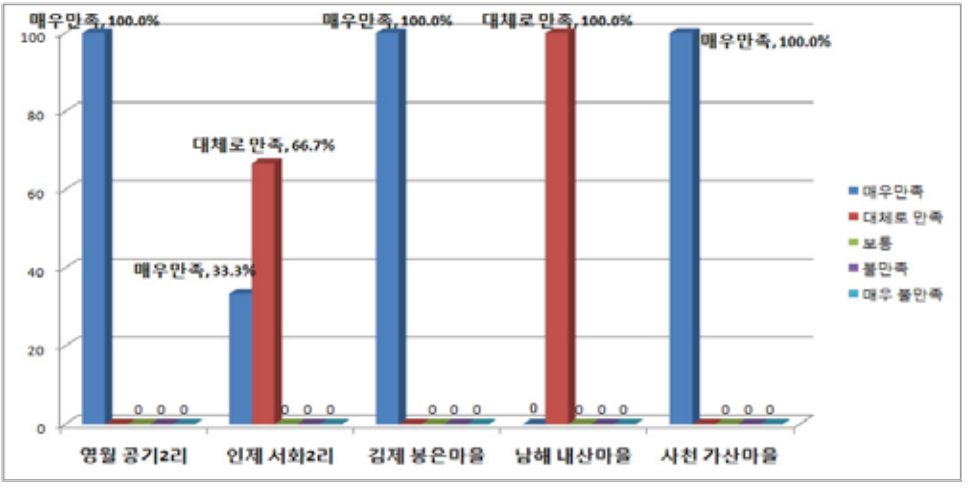

○ 거주 만족감

- 마을에 공동생활홈이 설치되어 거주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4%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4.3%의 응답자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조사되어 거주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0) 거주 만족감

구분	영월 공기2리		인제 서화2리		김제 봉은마을		남해 내산마을		사천 가산마을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만족	-	-	1	33.3	7	87.5	2	100.0	5	100.0	15	71.4
대체로 만족	1	33.3	1	33.3	1	12.5	-	-	-	-	3	14.3
보통	2	66.7	1	33.3	-	-	-	-	-	-	3	14.3
불만족	-	-	-	-	-	-	-	-	-	-	-	-
매우 불만족	-	-	-	-	-	-	-	-	-	-	-	-
계	3	100.0	3	100.0	8	100.0	2	100.0	5	100.0	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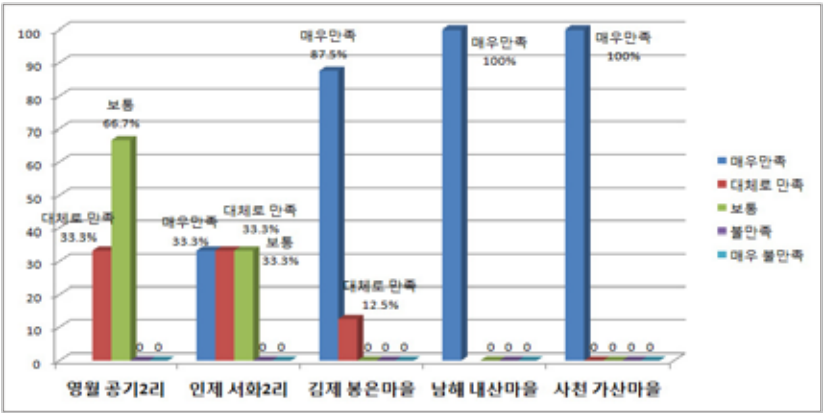

□ 정서 부문

○ 쾌적성

- 공동생활홈의 내부공간이 쾌적하고 개방적인 것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6.7%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4.3%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쾌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1) 쾌적성 만족도

구분	영월 공기2리		인제 서화2리		김제 봉은마을		남해 내산마을		사천 가산마을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만족	-	-	3	100.0	8	100.0	1	50.0	2	40.0	14	**66.7**
대체로 만족	-	-	-	-	-	-	1	50.0	3	60.0	4	**19.0**
보통	3	100.0	-	-	-	-	-	-	-	-	3	**14.3**
불만족	-	-	-	-	-	-	-	-	-	-	-	-
매우 불만족	-	-	-	-	-	-	-	-	-	-	-	-
계	3	100.0	3	100.0	8	100.0	2	100.0	5	100.0	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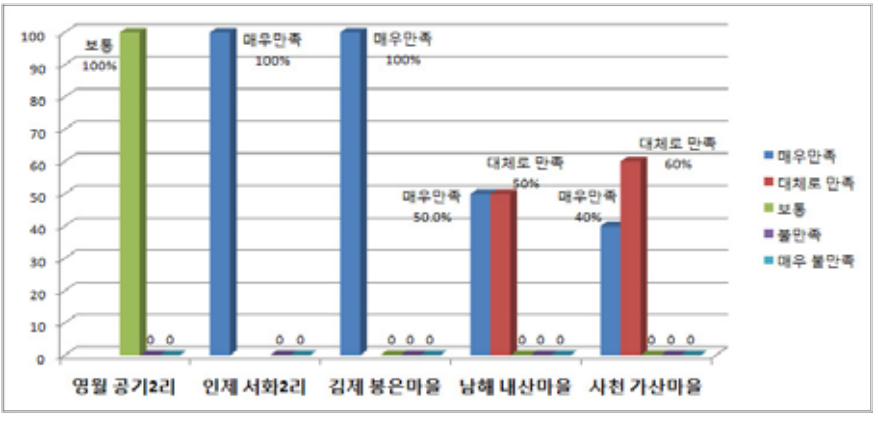

○ 친밀감

- 이용자간 친밀도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대상지에서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76.2%,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23.8%로 조사됨

(표 3-12) 친밀감 만족도

구분	영월 공기2리		인제 서화2리		김제 봉은마을		남해 내산마을		사천 가산마을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만족	-	-	3	100.0	8	100.0	1	50.0	4	80.0	16	76.2
대체로 만족	3	100.0	-	-	-	-	1	50.0	1	20.0	5	23.8
보통	-	-	-	-	-	-	-	-	-	-	-	-
불만족	-	-	-	-	-	-	-	-	-	-	-	-
매우 불만족	-	-	-	-	-	-	-	-	-	-	-	-
계	3	100.0	3	100.0	8	100.0	2	100.0	5	100.0	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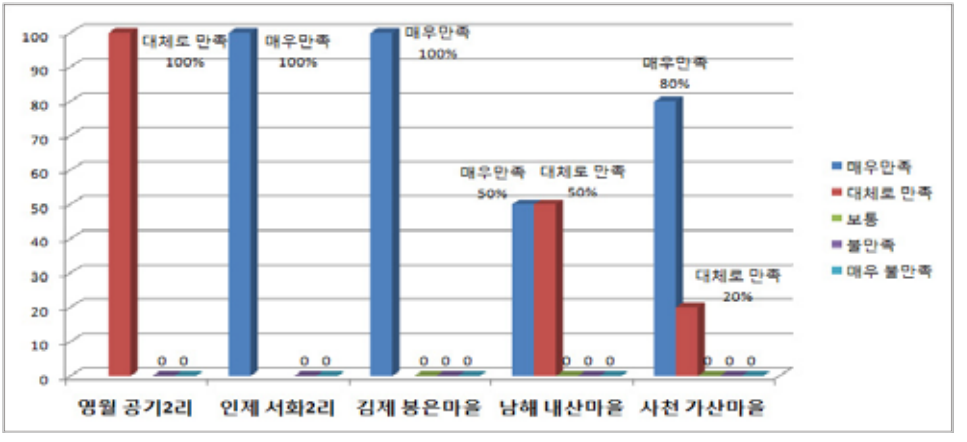

□ 냉·난방 부문

○ 냉·난방 비용 만족도

- 공동생활홈에 입주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냉난방비가 절약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만족도는 난방비 절약도가 88.0%, 냉방비 절약도는 100.0%로 조사됨
- 구체적으로는 난방비의 경우, 거주 전에는 기름과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여 월 평균 3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거주 후에는 대부분 전기를

사용하여 월 평균 10만원이 소요되어 1인당 평균 20만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남

* 냉방비의 경우는 본 조사의 대상지가 대부분 '14년 12월~'15년 5월 사이에 준공되고 입주하여 본격적인 여름을 아직 지내보지 않아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표 3-13) 냉·난방비 비용 만족도

구분		결과	비고
난방비	만족도	88.0%	
	거주 전 난방비(평균)	30만원/월	20만원 절약
	거주 후 난방비(평균)	10만원/월	
냉방비	만족도	100.0%	
	거주 전·후 냉방비 변화	미응답	조사시기(6월)의 한계로 아직 냉방 가동실적 없음

<그림 3-3> 거주 전·후 난방비 비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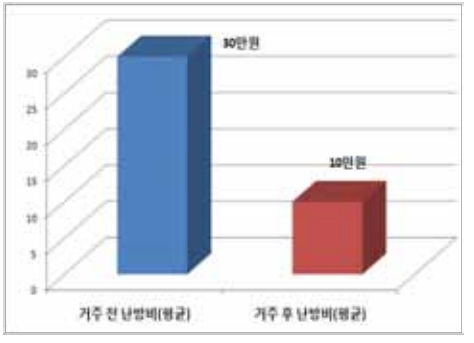

□ 영양 및 위생 부문

○ 식사 횟수 변화 및 만족도

- 영양 및 위생 부문에서 식사에 대한 만족도는 87.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식사횟수는 거주 전 1일 평균 2.4회에서 거주 후 2.9회로 0.5회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위생 부문에서 목욕에 대한 만족도는 74.3%로 나타나며, 목욕횟수의 변화는 거주 전 월 평균 13.4회에서 거주 후 17.7회로 4.3회가 증가함
- 청소에 대한 만족도는 78.1%로 나타나며, 청소횟수는 거주 전 월 평균 24.6회에서 거주 후 28.8회로 4.2회가 증가함
- 세탁에 대한 만족도는 61.0%로 다른 부문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며, 횟수의 변화는 거주 전 월 평균 9.8회에서 거주 후 11.4회로 1.6회 증가함. 이러한 결과는 일부 공동생활홈의 경우 아직 세탁기가 구비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3-14) 영양 및 위생 부문 만족도 및 변화 횟수

구분		결과	변화 횟수
식사 횟수	만족도	87.6%	
	거주 전 식사횟수(평균)	2.4회/일	0.5회/일 증가
	거주 후 식사횟수(평균)	2.9회/일	
목욕 횟수	만족도	74.3%	
	거주 전 목욕횟수(평균)	13.4회/월	4.3회/월 증가
	거주 후 목욕횟수(평균)	17.7회/월	
청소 횟수	만족도	78.1%	
	거주 전 청소횟수(평균)	24.6회/월	4.2회/월 증가
	거주 후 청소횟수(평균)	28.8회/월	
세탁 횟수	만족도	61.0%	
	거주 전 세탁횟수(평균)	9.8회/월	1.6회/월 증가
	거주 후 세탁횟수(평균)	11.4회/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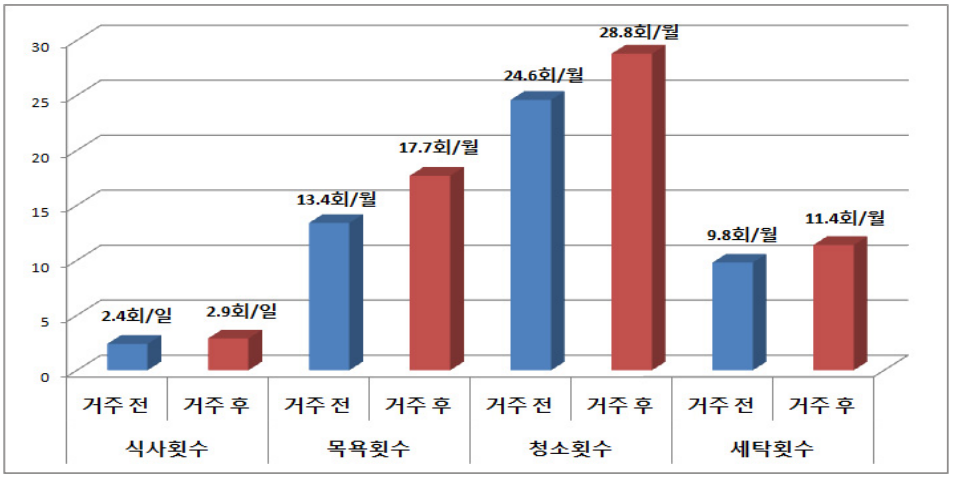

□ 유지관리 부문

○ 거주비용

- 유지관리 부문에서 거주비용은 공과금, 주택 임대료 등 거주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하며, 조사결과 입주 전 월 평균 11.6만원에서 입주 후 5.3만원으로 6.3만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는 82.9%임

(표 3-15) 거주비용 만족도

구분		결과	비고
거주비용	만족도	82.9%	
	입주 전 거주비용 (평균)	11.6 만원/월	6.3만원 절약
	입주 후 거주비용 (평균)	5.3 만원/월	

<그림 3-4> 입주 전·후 거주비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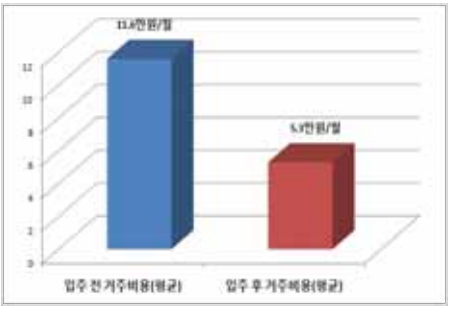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는 공동생활홈과 연계되어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말하며, 응답자의 23.8%가 “매우 만족”, 47.6%가 “보통”이라고 응답함. 상대적으로 “보통”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은 건강검진 등의 복지서비스가 공동생활홈 설치로 인해 새롭게 제공된 것이 아니라 설치 이전부터 마을에 기본적으로 서비스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공동생활홈과 연계되는 지자체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만족하고 있는 서비스는 생활체조, 요가 등의 운동 프로그램과 노래교실, 비누 만들기 등의 노인여가 프로그램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16) 복지서비스 만족도

구 분	영월 공기2리		인제 서화2리		김제 봉은마을		남해 내산마을		사천 가산마을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만족	3	100.0	-	-	1	12.5	1	50.0	-	-	5	23.8
대체로 만족	-	-	-	-	5	62.5	1	50.0	-	-	6	28.6
보통	-	-	3	100.0	2	25.0	-	-	5	100.0	10	47.6
불만족	-	-	-	-	-	-	-	-	-	-	-	-
매우 불만족	-	-	-	-	-	-	-	-	-	-	-	-
계	3	100.0	3	100.0	8	100.0	2	100.0	5	100.0	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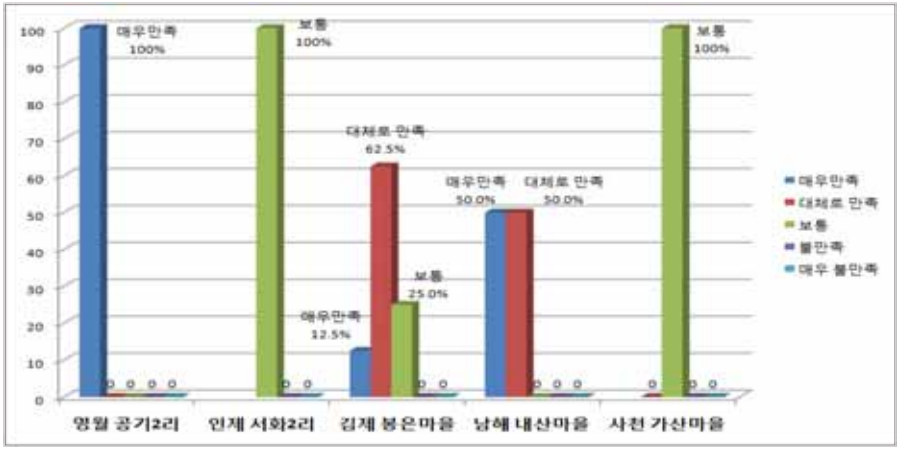

○ 운영방식

- 공동생활홈의 운영방식은 전체 응답자의 81%가 매우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17) 운영방식 만족도

구분	영월 공기2리		인제 서화2리		김제 봉은마을		남해 내산마을		사천 가산마을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만족	-	-	-	-	7	87.5	2	100.0	-	-	9	42.9
대체로 만족	-	-	3	100.0	-	-	-	-	5	100.0	8	38.1
보통	3	100.0	-	-	1	12.5	-	-	-	-	4	19.0
불만족	-	-	-	-	-	-	-	-	-	-	-	-
매우 불만족	-	-	-	-	-	-	-	-	-	-	-	-
계	3	100.0	3	100.0	8	100.0	2	100.0	5	100.0	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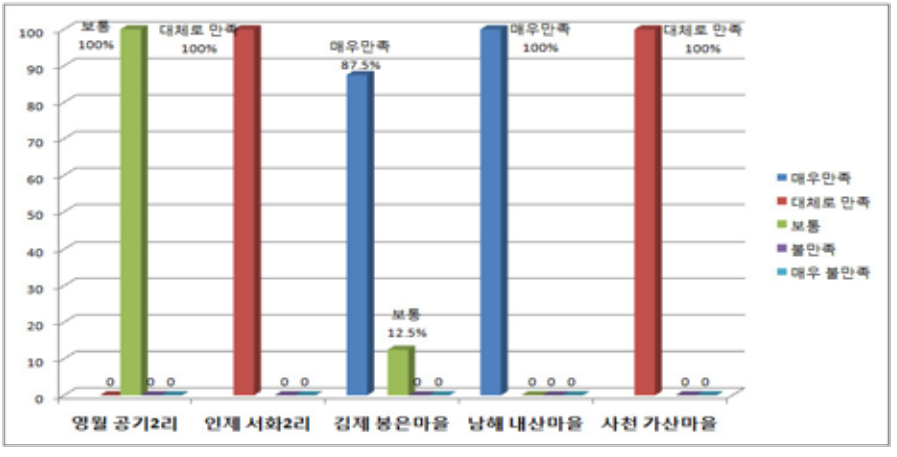

2) 공동급식시설

□ 시설 부문

○ 입지조건

- 공동급식시설의 입지조건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의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66.1%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3-18) 입지조건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이천 수하 1리	서천 마양 리	군산 장전 마을	남원 초동 마을	무주 두문 마을	정읍 원삼 마을	곡성 죽산 마을	김천 삼실 마을	의성 가산 3리	청송 세장 마을	칠곡 어로 1리	사천 연천 마을	서귀포 신평리	계
매우 만족	4 (20.0)	0 (0.0)	6 (66.7)	3 (30.0)	1 (10.0)	17 (81.0)	17 (65.4)	6 (60.0)	6 (30.0)	3 (33.3)	1 (5.0)	3 (15.0)	5 (100.)	**72 (39.7)**
대체로 만족	9 (45.0)	5 (33.3)	0 (0.0)	6 (60.0)	2 (20.0)	2 (9.5)	4 (15.4)	0 (0.0)	3 (15.0)	4 (44.4)	8 (40.0)	12 (60.0)	0 (0.0)	**55 (26.4)**
보통	7 (35.0)	6 (40.0)	3 (33.3)	1 (10.0)	4 (40.0)	1 (4.8)	5 (19.2)	4 (40.0)	9 (45.0)	2 (22.2)	11 (55.0)	4 (20.0)	0 (0.0)	**57 (28.0)**
불만족	0 (0.0)	3 (20.0)	0 (0.0)	0 (0.0)	3 (30.0)	1 (4.8)	0 (0.0)	0 (0.0)	2 (10.0)	0 (0.0)	0 (0.0)	1 (5.0)	0 (0.0)	**10 (5.4)**
매우 불만족	0 (0.0)	1 (6.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계	20	15	9	10	10	21	26	10	20	9	20	20	5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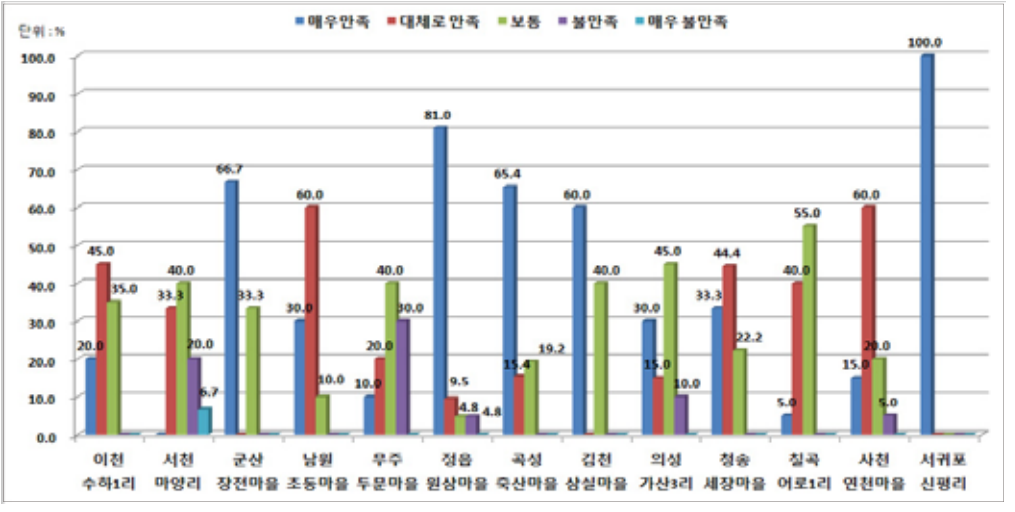

○ 내부 공간구성

- 식당 및 주방의 규모

  · 급식시설의 식당과 주방의 규모 만족도는 전체 응답자의 85.7%가 매우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긍정적 의견이 많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19) 식당 및 주방의 규모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이천 수하 1리	서천 마양 리	군산 장전 마을	남원 초동 마을	무주 두문 마을	정읍 원삼 마을	곡성 죽산 마을	김천 삼실 마을	의성 가산 3리	청송 세장 마을	칠곡 어로 1리	사천 연천 마을	서귀포 신평리	계
매우 만족	9 (45.0)	0 (0.0)	4 (44.4)	6 (60.0)	7 (70.0)	21 (100)	19 (73.1)	5 (50.0)	10 (50.0)	4 (44.4)	10 (50.0)	1 (5.0)	1 (20.0)	97 (47.1)
대체로 만족	11 (55.0)	11 (73.3)	2 (22.2)	4 (40.0)	2 (20.0)	0 (0.0)	7 (26.9)	3 (30.0)	8 (40.0)	4 (44.4)	10 (50.0)	8 (40.0)	3 (60.0)	73 (38.6)
보통	0 (0.0)	4 (26.7)	2 (22.2)	0 (0.0)	1 (10.0)	0 (0.0)	0 (0.0)	2 (20.0)	2 (10.0)	1 (11.1)	0 (0.0)	8 (40.0)	1 (20.0)	21 (12.3)
불만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15.0)	0 (0.0)	3 (1.2)
매우 불만족	0 (0.0)	0 (0.0)	1 (11.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9)
계	20	15	9	10	10	21	26	10	20	9	20	20	5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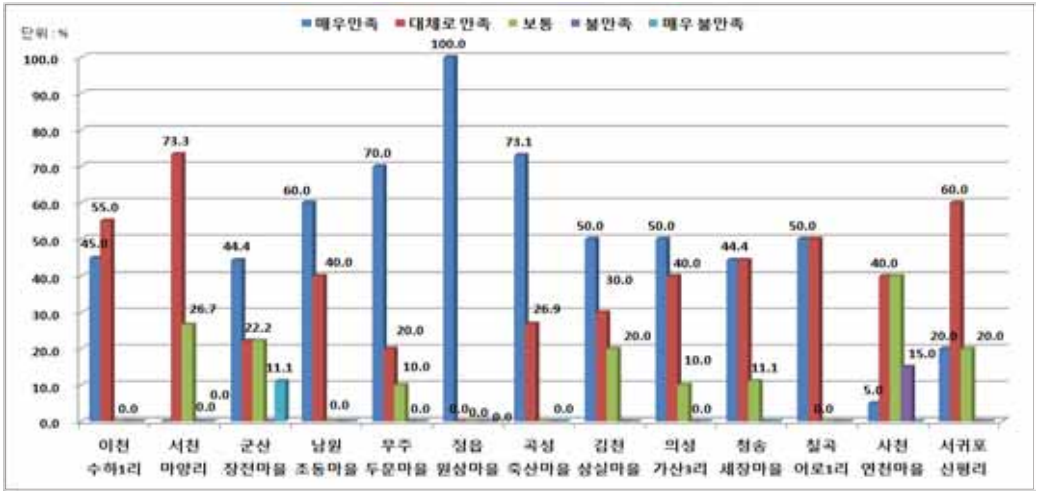

- 식당 및 주방의 위치
  - 급식시설의 식당과 주방 위치는 전체 응답자의 87.7%가 매우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아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20) 식당 및 주방의 위치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이천 수하 1리	서천 마양 리	군산 장전 마을	남원 초동 마을	무주 두문 마을	정읍 원삼 마을	곡성 죽산 마을	김천 삼실 마을	의성 가산 3리	청송 세장 마을	칠곡 어로 1리	사천 연천 마을	서귀포 신평리	계
매우 만족	9 (45.0)	0 (0.0)	7 (77.8)	6 (60.0)	7 (70.0)	20 (95.2)	19 (73.1)	5 (50.0)	9 (45.0)	4 (44.4)	9 (45.0)	1 (5.0)	4 (80.0)	100 (53.1)
대체로 만족	11 (55.0)	10 (66.7)	1 (11.1)	4 (40.0)	2 (20.0)	1 (4.8)	7 (26.9)	2 (20.0)	7 (35.0)	5 (55.6)	11 (55.0)	12 (60.0)	0 (0.0)	73 (34.6)
보통	0 (0.0)	5 (33.3)	0 (0.0)	0 (0.0)	1 (10.0)	0 (0.0)	0 (0.0)	3 (30.0)	4 (20.0)	0 (0.0)	0 (0.0)	7 (35.0)	1 (20.0)	21 (11.4)
불만족	0 (0.0)	0 (0.0)	1 (11.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9)
매우 불만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계	20	15	9	10	10	21	26	10	20	9	20	20	5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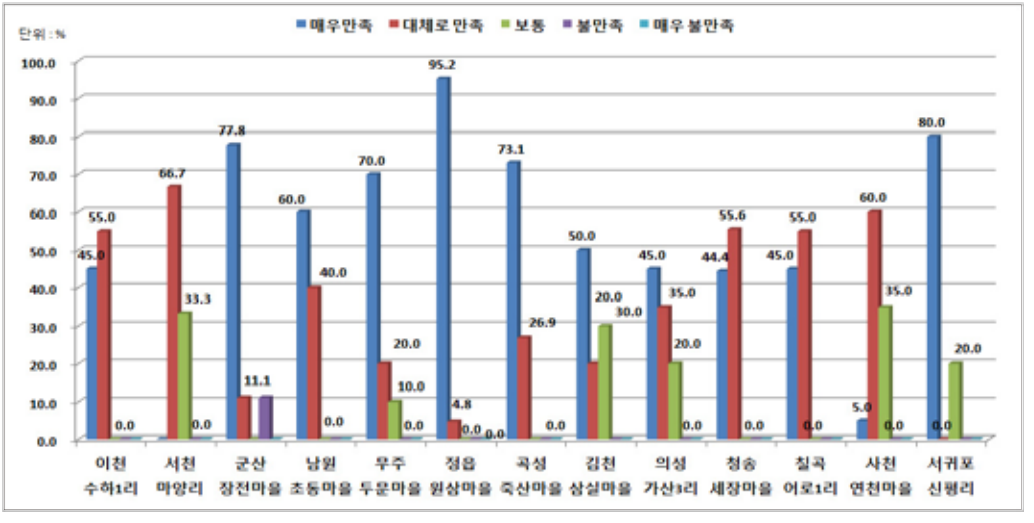

□ 정서 부문

○ 쾌적성

- 공동급식시설의 내부공간이 쾌적한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2.6%가 매우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서천군 마양리 공동급식시설(73.3%)과 청송군 세장마을 공동급식시설(55.6%)의 경우 보통이다 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21) 쾌적성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이천 수하 1리	서천 마양 리	군산 장전 마을	남원 초동 마을	무주 두문 마을	정읍 원삼 마을	곡성 죽산 마을	김천 삼실 마을	의성 가산 3리	청송 세장 마을	칠곡 어로 1리	사천 연천 마을	서귀 포신 평리	계
매우 만족	9 (45.0)	0 (0.0)	7 (77.8)	6 (60.0)	7 (70.0)	17 (81.0)	20 (76.9)	8 (80.0)	6 (30.0)	1 (11.1)	9 (45.0)	0 (0.0)	5 (100)	95 (52.1)
대체로 만족	11 (55.0)	4 (26.7)	0 (0.0)	4 (40.0)	2 (20.0)	4 (19.0)	6 (23.1)	1 (10.0)	12 (60.0)	3 (33.3)	11 (55.0)	11 (55.0)	0 (0.0)	69 (30.5)
보통	0 (0.0)	11 (73.3)	2 (22.2)	0 (0.0)	1 (10.0)	0 (0.0)	0 (0.0)	1 (10.0)	2 (10.0)	5 (55.6)	0 (0.0)	7 (35.0)	0 (0.0)	29 (16.6)
불만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0)	0 (0.0)	2 (0.8)
매우 불만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계	20	15	9	10	10	21	26	10	20	9	20	20	5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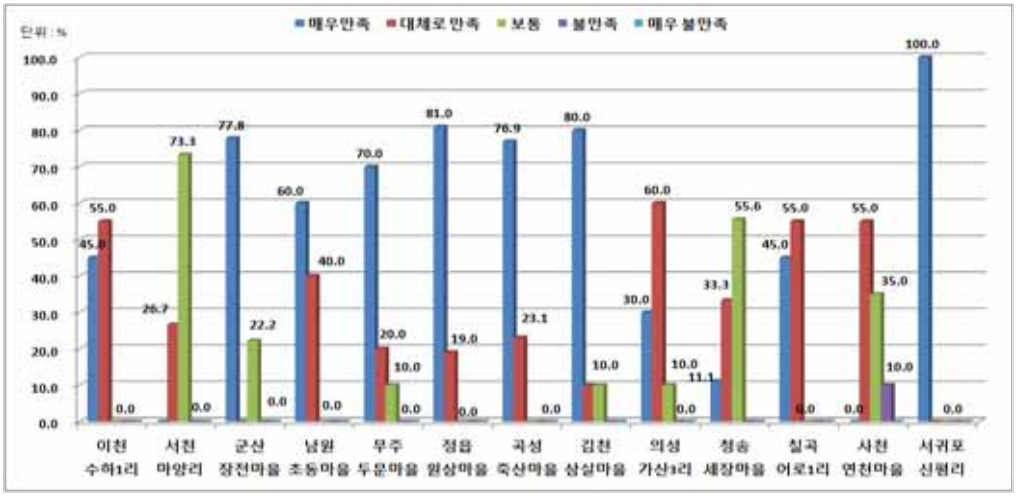

○ 친밀감

- 공동급식시설 이용자 사이의 친밀감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응답자의 93.7%가 매우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함께 모여 다른 사람들과 식사할 수 있는 만족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22) 친밀감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이천 수하 1리	서천 마양 리	군산 장전 마을	남원 초동 마을	무주 두문 마을	정읍 원삼 마을	곡성 죽산 마을	김천 삼실 마을	의성 가산 3리	청송 세장 마을	칠곡 어로 1리	사천 연천 마을	서귀포 신평리	계
매우 만족	9 (45.0)	6 (40.0)	6 (66.7)	8 (80.0)	4 (40.0)	19 (90.5)	22 (84.6)	9 (90.0)	6 (30.0)	2 (22.2)	9 (45.0)	2 (10.0)	4 (80.0)	106 (55.7)
대체로 만족	11 (55.0)	6 (40.0)	1 (11.1)	2 (20.0)	6 (60.0)	2 (9.5)	4 (15.4)	1 (10.0)	11 (55.0)	7 (77.8)	10 (50.0)	14 (70.0)	1 (20.0)	76 (38.0)
보통	0 (0.0)	3 (20.0)	1 (11.1)	0 (0.0)	0 (0.0)	0 (0.0)	0 (0.0)	0 (10.0)	2 (10.0)	0 (0.0)	1 (5.0)	4 (20.0)	0 (0.0)	11 (5.1)
불만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5.0)	0 (0.0)	0 (0.0)	0 (0.0)	0 (0.0)	1 (0.4)
매우 불만족	0 (0.0)	0 (0.0)	1 (11.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4)
계	20	15	9	10	10	21	26	10	20	9	20	20	5	195

□ 영양 부문

○ 식사 횟수
- 영양 부문에서 식사의 횟수에 대한 만족도는 76.2%로 나타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식사횟수의 변화는 이용 전 1일 평균 2.4회에서 이용 후 2.8회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식사 인원
- 식사 인원에 대한 만족도는 82.5%로 영양 부문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용 전 1회당 6.3명이 식사를 하였다면, 이용 후 1회당 22명이 함께 식사를 하여 15.7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반찬의 가지 수 및 음식의 맛과 질
- 식사의 질과 관련된 반찬의 가지 수는 67.7%의 만족도를 보이며, 이용 전 1회당 5.2가지에서 이용 후에는 1회당 6.6가지로 1.4가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반찬의 가지 수는 공동급식시설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음식의 맛과 질의 만족도는 79.5%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식사 비용
- 식사비용 만족도는 전체 68.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지는 않으며, 식사비용 변화는 이용 전 월 평균 14.1만원에서 이용 후 월 평균 9.7만원으로 4.4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3-23) 영양 부문 만족도 및 변화

구 분		결과	변화 횟수
식사 횟수	만족도	76.2%	0.4회/일 증가
	이용 전 식사횟수(평균)	2.4회/일	
	이용 후 식사횟수(평균)	2.8회/일	
식사 인원	만족도	82.5%	15.7명/회 증가
	이용 전 식사인원(평균)	6.3명/회	
	이용 후 식사인원(평균)	22명/회	
반찬의 가지 수	만족도	67.7%	1.4가지/회 증가
	이용 전 반찬의 가지 수(평균)	5.2가지/회	
	이용 후 반찬의 가지 수(평균)	6.6가지/회	
음식의 맛과 질	만족도	79.5%	
식사비용	만족도	68.4%	4.4만원/월 감소
	이용 전 식사비용(평균)	14.1만원/월	
	이용 후 식사비용(평균)	9.7만원/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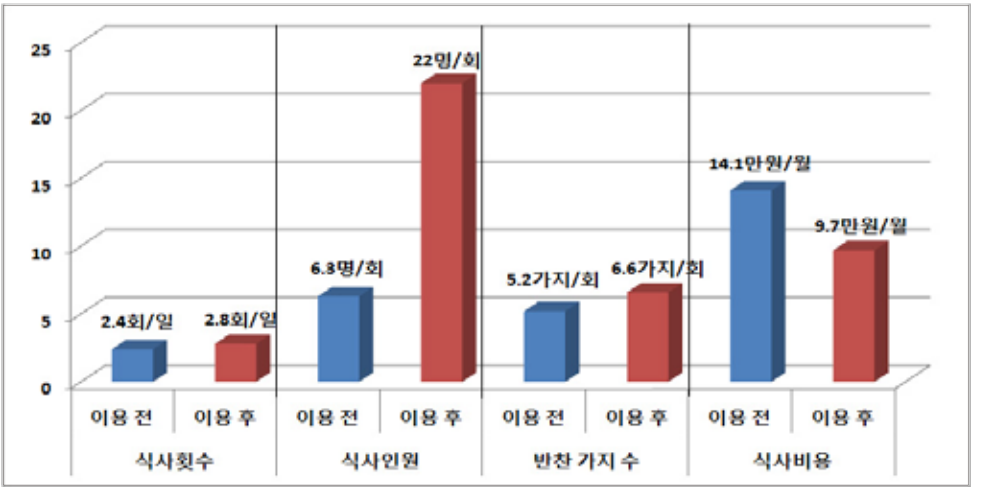

□ 안전 부문

○ 안전성

- 안전 부문에서 안전성 만족도는 전체 응답자의 87.2%가 매우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표 3-24) 안전성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이천 수하 1리	서천 마양 리	군산 장전 마을	남원 초동 마을	무주 두문 마을	정읍 원삼 마을	곡성 죽산 마을	김천 삼실 마을	의성 가산 3리	청송 세장 마을	칠곡 어로 1리	사천 연천 마을	서귀포 신평리	계
매우 만족	8 (40.0)	0 (0.0)	5 (55.6)	5 (50.0)	3 (30.0)	18 (85.7)	21 (80.8)	8 (80.0)	7 (35.0)	2 (22.2)	4 (20.0)	1 (5.0)	4 (80.0)	86 (44.9)
대체로 만족	12 (60.0)	11 (73.3)	2 (22.2)	5 (50.0)	6 (60.0)	1 (4.8)	5 (19.2)	1 (10.0)	12 (60.0)	5 (55.6)	15 (75.0)	8 (40.0)	1 (20.0)	84 (42.3)
보통	0 (0.0)	4 (26.7)	2 (22.2)	0 (0.0)	1 (10.0)	0 (0.0)	0 (0.0)	1 (10.0)	0 (0.0)	2 (22.2)	1 (5.0)	10 (50.0)	0 (0.0)	21 (11.2)
불만족	0 (0.0)	0 (0.0)	0 (0.0)	0 (0.0)	0 (0.0)	2 (9.5)	0 (0.0)	0 (0.0)	1 (5.0)	0 (0.0)	0 (0.0)	1 (5.0)	0 (0.0)	4 (1.5)
매우 불만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계	20	15	9	10	10	21	26	10	20	9	20	20	5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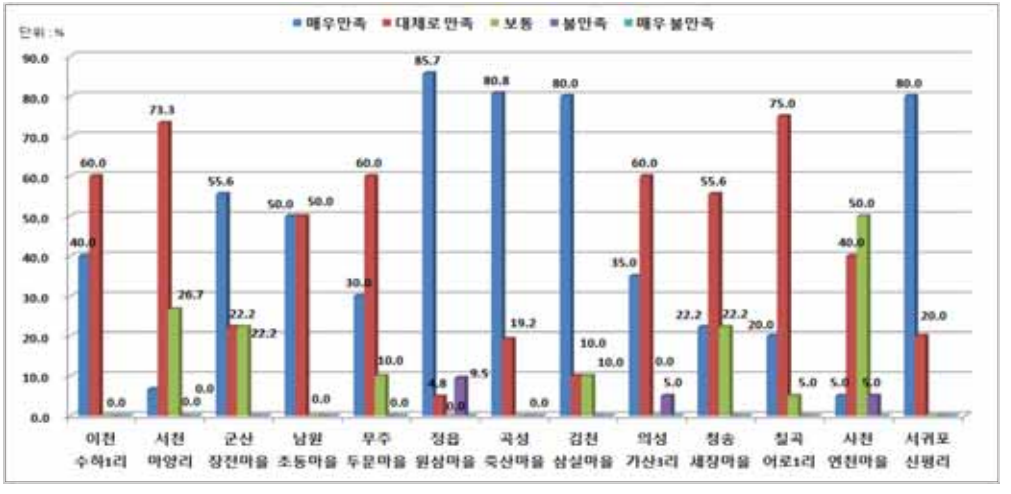

○ 편리성

- 편리성은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한지에 대한 만족도로서 전체의 88.1%의 응답자가 매우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3-25) 편리성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이천 수하 1리	서천 마양 리	군산 장전 마을	남원 초동 마을	무주 두문 마을	정읍 원삼 마을	곡성 죽산 마을	김천 삼실 마을	의성 가산 3리	청송 세장 마을	칠곡 어로 1리	사천 연천 마을	서귀포 신평리	계
매우 만족	10 (50.0)	10 (66.7)	5 (55.6)	5 (50.0)	3 (30.0)	18 (85.7)	22 (84.6)	9 (90.0)	8 (40.0)	2 (22.2)	6 (30.0)	1 (5.0)	3 (60.0)	102 (51.5)
대체로 만족	10 (50.0)	5 (33.3)	1 (11.1)	4 (40.0)	1 (10.0)	1 (4.8)	4 (15.4)	1 (10.0)	12 (60.0)	6 (66.7)	14 (70.0)	13 (65.0)	2 (40.0)	74 (36.6)
보통	0 (0.0)	0 (0.0)	1 (11.1)	1 (10.0)	6 (60.0)	1 (4.8)	0 (0.0)	0 (0.0)	0 (0.0)	1 (11.1)	0 (0.0)	5 (25.0)	0 (0.0)	15 (9.4)
불만족	0 (0.0)	0 (0.0)	1 (11.1)	0 (0.0)	0 (0.0)	1 (4.8)	0 (0.0)	0 (0.0)	0 (0.0)	0 (0.0)	0 (0.0)	1 (0.0)	0 (0.0)	3 (1.6)
매우 불만족	0 (0.0)	0 (0.0)	1 (11.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9)
계	20	15	9	10	10	21	26	10	20	9	20	20	5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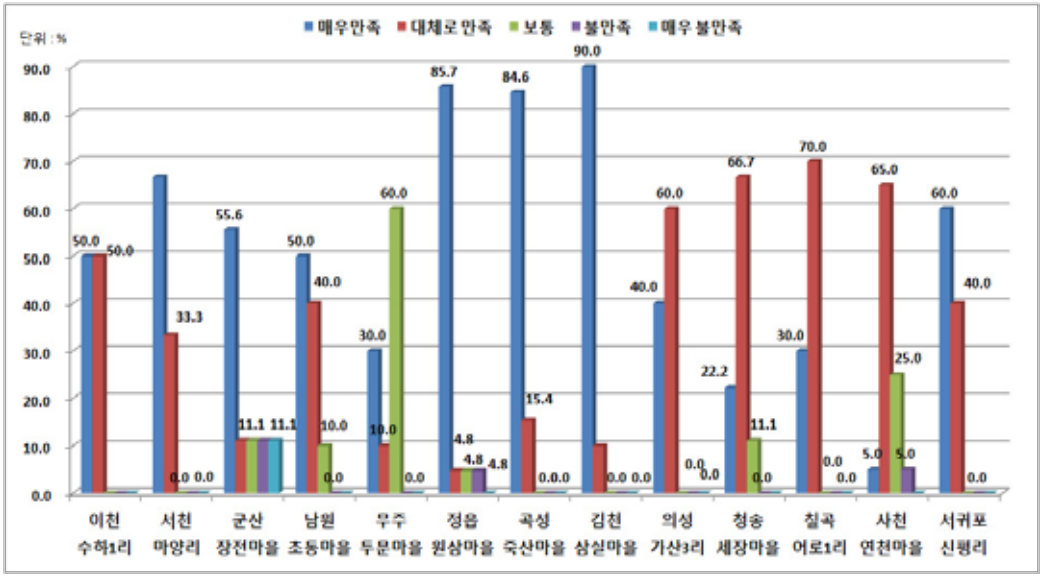

□ 유지관리 부문

○ 복지서비스

- 유지관리 부문에서 복지서비스는 급식시설을 이용하면서 제공되는 건강검진, 체조, 진료, 교육, 문화 활동 등에 대한 만족도로서, 전체 응답자의 51.6%가 매우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였고, 반면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한다는 부정적 응답이 26.7%로 나타남
- 대상지별로는 곡성 죽산마을, 정읍 원삼마을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서귀포시 신평리, 무주 두문마을, 군산 장전마을의 경우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 프로그램 자체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바쁜 일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6) 복지서비스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이천 수하 1리	서천 마양 리	군산 장전 마을	남원 초동 마을	무주 두문 마을	정읍 원삼 마을	곡성 죽산 마을	김천 삼실 마을	의성 가산 3리	청송 세장 마을	칠곡 어로 1리	사천 연천 마을	서귀 포신 평리	계
매우 만족	1 (5.0)	0 (0.0)	0 (0.0)	0 (0.0)	0 (0.0)	2 (9.5)	25 (96.2)	3 (30.0)	4 (20.0)	1 (11.1)	8 (40.0)	1 (5.0)	0 (0.0)	45 (16.7)
대체로 만족	6 (30.0)	9 (60.0)	1 (11.1)	6 (60.0)	1 (10.0)	17 (81.0)	1 (3.8)	6 (60.0)	6 (30.0)	2 (22.2)	11 (55.0)	6 (30.0)	0 (0.0)	72 (34.9)
보통	13 (65.0)	6 (40.0)	5 (55.6)	3 (30.0)	0 (0.0)	2 (9.5)	0 (0.0)	0 (0.0)	1 (5.0)	3 (33.3)	1 (5.0)	8 (40.0)	0 (0.0)	42 (21.8)
불만족	0 (0.0)	0 (0.0)	3 (33.3)	1 (10.0)	3 (30.0)	0 (0.0)	0 (0.0)	1 (10.0)	6 (30.0)	1 (11.1)	0 (0.0)	4 (20.0)	4 (80.0)	23 (17.3)
매우 불만족	0 (0.0)	0 (0.0)	0 (0.0)	0 (0.0)	6 (60.0)	0 (0.0)	0 (0.0)	0 (0.0)	3 (15.0)	2 (22.2)	0 (0.0)	1 (5.0)	1 (20.0)	13 (9.4)
계	20	15	9	10	10	21	26	10	20	9	20	20	5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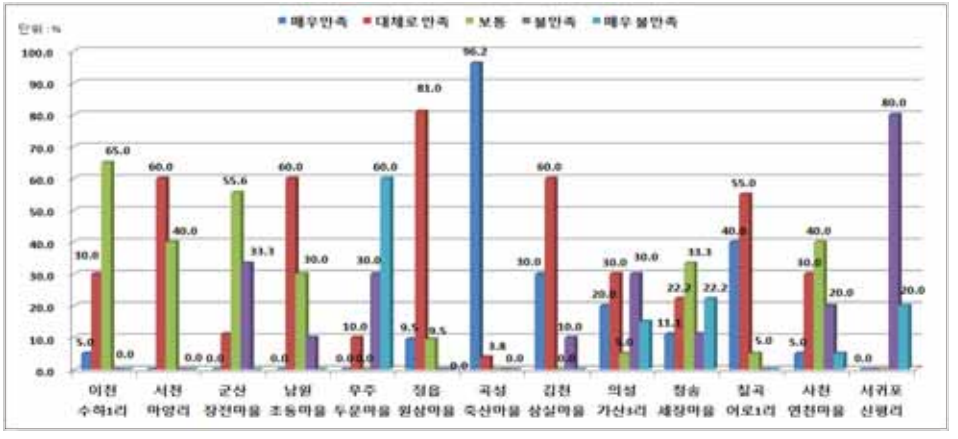

○ 운영 비용

- 급식시설의 운영 비용은 시군이나 마을에서 지원되는 운영 비용에 대한 만족도로서 매우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긍정적 응답이 전체의 38.3%,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한다는 부정적 응답이 전체의 28.8%로 나타남
- 대상지별로는 곡성 죽산마을과 칠곡 어로1리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서천 마양리 마을, 청송 세장마을, 사천 연천마을 등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들 마을은 공통적으로 마을 자체적인 운영 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기관의 지원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3-27) 운영 비용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이천 수하 1리	서천 마양 리	군산 장전 마을	남원 초동 마을	무주 두문 마을	정읍 원삼 마을	곡성 죽산 마을	김천 삼실 마을	의성 가산 3리	청송 세장 마을	칠곡 어로 1리	사천 연천 마을	서귀포 신평 리	계
매우 만족	3 (15.0)	0 (0.0)	0 (0.0)	1 (10.0)	0 (0.0)	0 (0.0)	15 (57.7)	4 (40.0)	4 (20.0)	0 (0.0)	2 (10.0)	0 (0.0)	3 (60.0)	32 (16.4)
대체로 만족	3 (15.0)	0 (0.0)	0 (0.0)	5 (50.0)	0 (0.0)	1 (4.8)	9 (34.6)	3 (30.0)	9 (45.0)	0 (0.0)	16 (80.0)	1 (5.0)	1 (20.0)	48 (21.9)
보통	9 (45.0)	0 (0.0)	8 (88.9)	4 (40.0)	6 (60.0)	18 (85.7)	2 (7.7)	2 (20.0)	7 (35.0)	2 (22.2)	2 (10.0)	3 (15.0)	0 (0.0)	63 (33.0)
불만족	5 (25.0)	8 (53.3)	1 (11.1)	0 (0.0)	2 (20.0)	2 (9.5)	0 (0.0)	1 (10.0)	0 (0.0)	3 (33.3)	0 (0.0)	4 (20.0)	1 (20.0)	27 (15.6)
매우 불만족	0 (0.0)	7 (46.7)	0 (0.0)	0 (0.0)	2 (20.0)	0 (0.0)	0 (0.0)	0 (0.0)	0 (0.0)	4 (44.4)	0 (0.0)	12 (60.0)	0 (0.0)	25 (13.2)
계	20	15	9	10	10	21	26	10	20	9	20	20	5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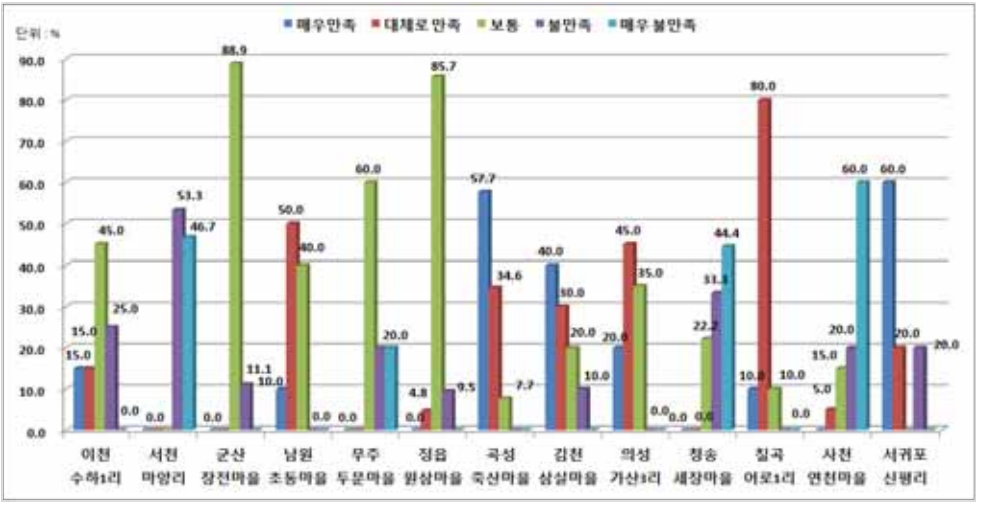

□ 시설이용 만족도

○ 전반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응답자의 77.5%가 매우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시설 이용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다만, 시설 측면의 만족도는 높지만 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운영비용 부문에서는 향후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8) 전반적 시설이용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이천 수하 1리	서천 마양 리	군산 장전 마을	남원 초동 마을	무주 두문 마을	정읍 원삼 마을	곡성 죽산 마을	김천 삼실 마을	의성 가산 3리	청송 세장 마을	칠곡 어로 1리	사천 연천 마을	서귀포 신평리	계
매우 만족	7 (35.0)	7 (46.7)	4 (44.4)	1 (10.0)	0 (0.0)	18 (85.7)	21 (80.8)	4 (40.0)	6 (30.0)	1 (11.1)	6 (30.0)	0 (0.0)	4 (80.0)	79 (38.0)
대체로 만족	12 (60.0)	8 (53.3)	2 (22.2)	6 (60.0)	1 (10.0)	2 (9.5)	5 (19.2)	6 (60.0)	12 (60.0)	4 (44.4)	14 (70.0)	5 (25.0)	1 (20.0)	78 (39.5)
보통	1 (0.0)	0 (0.0)	2 (22.2)	3 (30.0)	8 (80.0)	1 (4.8)	0 (0.0)	0 (0.0)	2 (10.0)	4 (44.4)	0 (0.0)	14 (70.0)	0 (0.0)	35 (20.5)
불만족	0 (0.0)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5.0)	0 (0.0)	2 (1.2)
매우 불만족	0 (0.0)	0 (0.0)	1 (11.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9)
계	20	15	9	10	10	21	26	10	20	9	20	20	5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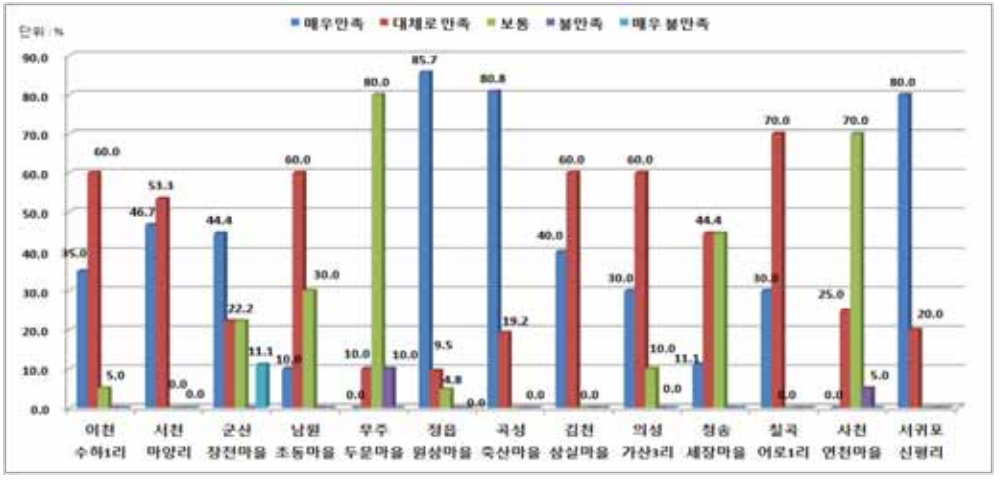

3) 작은목욕탕

□ 시설 부문

○ 입지 조건

- 작은목욕탕의 입지 조건 만족도는 전체 응답자의 66.7%가 매우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전반적으로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표 3-29) 입지 조건 만족도

구분	포천 우금리		함평 진하마을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만족	1	5.3	14	70.0	15	38.5
대체로 만족	9	47.4	2	10.0	11	28.2
보통	5	26.3	4	20.0	9	23.1
불만족	4	21.1	-	-	4	10.2
매우 불만족	-	-	-	-	-	-
계	19	100.1.0	20	100.0	3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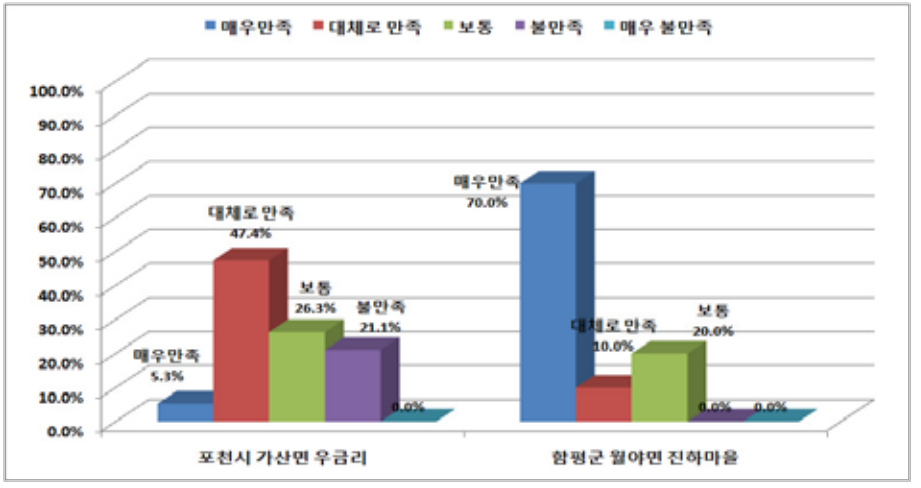

○ 내부 공간구성

- 욕실의 규모
  - 내부 공간구성 측면에서 욕실의 규모는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35.9%로 조사됨

(표 3-30) 욕실의 규모 만족도

구분	포천 우금리		함평 진하마을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만족	-	-	-	-	-	-
대체로 만족	8	42.1	6	30.0	14	35.9
보통	6	31.6	8	40.0	14	35.9
불만족	5	26.3	6	30.0	11	28.2
매우 불만족	-	-	-	-	-	-
계	19	100.0	20	100.0	39	100.0

- 욕탕의 크기
  - 욕탕의 크기 만족도는 전체 응답자의 53.8%가 매우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포천시 우금리 작은목욕탕의 경우,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31.6%로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3-31) 욕탕의 크기 만족도

구분	포천 우금리		함평 진하마을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만족	-	-	5	25.0	5	12.8
대체로 만족	7	36.8	9	45.0	16	41.0
보통	6	31.6	5	25.0	11	28.2
불만족	6	31.6	1	5.0	7	18.0
매우 불만족	-	-	-	-	-	-
계	19	100.0	20	100.0	3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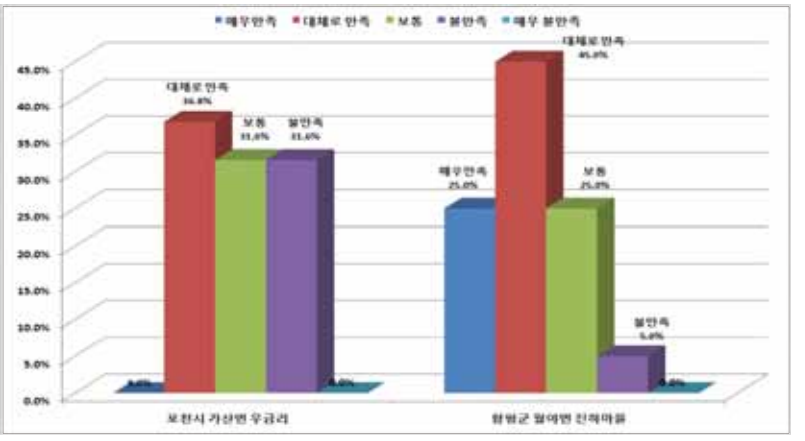

- 탈의실의 규모
  - 탈의실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56.5%로 나타났으며, 대상지별로는 포천시 우금리보다 함평군 진하마을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32) 탈의실의 규모 만족도

구분	포천 우금리		함평 진하마을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만족	1	5.3	3	15.0	4	**10.3**
대체로 만족	7	36.8	11	55.0	18	**46.2**
보통	10	52.6	5	25.0	15	**38.4**
불만족	1	5.3	1	5.0	2	**5.1**
매우 불만족	-	-	-	-	-	-
계	19	100.0	20	100.0	39	100.0

- 휴게 공간 만족도
  - 휴게 공간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53.9%)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3) 휴게 공간 만족도

구분	포천 우금리		함평 진하마을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만족	-	-	3	15.0	3	7.7
대체로 만족	11	57.9	7	35.0	18	46.2
보통	7	36.8	9	45.0	16	41.0
불만족	1	5.3	1	5.0	2	5.1
매우 불만족	-	-	-	-	-	-
계	19	100.0	20	100.0	3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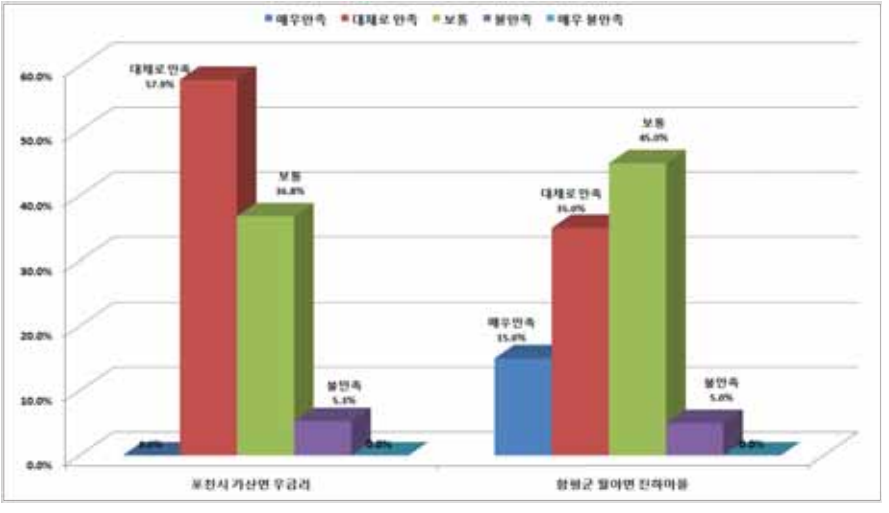

○ 정서
- 쾌적성
  - 정서 부문의 쾌적성은 내부공간이 쾌적한지에 대한 만족도로, 전체 응답자의 79.4%가 매우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불만족한다는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3-34) 쾌적성 만족도

구분	포천 우금리		함평 진하마을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만족	-	-	7	35.0	7	17.9
대체로 만족	15	78.9	9	45.0	24	61.5
보통	4	21.1	4	20.0	8	20.5
불만족	-	-	-	-	-	-
매우 불만족	-	-	-	-	-	-
계	19	100.0	20	100.0	39	9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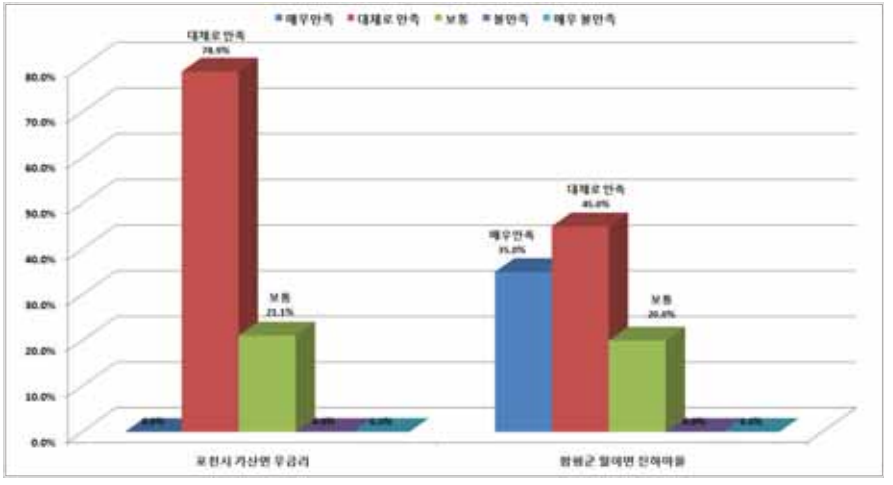

- 친밀감
  - 이용자 사이의 친밀감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응답자의 71.7%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35) 친밀감 만족도

구분	포천 우금리		함평 진하마을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만족	3	15.8	4	20.0	7	17.9
대체로 만족	12	63.1	9	45.0	21	53.8
보통	4	21.1	5	25.0	9	23.1
불만족	-	-	2	10.0	2	5.2
매우 불만족	-	-	-	-	-	-
계	19	100.0	20	100.0	3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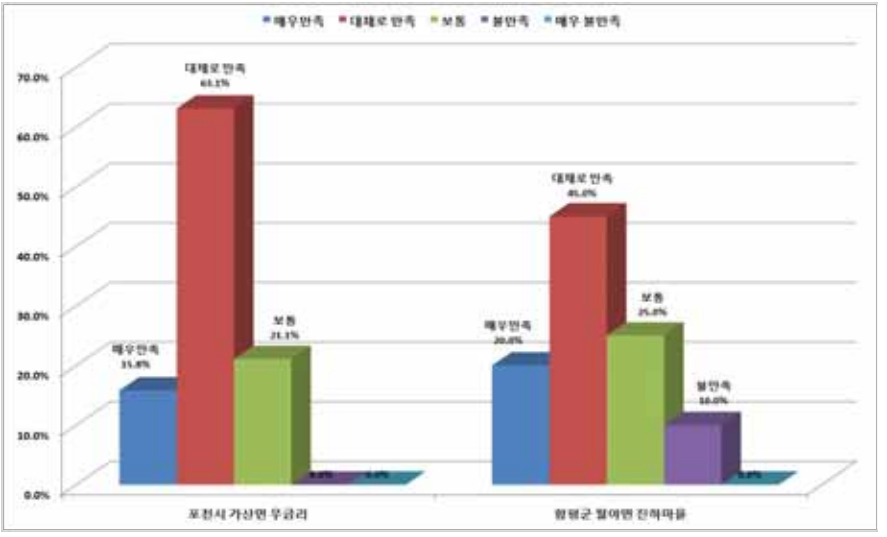

□ 위생 부문

○ 목욕횟수 만족도 및 변화

- 위생 부문에서 목욕횟수의 만족도는 전체 응답자의 66.6%가 매우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목욕횟수의 변화는 월 평균 이용 전 4.7회에서 이용 후 7.9회로 3.2회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령자의 위생여건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표 3-36) 목욕횟수 만족도

구분	포천 우금리		함평 진하마을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만족	6	31.6	10	50.0	16	**41.0**
대체로 만족	4	21.1	6	30.0	10	**25.6**
보통	3	15.8	4	20.0	7	**18.0**
불만족	6	31.5	-	-	6	**15.4**
매우 불만족	-	-	-	-	-	-
계	19	100.0	20	100.0	3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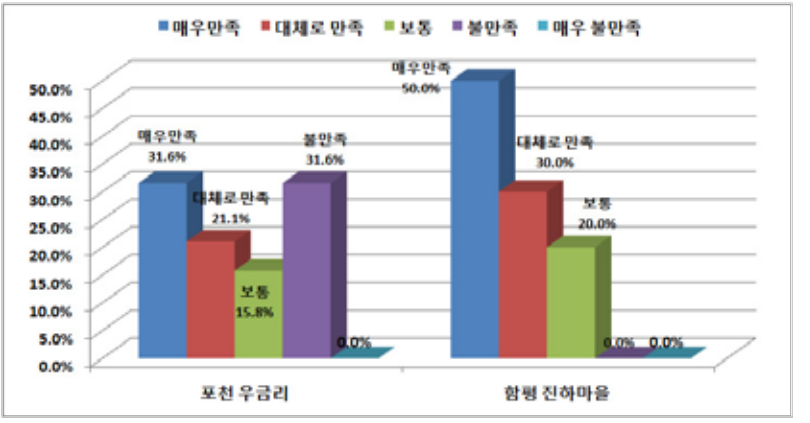

<표-37> 목욕횟수 만족도 및 변화

구분		결과	변화 횟수
목욕 횟수	이용 전 목욕 횟수(평균)	4.7회/월	3.2회/월 증가
	이용 후 목욕 횟수(평균)	7.9회/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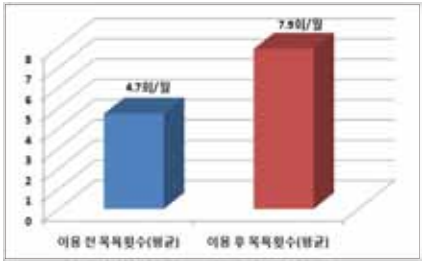

○ 청결

- 작은목욕탕의 청결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응답자의 89.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

(표 3-38) 청결 만족도

구분	포천 우금리		함평 진하마을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만족	5	26.3	7	35.0	12	**30.8**
대체로 만족	11	57.9	12	60.0	23	**59.0**
보통	3	15.8	1	5.0	4	**10.2**
불만족	-	-	-	-	-	-
매우 불만족	-	-	-	-	-	-
계	19	100.0	20	100.0	3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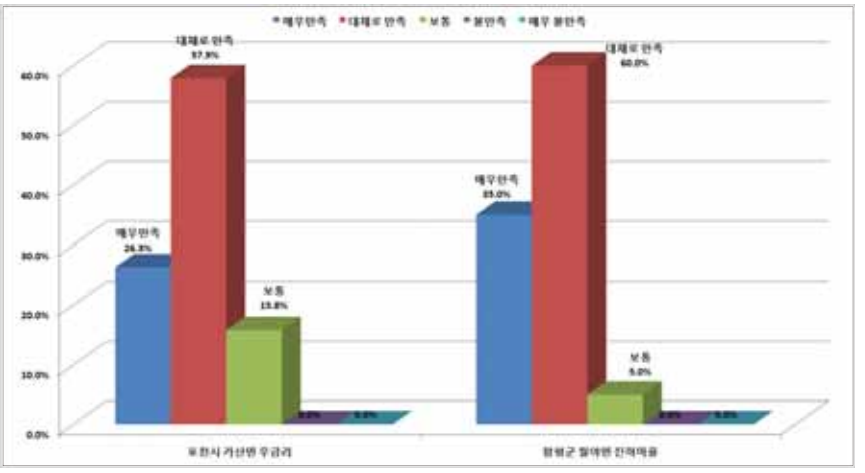

○ 수질

- 작은목욕탕의 수질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응답자의 92.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

(표 3-39) 수질 만족도

구분	포천 우금리		함평 진하마을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만족	7	36.8	7	35.0	14	**35.9**
대체로 만족	11	57.9	11	55.0	22	**56.4**
보통	1	5.3	2	10.0	3	**7.7**
불만족	-	-	-	-	-	-
매우 불만족	-	-	-	-	-	-
계	19	100.0	20	100.0	3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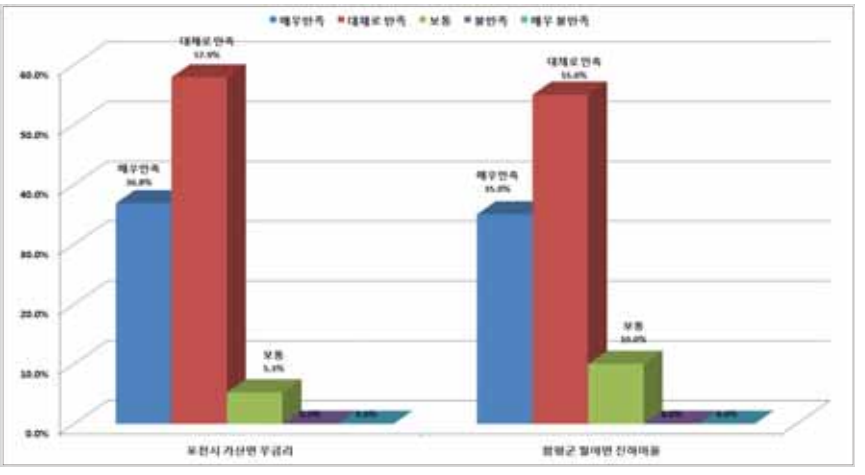

□ 안전 부문

○ 안전성

- 안전 부문에서 안전성 만족도는 전체 응답자의 84.6%가 매우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포천시 우금리의 경우 15.8%의 응답자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안전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3-40) 안전성 만족도

구분	포천 우금리		함평 진하마을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만족	2	10.5	4	20.0	6	15.4
대체로 만족	11	57.9	16	80.0	27	69.2
보통	3	15.8	-	-	3	7.7
불만족	3	15.8	-	-	3	7.7
매우 불만족	-	-	-	-	-	-
계	19	100.0	20	100.0	3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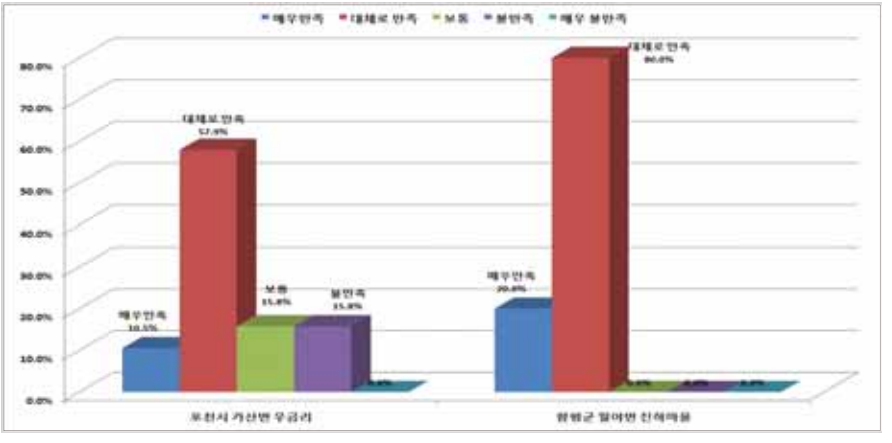

○ 편리성

- 편리성은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한지에 대한 만족도로서 전체의 76.9%의 응답자가 매우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3-41) 편리성 만족도

구분	포천 우금리		함평 진하마을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만족	3	15.8	6	30.0	9	**23.1**
대체로 만족	8	42.1	13	65.0	21	**53.8**
보통	6	31.6	1	5.0	7	**17.9**
불만족	2	10.5	-	-	2	**5.2**
매우 불만족	-	-	-	-	-	-
계	19	100.0	20	100.0	3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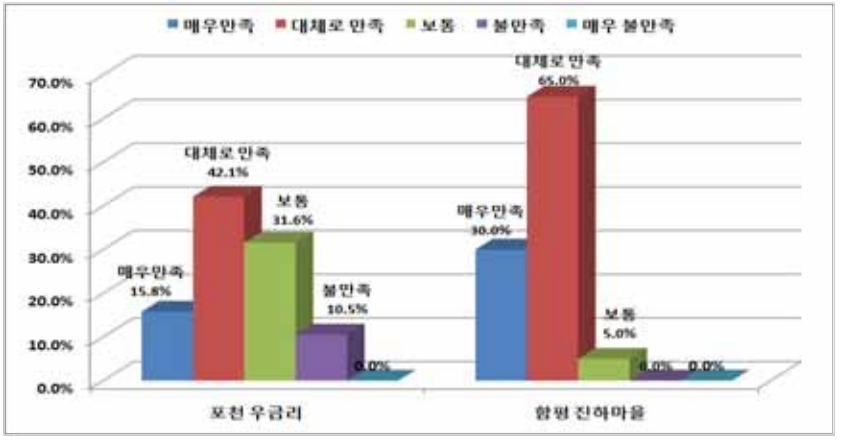

□ 유지관리 부문

○ 이용료

- 작은목욕탕의 이용요금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응답자의 71.8%가 매우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현재의 이용요금에 대해 이용자들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용요금은 포천시 우금리는 1,000원/회, 함평군 진하마을은 2,000원/회임

(표 3-42) 이용료 만족도

구분	포천 우금리		함평 진하마을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만족	6	31.6	9	45.0	15	**38.5**
대체로 만족	4	21.1	9	45.0	13	**33.3**
보통	8	42.1	2	10.0	10	**25.6**
불만족	1	5.2	-	-	1	**2.6**
매우 불만족	-	-	-	-	-	-
계	19	100.0	20	100.0	3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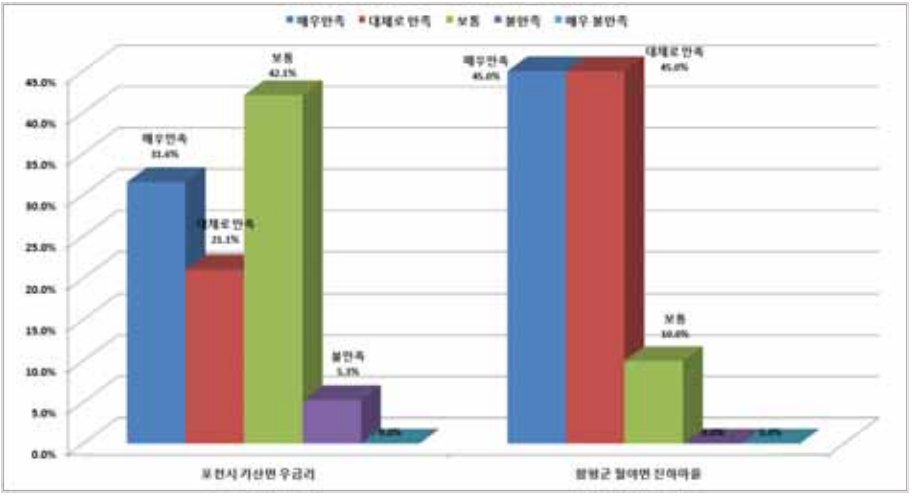

○ 복지서비스

- 작은목욕탕과 연계된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9%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43) 복지서비스 만족도

구분	포천 우금리		함평 진하마을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만족	-	-	4	20.0	4	10.3
대체로 만족	8	42.1	11	55.0	19	48.7
보통	11	57.9	5	25.0	16	41.0
불만족	-	-	-	-	-	-
매우 불만족	-	-	-	-	-	-
계	19	100.0	20	100.0	3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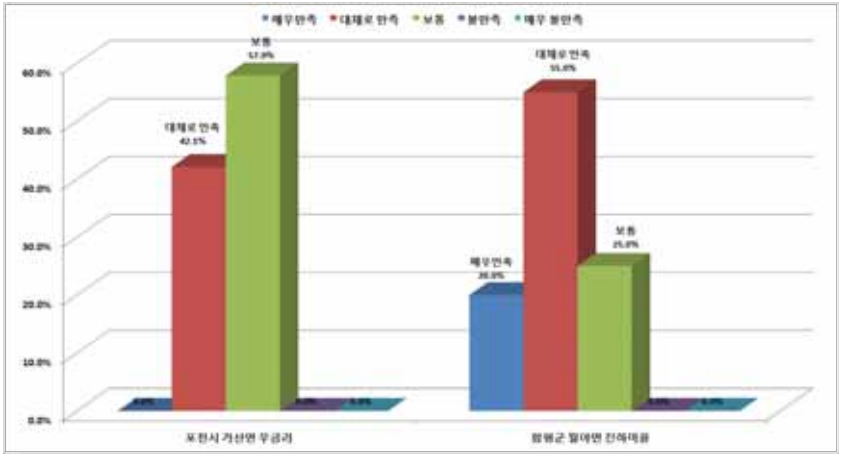

○ 운영방식

- 작은목욕탕의 운영방식은 전체 응답자의 53.8%가 매우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44) 운영방식 만족도

구분	포천 우금리		함평 진하마을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만족	-	-	2	10.0	2	5.1
대체로 만족	5	26.3	14	70.0	19	48.7
보통	8	42.1	4	20.0	12	30.8
불만족	6	31.6	-	-	6	15.4
매우 불만족	-	-	-	-	-	-
계	19	100.0	20	100.0	3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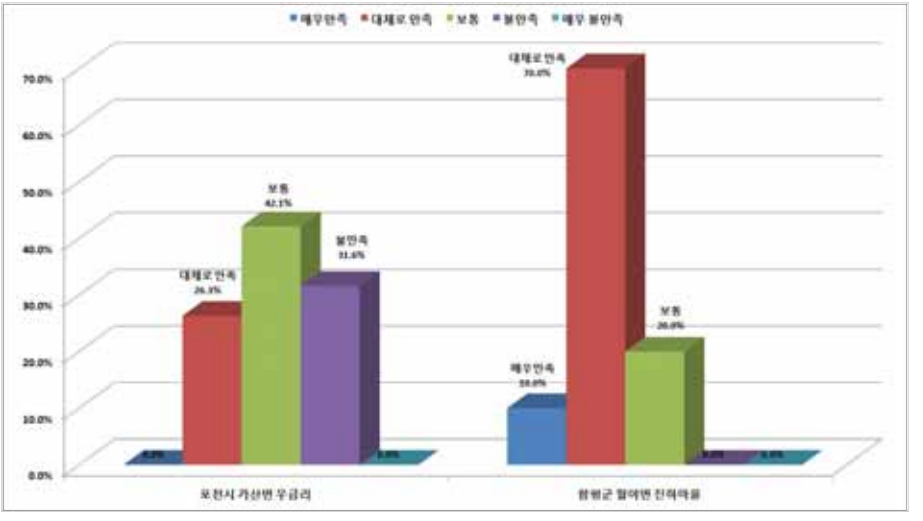

사. 응답자 특성

○ 성별

- 본 조사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전체의 65.5%가 여성으로서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주된 계층이 고령자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공동생활홈의 경우 모든 응답자가 여성임

(표 3-45) 응답자 성별 비율

구 분		빈도(명)	비율(%)	구 분		빈도(명)	비율(%)
전체	남성	86	33.7	공동생활홈	남성	0	0.0
	여성	167	65.5		여성	21	100.0
	미응답	2	0.8		미응답	0	0.0
	소계	255	100.0		소계	21	100.0
공동급식시설	남성	71	36.4	작은목욕탕	남성	15	38.5
	여성	122	62.6		여성	24	61.5
	미응답	2	1.0		미응답	0	0.0
	소계	195	100.0		소계	255	100.0

○ 연령대

- 연령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의 76.9%를 차지하고, 유형별로는 공동생활홈과 작은목욕탕의 경우 응답자 전체가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공동급식시설의 경우 고령자 비중이 높지만 비교적 마을 주민들이 고르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3-46) 응답자 연령대 비율

구 분		빈도(명)	비율(%)	구 분		빈도(명)	비율(%)
전체	45세 미만	11	4.3	공동생활홈	45세 미만	0	0.0
	45-55세 미만	12	4.7		45-55세 미만	0	0.0
	55-65세 미만	36	14.1		55-65세 미만	0	0.0
	65-75세 미만	76	29.8		65-75세 미만	3	14.3
	75세 이상	120	47.1		75세 이상	18	85.7
	소계	255	100.0		소계	21	100.0
공동급식시설	45세 미만	4	2.1	작은목욕탕	45세 미만	0	0.0
	45-55세 미만	12	6.2		45-55세 미만	0	0.0
	55-65세 미만	24	12.3		55-65세 미만	0	0.0
	65-75세 미만	59	30.3		65-75세 미만	39	100.0
	75세 이상	96	49.2		75세 이상	0	0.0
	소계	195	100.0		소계	39	100.0

○ 역할

- 응답자의 마을 내 역할은 전체의 84.3%가 일반주민이며, 이장, 위원장, 부녀회장 등 마을리더가 9.8%, 추진위원이 3.5% 순으로 나타남

(표 3-47) 응답자의 역할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마을리더	25	9.8	공동생활홈	마을리더	0	0.0
	추진위원	9	3.5		추진위원	0	0.0
	사무장	4	1.6		사무장	0	0.0
	일반주민	215	84.3		일반주민	21	100.0
	미응답	2	0.8		미응답	0	0.0
	소계	255	100.0		소계	21	100.0
공동급식시설	마을리더	25	12.8	작은목욕탕	마을리더	0	0.0
	추진위원	9	4.6		추진위원	0	0.0
	사무장	4	2.1		사무장	0	0.0
	일반주민	155	79.5		일반주민	39	100.0
	미응답	2	1.0		미응답	0	0.0
	소계	195	100.0		소계	39	100.0

<그림 3-5> 응답자 성별 <그림 3-6> 응답자 연령대 <그림 3-7> 응답자의 역할

3. 시범사업 우수사례

○ 시범사업 우수사례는 사업 모니터링 결과에 기초하여 시설조성 부문과 운영관리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함

가. 인제군 서화면 서화2리 공동생활홈

○ 공동생활홈이 입지한 서화면 서화2리는 접경지역의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주민 고령화율이 19.2%이며, 주거·영양·위생여건이 취약하고,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임

○ 따라서 독거노인의 공동생활을 통해 정서적 교류로 외로움·불안감을 해소하고 주거와 위생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서화2리에서는 접경지역 개발사업으로 2004년에 신축한 마을회관(1층 건강관리실, 2층 마을회관) 중 1층의 건강관리실 활용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저조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공동생활홈으로 전환함

○ 공동생활 홈 입주를 희망하는 고령자와 마을이장, 노인회장 등이 수차례 논의를 통해 시설형태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결정하였으며, 마을 운영위원회 회의('14.04.10)와 주민 동의('14.04), 사업신청('14.04), 간담회('14.07.04), 총괄계획가 자문 등의 과정을 통해 시설을 조성함

○ 시설조성 사업비는 총 200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국비지원 60백만원 이외에 지방비 140백만원이 책정되어 사업을 추진함

○ 거주인원은 총 4인이며 전원 여성이고, 1인실 4개, 2인실 1개 등 총 5개의 방과 거실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1인실은 모두 독립침실형으로 취침은 개별적으로 하나 취사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2인실 1개는 독립거주형으로서 취침과 취사를 개별적으로 영위하도록 조성됨. 현재 2인실의 방은 비어 있으나 추후 부부가 입주 예정되어 있음

- 2인실 공간구성 : 4.5㎡×4.2㎡=18.9㎡(약 5.7평), 2인실(1EA)+주방+화장실
- 1인실 공간구성 : 3.05㎡×3.0㎡=9.15㎡(약 2.8평), 1인실(4EA)+주방+거실+화장실(2EA)+샤워실

○ 공동생활홈의 각 공간은 입주하는 고령자의 최적의 편의를 위해 건물 내에서 모든 편의시설(목욕실, 화장실, 보일러실, 주방, 창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각 구획된 공간 사이에는 무장애공간으로 설계하여 이용불편을 최소화함

○ 또한,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기존 심야보일러에 태양광 설비를 추가하여 전기료를 절약하고, 건물 개보수시 외벽을 단열재로 보강·마감하여 겨울철에 따뜻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배려함

○ 공동생활홈의 운영은 서화2리 공동생활홈 운영위원회가 관리주체로서 인제군으로부터 연 1,000만원을 난방, 냉방, 급식, 프로그램, 상해보험 등을 위해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 입주자로부터는 월 5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음

○ 특히 운영·관리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의 개보수, 보완을 위한 사업비, 시설의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공동생활홈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입주자의 생활에 필요한 비품,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중임

○ 그리고 서화2리 마을에서는 「서화2리 노인공동생활홈 운영위원회 운영규약」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입주자 기준, 입소비·관리운영비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입주자인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은 경로가족과, 지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자치행정과 등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돌봄서비스, 봉사활동, 방문 보건의료 사업, 무료진료, 건강장수마을 지원 사업, 요가, 건강체조 등의 여가프로그램 운영, 노인 일자리 사업, 문화관련 서비스, 정보화 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인제군 서화2리 공동생활홈은 기존의 마을회관 중 활용도가 떨어지는 1층 건강관리실을 마을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동생활

홈으로 리모델링하여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증대시키고, 마을주민과 담당 공무원, 총괄계획가 등이 수차례 논의를 통해 이용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등 우수사례로 볼 수 있음

○ 또한 지자체는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마을에서도 운영규약을 마련하여 지속적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한 점과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는 점 등은 향후 지자체가 이와 유사한 공동시설을 조성할 경우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됨

(표 3-48) 서화2리 공동생활홈 개요

구 분	항 목	내 용
일반 사항	명 칭	서화2리 공동생활홈
	주 소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2리 1093-8
	거주인원	4인
	거주유형	독립침실형
	건축방식	리모델링(마을회관 1층 건강관리실)
	사업비	총 200백만원 - 국비 60백만원 - 지방비 140백만원
운영 형태	사업주체	인제군
	운영주체	서화2리 공동생활홈 운영위원회
	운영비	(운영비) 약 400만원/6개월 (보조금) 연 1,000만원 지원 - 도·군비 매칭 - 난방, 냉방, 급식비, 프로그램, 상해보험 등
	입주자부담	50천원/월
	입주자격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건축 개요	법적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1,014㎡
	지역・지구	농림지역
	건물규모	2층 (공동생활홈 1층)
	건축면적	154.75㎡
	건폐율	15.26%(법정 20%)
	연면적	309.5㎡
	용적률	30.52%(법정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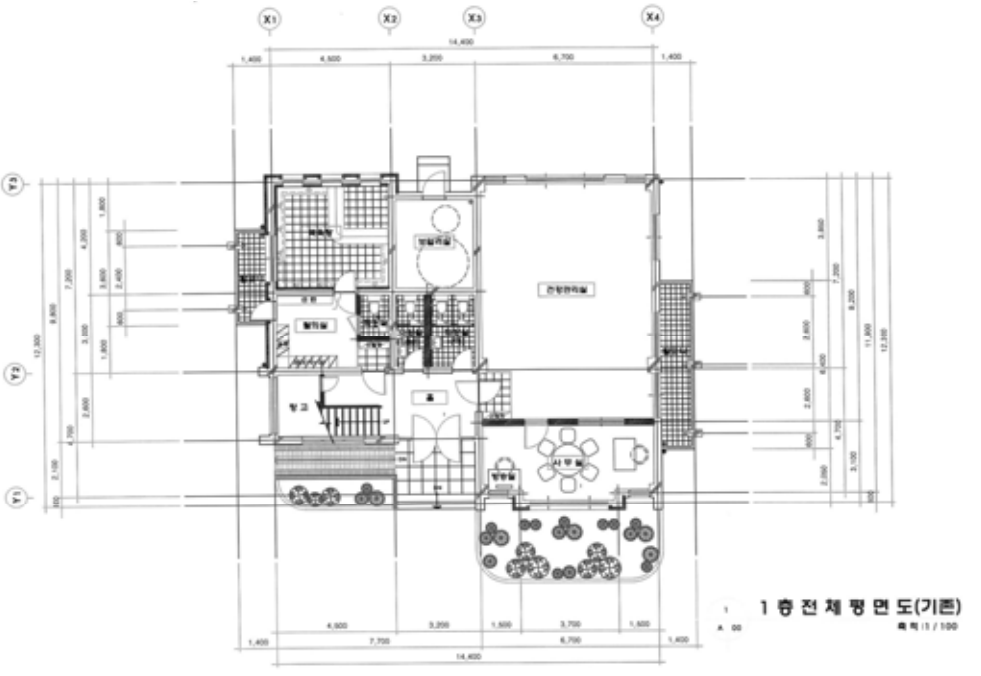

< 공동생활홈 변경 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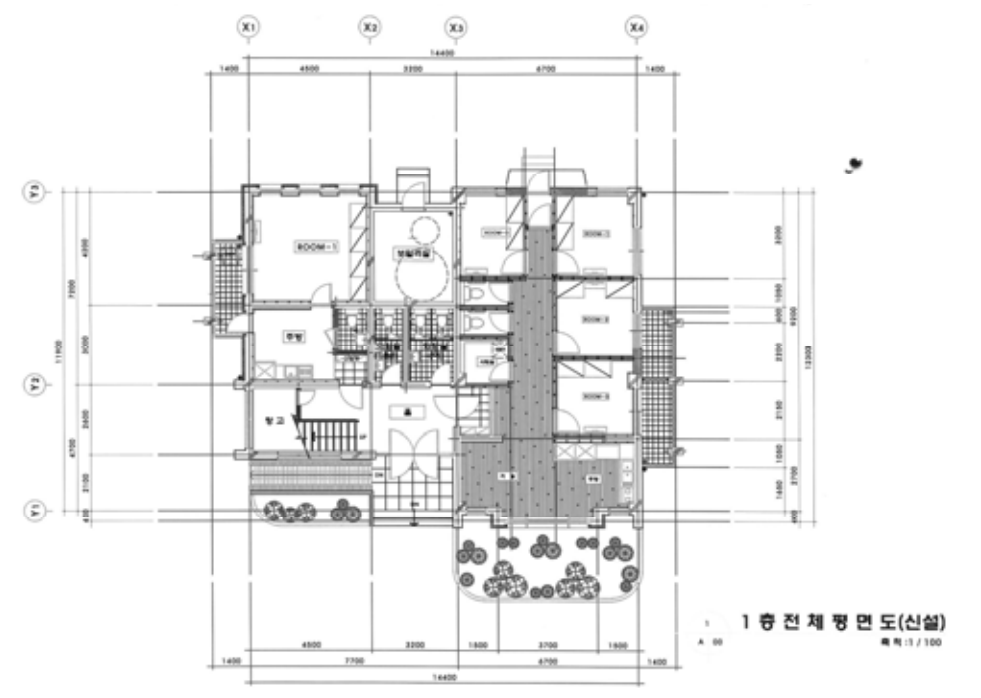

< 공동생활홈 변경 후 >

<그림 3-8> 서화2리 공동생활홈 평면구성 (자료:인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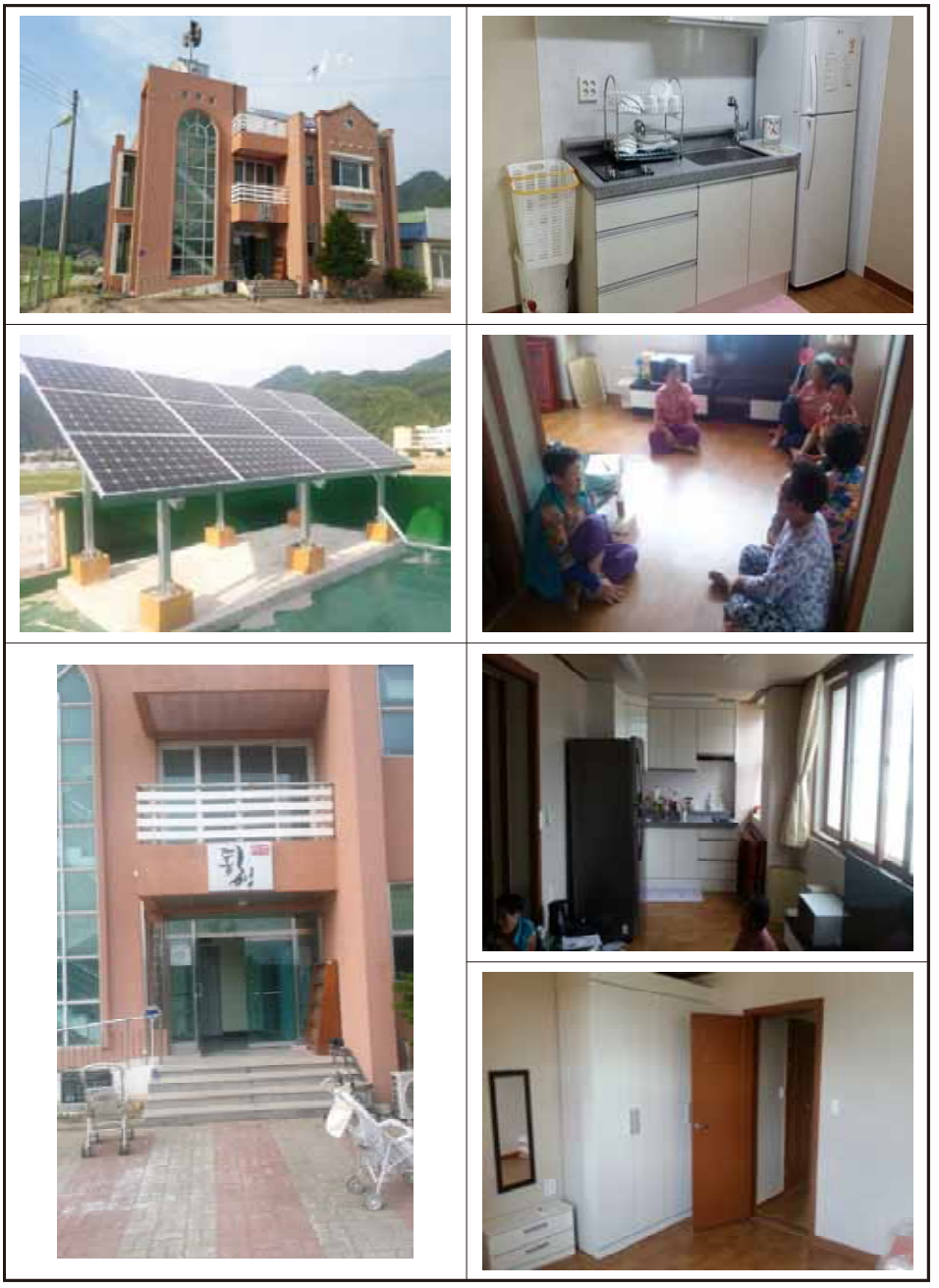

<그림 3-9> 서화2리 공동생활홈 내외부 현황

나. 청송군 진보면 세장마을 공동급식시설

○ 경북 청송군 진보면 세장마을은 여성 농업인들의 가사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을 주도적으로 군과 도에 요청하여 급식시설 건물을 조성하였으며,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으로 추가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현재의 공동급식시설을 조성함. 또한, 향후 취약지구 개선사업을 통해 내부의 칸막이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할 계획임

- 공동급식시설 신축
  - 1차 : 3,700만원 지원(도비:70%, 군비:30%)
  - 2차 : 600만원 지원(도비:70%, 군비:30%)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 리모델링 : 5,000만원 지원(국비:50%, 지방비:50%)
- 식기구 구입
  - 도비 1,500만원 지원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예정)
  - 칸막이별 설치 등 인테리어 : 2,000~3,000만원 지원

○ 공동급식시설이 입지한 세장리는 자연마을로 본마을, 옛터골, 황골 등 산재된 취락지구를 보이고 있으며, 본마을과 황골마을의 거리가 멀어 도보로는 10여분, 차량으론 3분 정도 소요됨

○ 진보면 소재지와 약4km이내에 입지하여 대중교통(버스) 운행 중으로 급식시설은 도로변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기존 마을회관에 증축을 통하여 거실부분을 확장하고 공동급식시설로 리모델링함으로써 기존 고령자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편임

○ 공간적 특징으로는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추가시설로 보일러실, 화장실, 현관을 증축하였고, 급식 주방을 충분히 확보하여(약 6평) 기존 다목적실을 식사와 다용도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휴게실과 식자재 보관창고를 조성하여 시설 활용도를 높임. 증축 공간에는 발코니를 조성하여 마을 쉼터로서의 기능도 포함됨

○ 시설운영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직접적인 지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세장마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관리 주체로서 주로 부녀회를 중심으로 식자재 조달, 취사 등을 제공함. 운영비는 회당 4,000원의 식사비를 받아 충당하며 청년회와 노인회 등 마을조직에서 추가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고, 전기요금은 매달 3~5만원 정도로 부녀회에서 부담함

○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 및 규약은 청송군에서 「노인복지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마을에서는 「공동급식시설 운영 마을 규약」을 통해 자체적이고 지속적인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중임

○ 마을 주민들은 급식을 제공받고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운영비용이 부족하여 요금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는 아쉬운 의견을 제시함

○ 종합적으로 보면, 청송군 세장마을 공동급식시설은 고령자의 편의를 위해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설을 신축하고 지속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마을주민들의 의지가 매우 높으며 만족도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단, 시설의 지속적 운영·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표 3-49) 청송 세장마을 공동급식시설 개요

구 분	항 목	내 용
일반 사항	명 칭	청송 세장마을 공동급식시설
	주 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 세장리 419-1
	사용인원	일일 52명 내외
	건축방식	기존 마을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총 5,000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운영 형태	사업주체	청송군
	운영주체	세장마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마을 자체 조달
	이용요금	4,000원/회
	운영기간	농번기, 동절기 중심으로 중식 제공
건축 개요	법적용도	마을공동작업장 (용도변경 검토 중)
	대지면적	357㎡
	지역·지구	관리지역
	건물규모	지상 1층
	건축면적	84.6㎡
	건폐율	23.7% (법적 기준 60%)
	연면적	84.6㎡

<그림 3-10> 세장마을 공동급식시설 내외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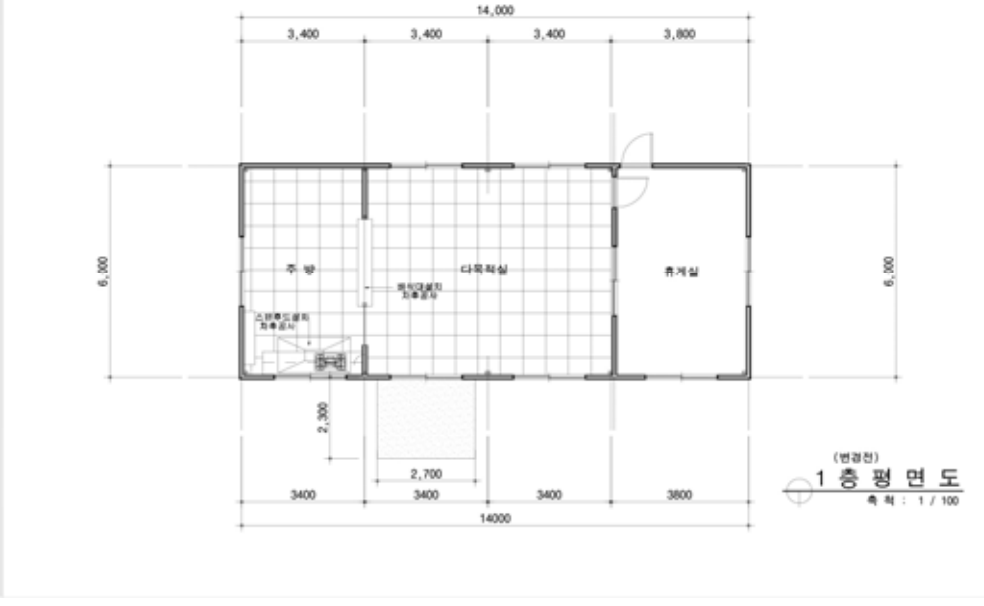

< 공동급식시설 변경 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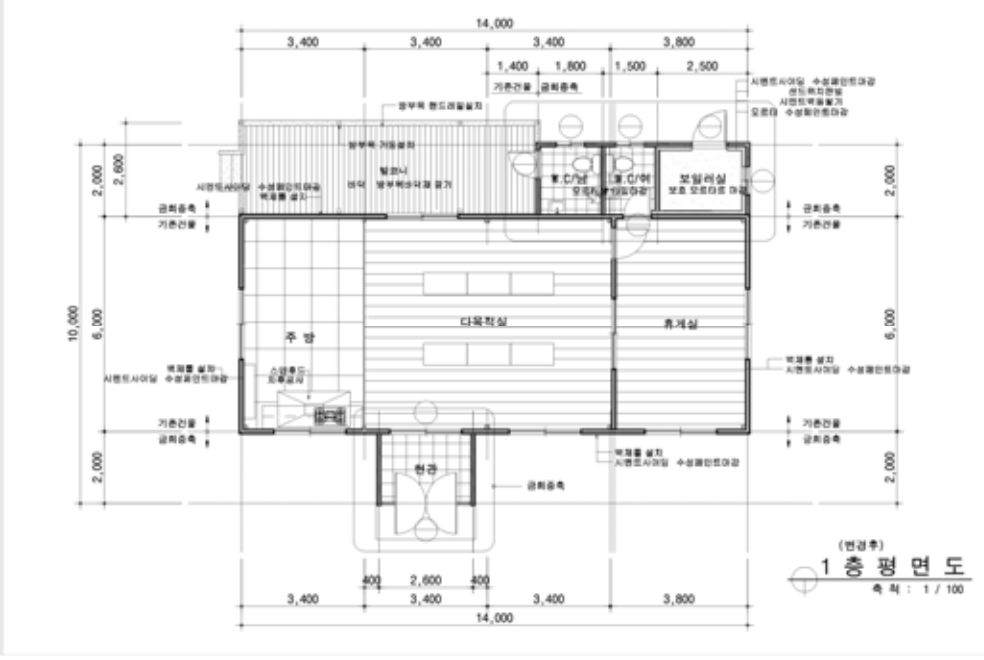

< 공동급식시설 변경 후 >

<그림 3-11> 세장마을 공동급식시설 평면구성 (자료:청송군)

다.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작은목욕탕

○ 함평군 월야면은 전체인구 중 고령자인구가 3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근에 목욕탕이 없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목욕을 하기 위해 장성군 또는 광주시에 소재한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어 교통약자인 노약자, 장애인 등은 건강과 위생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함

○ 이에 함평군에서는 월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다목적 문화센터 조성과 연계하여 고령자를 위한 작은목욕탕 건립을 추진하고 '14년 11월 준공됨

○ 해당시설의 입지는 월야면 소재지의 중심지역으로 주변에 관공서 및 주민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도로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어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함. 특히 동일 부지 내에 다목적 문화센터가 조성되어 문화·여가 활동과 목욕을 동시에 이용하는 등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효율적임

○ 작은목욕탕의 공간적 특징으로는 남탕과 여탕을 구분하는 남녀구분형으로서 상시 남녀가 이용하고 있으며, 욕탕 내 좌식 및 입식 샤워시설, 탈의실 및 화장실, 사우나시설 등이 설치됨. 목욕탕의 규모는 남탕 92.5㎡, 여탕 95.7㎡로 초기의 예정 사용자 인원인 70여명/일에는 적합한 규모로 건립되었으나, 현재 매일 약 15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점에서는 다소 규모가 작다고 판단됨

○ 목욕탕의 배치는 정확히 좌우대칭으로 좌측에 여탕, 우측에 남탕이 배치되어 있으며, 고령자의 편의를 위해 건물 내 모든 공간(진입로-슬로프, 목욕실, 화장실, 휴게실 등)에 단차를 최소화하였음

○ 특히, 다목적 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하여 기계실(지하에 설치된 기계실을 공동으로 사용) 및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효율화를 도모함

○ 운영 및 관리 주체는 월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함평군 공중목욕탕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비, 사용요금, 운영주체, 위탁운영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운영·관리 인력은 현재 기간제 2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1명 등 총 3명을 고용하여 청소, 목욕탕 관리, 수납업무 등을 수행함

○ 또한, 목욕탕을 이용하는 고령자를 위해 다목적 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하여 한글교실, 종이공예, 원예교실, 에어로빅, 건강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서는 목욕탕 무료 이용 쿠폰을 제공하여 이용자 부담완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함

○ 종합적으로 보면, 함평군 월야면 작은목욕탕은 인근지역에 목욕탕이 없는 면소재지 내에 설치되어 고령자 지역주민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례임

○ 특히,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남녀구분형의 목욕탕을 효율적으로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인근 다목적 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비, 인력지원과 같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운영지원 등은 향후 작은목욕탕 조성시 운영·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판단됨

<그림 3-12> 월야면 작은목욕탕 평면구성 (자료:함평군)

(표 3-50) 월야면 작은목욕탕 개요

구 분	항 목	내 용
일반 사항	명 칭	함평군 월야면 작은목욕탕
	주 소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758-15～16
	이용인원	일일 평균 약 150여명
	건축유형	남녀구분형
	건축방식	신축
	사업비	총 500백만원 - 국비 100백만원 - 지방비 400백만원 ※ 월야면 면소재지 정비사업과 연계
운영 형태	사업주체	함평군
	운영주체	월야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보조금) 군비 200만원 지원 - 전기비, 유류비 등 (인력지원) - 관리인력 : 3명 · 기간제 2명(월 290만원 지원) · 자활근로자(기초생활자) 1명, 월 60～70만원
	이용요금	2,000원(7세 이상)
	운영기간	연중(주6일, 월요일 휴장)
건축 개요	대지면적	4,410㎡
	지역·지구	생산관리지역
	건물규모	1층
	건축면적	205㎡
	건폐율	4.6%(법정 60%)
	연면적	205㎡

<그림 3-13> 월야면 작은목욕탕 내외부 현황

제 4 장

단계별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제4장 단계별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 본 장에서는 지자체가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이해도를 향상시키고 효율적 사업추진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결과를 토대로 각 유형별·단계별 사업추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가이드라인은 공동시설의 계획수립 및 실행의 전 단계에 걸쳐 사업의 취지, 목표,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제시함

제1절 사업 추진절차

○ 사업의 추진절차는 (표 4-1)과 같고, 사업비 확보, 사업준비, 사업신청, 사업선정, 사업계획수립, 시공, 준공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주요내용을 제시함. 특히, 향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공동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농식품부 주도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들은 참고로 제시함

(표 4-1) 사업 추진절차

단계	항목	주체	주요 내용	사업추진과정 주요 체크리스트
사업비 확보(별도)	사업비 확보	시·군·구	국비 확보	(농식품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지방비 확보	도, 시·군 지방비 확보
※ 사업비 확보 단계는 재원(국비·지방비)에 따른 일정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별도로 추진				
사업준비	추진체계	시·군·구	지자체 부서간 추진 체계 구축	전담 부서 및 협조 부서 지정 / 관련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			
	기본계획	시·군·구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확보 등을 고려, 시설 조성 규모·물량, 주요 사업 대상지 물색, 프로그램 발굴·검토, 운영계획 모색 등 주요내용 포함
	⬇			
	설명회 및 주민협의	읍·면·동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사업 추진 협의	사업 주요내용 설명 / 조성시설, 내부시설, 운영방식, 지원내용 등에 대한 주민협의 (필요시) 총괄계획가의 위촉 및 활용
	⬇			

단계	항목	주체	주요 내용	사업추진과정 주요 체크리스트
사업 준비	사업 준비	마을	사업 부지 마련 주민 협의체 구성 주민 역량강화	마을 또는 지자체 소유의 부지 확보 및 마련 마을리더 등을 중심으로 주민 협의체 구성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 현장포럼 등 활용 전문가 교육, 선진지 답사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 추진
사업 선정	심사 및 타당성 검토	시·군·구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현장 실사	현장실사 계획수립 및 실사 진행
			사업 타당성 검토	입지조건 / 사업 방식 / 건물 및 내부 시설 규모 / 주민 역량 / 사업예산 / 추진 가능성 등 종합 검토
사업 계획 수립	(필요시) 기획 설계	시·군·구	기획 설계안 마련	세부설계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획설계안 작성
	사업계획 수립	시·군·구	업체 선정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업체 선정 / 선정방식 및 기준 마련
		업체	시행계획 수립	건축물 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근거,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사업계획 검토	시·군·구	시행계획 검토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배리어프리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여부
				내·외부 건축자재의 적정여부
				구조계획(안전도 포함)의 적합여부
				부대 설비계획의 적정여부
				예정 공사비(원가계산 포함)의 적정여부
				운영 및 관리계획의 적정여부
	주민 협의	읍·면·동	주민 협의	수립된 시행계획 주요 내용 설명, 주민 협의
	사업계획 승인	시·군·구	사업계획승인	
시공	시공계획 수립	시·군·구	발주	시공업체 선정 / 선정방식 및 기준 마련
		업체	시공계획 수립	시행계획에 근거한 계획수립
		시·군·구	시공계획 검토	시공계획 및 공사비 집행계획 적합여부 등
	시공	시·군·구	시공	시공 진행과정 검토 및 체크
			준공(사용승인)	준공검사 체크리스트 작성
입주 등	입주·사용 및 평가	시·군·구	입주 및 사용	시행계획에 근거한 입주 및 사용자 선정·사용
			연계 프로그램 지원	각 부처 및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지원
			거주(사용) 후 평가	거주자 및 사용자의 거주(사용) 후 평가
운영 및 유지 관리				

제2절 단계별 가이드라인

1. 사업비 확보(시·군·구) 단계

□ 농식품부 관련 사업 신청을 통한 사업비 확보 또는 지자체 자체 사업비 활용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 신청절차 및 방법
  - (시·군) 사업 제안서 작성하여 사업 신청(→시·도)
    * 사업 대상지 여건, 주민 요구, 연내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시·도 사업 신청
  - (시·도)자체심의 및 제안서 제출(→농식품부)
    * 자체심의를 통해 사업 요건에 부적합한 대상지는 제외
- 지원내용 : 선정 대상지에 대하여 고령자 공동시설 설치 국비 지원
  * 개소당 지원 사업비 : 공동생활홈 120백만원, 공동급식시설 50백만원, 작은목욕탕 2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신청절차 및 방법
  - (시·군)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에 등록 및 관련자료 포함 공문 제출(→시·도, 농식품부(사업계획서, 증빙자료))
  - (시·도) 제출된 자료 검토 후 사업유형별 순위, 평가점수 및 단계별 사업이수 여부를 공간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공문 제출(→농식품부)
    * 신청시기는 1월(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2월(사업계획서 도 검토) 중 실시하며, 신규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전년도 1월 중 관련자료 제출 및 예산신청 (예) '16년 신규사업 신청의 경우 '15년 1월 관련자료 및 공문 제출)
- 지원내용 : 사업성 검토를 통해 선정된 지구에 대하여 유형별 사업비 지원

* 관련 세부사업 : 기초생활기반확충(도로·교통, 상·하수도, 재해대비, **복지시설**, 문화시설, 운동휴양, 주민이 체감하는 **작은목욕탕** 등)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사업선정 : 지역주도, 중앙의 맞춤형 지원 원칙에 따른 상향식 공모
  · 시·군 사업신청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선정

* '15년 사업선정 절차(예시) : 가이드라인 통보('14.12) → 사업 접수('15.2) → 합동평가단 구성('15.2) → 사업 선정('15.3) → 예산 배정('15.4) → 관계부처 합동 지원단 운영('15.4~)

- 지원내용 : 선정 대상지에 대하여 안전, **생활·위생**, 일자리·문화, 집수리, 주민역량강화

* 재해예방, 노후시설보수, CCTV 설치 등 안전 관련분야 및 상하수도, 빈집철거, 골목정비, 소방도로, 급경사지 등 **생활·위생인프라(공동생활홈)** 중점 지원

□ 적정 사업비

○ 시설규모, 자재 등에 따라 사업비 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농식품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에서 산출한 적정 사업비 규모 참조

○ 건축공사비는 기존시설을 개보수(개축)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신축의 경우에는 산출근거에서 "개보수 보정계수"를 삭제하여 적정 사업비를 산출

○ 또한, 설계비 등도 개보수(개축)방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신축의 경우에는 "안전진단비"를 고려하지 않음

- 공동생활홈

□ 신축의 경우

○ **3.3㎡ 당 건축공사비** : 1,622천원* × 3.3㎡= **5,352천원**

* ㎡당 공사비 : 1,352천원(분양가상한제적용 기본형건축비)×1.2배 (패시브 기술적용에 따른 보정계수)=1,622천원

[공동생활홈 1개소의 규모 100㎡의 사례]

○ 공사비 : 162,240천원

* 1,622천원(1㎡당 공사비) × 100㎡=162,240천원

○ 설계비·감리비 : 21,208천원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5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기준(제60조제1항관련)」 적용
* 설계비·감리비 산정 대상액(부가세제외) : 162,240천원÷1.1=147,490천원
* 설계비 : 147,490천원×6.13%=9,041천원
* 감리비 : 147,490천원×8.25%=12.167천원

<신축의 경우 공동생활홈 1개소(규모 100㎡ 기준)당 사업비>

구 분	내 용	사 업 비
공 사 비	건축공사비 : 100㎡ × 1,622천원/㎡	162,240천원
	소 계	**162,240천원**
설계비 감리비	설 계 비 : 147,490천원 × 6.13%	9,041천원
	감 리 비 : 147,490천원 × 8.25%	12,167천원
	소 계	21,208천원
합 계		**183,448천원**

□ 개보수의 경우

○ **3.3㎡ 당 건축공사비** : 1,411천원* × 3.3㎡= **4,657천원**

* ㎡당 공사비 : 1,352천원(분양가상한제적용 기본형건축비)×1.2배 (패시브 기술적용에 따른 보정계수)×***87%(개보수 보정계수)***=1,411천원

[공동생활홈 1개소의 규모 100㎡의 사례]

○ 공사비 : 141,148천원

* 1,411천원(1㎡당 공사비) × 100㎡=141,148천원

○ 설계비·감리비·안전진단비 : 21,034천원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5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기준(제60조제1항관련)」 적용
* 설계비·감리비 산정 대상액(부가세제외) : 141,148천원÷1.1=128,317천원
* 설계비 : 128,317천원×6.13%=7,865천원
* 감리비 : 128,317천원×8.25%=10,586천원
* ***안전진단비 : 128,317천원×2.4%(3%이내)=3,079천원***

<개보수일 경우 공동생활홈 1개소(규모 100㎡기준)당 사업비>

구 분	내 용	사 업 비
공 사 비	건축공사비 : 100㎡ × 1,233천원/㎡	141,148천원
	소 계	**141,148천원**
설계비 감리비 안전진단비	설 계 비 : 112,093천원 × 6.13%	7,865천원
	감 리 비 : 112,093천원 × 8.25%	10,586천원
	안전진단비 : 112,093천원 × 3%이내	3,079천원
	소계	21,530천원
합 계		**162,678천원**

* 본 공동생활홈의 공사비 내역은 일반적인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상정한 것으로서 지자체 및 사업대상지 여건별로 가감할 수 있음

① 도서지역 및 산간벽촌 등의 농어촌마을에는 자재운송비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② 개보수의 경우에는, 별도로 철거비용 및 건축 폐기물 처리비용을 상정할 수 있음

③ 패시브 기술적용 요율은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그 방식 및 개소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설계비·감리비 등 제반비용은 지자체 자체사업에 의한 단일 공동시설 조성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3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4(건축설계 대가요율), 별표5(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를 적용할 수 있음

- 공동급식시설

□ 신축의 경우

○ **3.3㎡ 당 건축공사비** : 1,622천원* × 3.3㎡= **5,352천원**

* ㎡당 공사비 : 1,352천원(분양가상한제적용 기본형건축비)×1.2배 (패시브 기술적용에 따른 보정계수)=1,622천원

[공동급식시설 69㎡의 사례]

○ 공사비 : 111,918천원

* 1,622천원(1㎡당 공사비) × 69㎡=111,918천원

○ 설계비·감리비 : 14,629천원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5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기준(제60조제1항관련)」 적용
* 설계비·감리비 산정 대상액(부가세제외) : 111,918천원÷1.1=101,743천원
* 설계비 : 101,743천원×6.13%=6,236천원
* 감리비 : 101,743천원×8.25%=8,393천원

<신축의 경우 공동급식시설 1개소(규모 69㎡ 기준) 당 사업비>

구 분	내 용	사 업 비
공 사 비	건축공사비 : 69㎡ × 1,622천원/㎡	111,918천원
	소 계	**111,918천원**
설계비 감리비	설 계 비 : 50,884천원 × 6.13%	6,236천원
	감 리 비 : 50,884천원 × 8.25%	8,393천원
	소계	14,629천원
합 계		**126,547천원**

□ 개보수의 경우

○ **3.3㎡ 당 건축공사비** : 811천원* × 3.3㎡= **2,676천원**

* ㎡당 공사비 : 1,352천원(분양가상한제적용 기본형건축비)×1.2배 (패시브기술적용에 따른 보정계수)×***50%(개보수 보정계수)***=811천원

[공동급식시설 1개소의 규모 69㎡의 사례]

○ 공사비 : 55,972천원

* 811천원(1㎡당 공사비) × 69㎡=55,972천원

○ 설계비·감리비·안전진단비 : 8,957천원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5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기준(제60조제1항관련)」 적용
* 설계비·감리비 산정 대상액(부가세제외) : 55,972천원÷1.1=50,884천원
* 설계비 : 50,884천원×6.13%=3,119천원
* 감리비 : 50,884천원×8.25%=4,617천원
* *안전진단비 : 50,884천원×2.4%(3%이내)=1,221천원*

<개보수의 경우 공동급식시설 1개소(규모 69㎡ 기준) 당 사업비>

구 분	내 용	사 업 비
공 사 비	건축공사비 : 69㎡ × 811천원/㎡	55,972천원
	소 계	**55,972천원**
설계비 감리비	설 계 비 : 50,884천원 × 6.13%	3,119천원
	감 리 비 : 50,884천원 × 8.25%	4,617천원
	안전진단비 : 50,884천원 × 3%이내	1,221천원
	소계	8,957천원
합 계		**64,929천원**

* 본 공동급식시설의 공사비 내역은 일반적인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상정한 것으로서 지자체 및 사업대상지 여건별로 가감할 수 있음

① 도서지역 및 산간벽촌 등의 농어촌마을에는 자재운송비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② 개보수의 경우에는, 별도로 철거비용 및 건축 폐기물 처리비용을 상정할 수 있음

③ 패시브 기술적용 요율은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그 방식 및 개소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설계비·감리비 등 제반비용은 지자체 자체사업에 의한 단일 공동시설 조성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3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4(건축설계 대가요율), 별표5(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를 적용할 수 있음

- 작은목욕탕

□ 신축의 경우

○ **3.3㎡ 당 건축공사비** : 1,622천원* × 3.3㎡= **5,352천원**

* ㎡당 공사비 : 1,352천원(분양가상한제적용 기본형건축비)×1.2배 (패시브 기술적용에 따른 보정계수)=1,622천원

[작은목욕탕 120㎡의 사례]

○ 공사비 : 194,688천원

* 1,622천원(1㎡당 공사비) × 120㎡=194,688천원

○ 설계비·감리비 : 25,450천원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5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기준(제60조제1항관련)」 적용
* 설계비·감리비 산정 대상액(부가세제외) : 194,688천원÷1.1=176,989천원
* 설계비 : 176,989천원×6.13%=10,849천원
* 감리비 : 176,989천원×8.25%=14,601천원

<신축의 경우 작은목욕탕 1개소(규모 120㎡ 기준)당 사업비>

구 분	내 용	사 업 비
공 사 비	건축공사비 : 120㎡ × 1.622천원/㎡	194,688천원
	소 계	**194,688천원**
설계비 감리비	설 계 비 : 176,989천원 × 6.13%	10,849천원
	감 리 비 : 176,989천원 × 8.25%	14,601천원
	소계	25,450천원
합 계		**220,138천원**

□ 개보수의 경우

○ **3.3㎡ 당 건축공사비** : 1,427천원* × 3.3㎡= **4,709천원**

* ㎡당 공사비 : 1,352천원(분양가상한제적용 기본형건축비)×1.2배 (패시브기술적용에 따른 보정계수)×***88%(개보수 보정계수)***=1,427천원

[작은목욕탕 1개소의 규모 120㎡의 사례]

○ 공사비 : 155,750천원

* 1,427천원(1㎡당 공사비) × 120㎡=155,750천원

○ 설계비·감리비·안전진단비 : 27,451천원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5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기준(제60조제1항관련)」 적용

* 설계비·감리비 산정 대상액(부가세제외) : 171,325천원÷1.1=155,750천원

* 설계비 : 155,750천원×6.13%=9,547천원

* 감리비 : 155,750천원×8.25%=14,134천원

* *안전진단비 : 155,750천원×2.2%(3%이내)=3,769천원*

<개보수의 경우 작은목욕탕 1개소(규모 120㎡ 기준)당 사업비>

구 분	내 용	사 업 비
공 사 비	건축공사비 : 120㎡ × 1,427천원/㎡	171,325천원
	소 계	**171,325천원**
설계비 감리비	설 계 비 : 155,750천원 × 6.13%	9,547천원
	감 리 비 : 155,750천원 × 8.25%	14,134천원
	안전진단비 : 155,750천원 × 3%이내	3,769천원
	소계	27,451천원
합 계		**198,776천원**

* 본 작은목욕탕의 공사비 내역은 일반적인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상정한 것으로서 지자체 및 사업대상지 여건별로 가감할 수 있음

① 도서지역 및 산간벽촌 등의 농어촌마을에는 자재운송비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② 개보수의 경우에는, 별도로 철거비용 및 건축 폐기물 처리비용을 상정할 수 있음

③ 패시브 기술적용 요율은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그 방식 및 개소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설계비·감리비 등 제반비용은 지자체 자체사업에 의한 단일 공동시설 조성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3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4(건축설계 대가요율), 별표5(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를 적용할 수 있음

2. 사업준비 단계

가. 추진 체계 구축(시·군·구)

○ (전담 부서) 사업 추진 전 주요 업무를 고려하여 지자체 내 농정·복지·건축 부서 등 관련 부서 중 전담 부서를 지정, 사업 준비부터 운영·관리까지 일원화

> ○○군에서는 2014년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신청 및 시설조성은 농정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운영 및 관리는 복지관련 부서에서 담당하여, 실제 운영과정에서 담당자의 이해부족과 문제발생에 따른 대응능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군에서는 건물은 준공되었으나 사업부서와 운영부서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는 사례가 발생

○ (협조 부서) 시설 조성 후 공동시설을 중심으로 고령자 대상 복지·의료·문화 서비스가 원활히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 부서를 지정, 사전에 프로그램 연계 방안 등을 협의

- 필요 시 보건소, 봉사단체 등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

> ○○시에서는 2014년 4월에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등 3개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안전망 구축 및 복지·의료·문화 등의 분야별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4개의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주민(추진위원회)은 자치규약을 만들어 자체 유지관리 및 운영조직을 구성, 유지관리, 수혜자 선정, 이용료 부과 등을 담당하게 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나. 기본계획 수립(시·군·구)

○ (수립 주체)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협의·협조 체계 구축

○ (주요 내용) 사업비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 시설 물량·규모, 사업 대상지 후보, 연계 프로그램 발굴, 연계 방안, 시설 조성 후 운영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

(표 4-2) 기본계획 수립 관련 체크리스트

항 목	체크리스트
목표 및 추진전략	사업의 목표가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 조성에 부합하는가?
	사업 추진전략이 목표달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사업수요	공동시설 각 유형별 사업수요가 확보되었는가?
사업부지	사업부지가 확보되었거나 부지마련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가?
	부지의 입지조건은 주민이용 및 시설관리를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인가?
	사업부지는 기존 마을 공동시설과의 연계성이 충분이 확보되었는가?
사업유형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 유형(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은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는가?
사업비	사업비 재원은 확보되었으며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비 배분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사업방식 및 규모	건축방식(신축, 증축, 개축 등)은 해당시설의 현황(노후화, 공간면적, 재료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가?
	조성하려고 하는 시설의 규모는 수요에 비해 적정한가?
운영 및 유지관리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은 구성되었으며 운영계획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향후 지속적 운영관리를 위한 연계사업(프로그램) 또는 지자체 자체 복지프로그램은 마련되었는가?
기 타	기타 사업계획 및 부문별 계획은 타당하고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다. 총괄계획가 위촉(시·군·구) [필요시]

○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준비 단계부터 총괄계획가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장

○ 위촉된 총괄계획가는 기본계획 수립, 주민 대상 설명 및 협의, 현장실사 및 사업성 검토 등에 참여하고, 사업착수에서 사업종료 이후 운영·관리 단계까지 대상지의 자문·멘토링을 담당하여 진행

○ 총괄계획가의 선정 및 운영, 보수기준 등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농식품부 총괄계획가 운영지침 및 지자체 조례 등 별도의 기준으로 시행

※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권장사항)

1. 자격
① 「고등교육법」 제2호에 따른 학교의 건축, 도시 및 지역계획, 농촌계획 관련 학과교수
② 건축, 도시 및 지역계획, 농촌계획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총괄계획가, 실무계획가 유경험자
- 그 밖에 위 두 가지 경우와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총괄계획가와 그가 속한 기관 및 업체는 당해 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에 참가할 수 없음. 단, 세부설계 이전 기획설계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553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준용하여 총괄계획가가 기획설계에 참여할 수 있음
3. 총괄계획가가 담당하는 대상지는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다수 사업지구를 협의하여 결정함

4. 총괄계획가 운영기간은 해당 지자체의 대상지 선정단계부터 사후 운영관리 단계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총괄계획가의 보수 기준
- 총괄계획가의 보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2조(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제4항에 의거, 지역여건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 (참고) 농식품부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총괄계획가 보수기준

○ 사전검토 및 자문비
- **4시간이상 자문 : 300,000원/회(권장)**, 4시간미만 자문 : 200,000원/회

○ 회의참석
- **2시간이상 회의참석 : 150,000원/회(권장)**, 2시간미만 회의참석 : 100,000원/회

○ 교통비 : 공무원 여비기준 적용

*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업무지침(농식품부)에 의한 보수기준을 근거로 시범사업의 성격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 지급기준 책정
* 사전검토 및 자문, 회의참석, 교통비 등은 총괄계획가 운영기간 (대상지 선정~ 운영관리) 내 각 3회를 권장함

라. 주민 대상 설명회(시·군·구, 읍·면·동)

○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 추진 이전, 대상 후보지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 성공 가능성 확보, 주민 요구 반영

2014년 시범사업에서 주민들이 본 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비 및 사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행정, 전문가, 공사관계자 등의 애로사항이 다수 발생. ○○시에서는 작은 목욕탕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찜질방 설치를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사업비 규모 내에서 설치가 곤란하여 주민협의 및 설득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 이와 같은 사례는 예산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요구사항 반영이 어렵고, 주민들은 사업취지 및 사업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인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 설명 내용
- 사업 취지 및 내용
- 조성 예정 시설 주요 내용
- 사업 대상자
- 지원 내용(시설 및 프로그램 연계)
- 운영·관리 방안 등

○ 설명 방법
- 주민홍보는 지자체 홈페이지, 이장단회의, 읍면발전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행
- 마을회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회의를 통하여 공동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의 주체로서 이해도 및 인식을 확대

마. 사업 추진 준비(지자체, 마을)

1) 사업부지 마련

○ 각 시·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부지 선정기준(마을역량, 입지, 건축물 계획, 예산확보 등 종합적 검토)을 마련하여 주민에게 이를 알리고 추진

○ 마을에서는 사업부지의 입지를 주민(특히, 고령자)의 이용 및 관리 등의 동선을 고려하여 가급적 마을 공공시설과 인근하거나, 마을 커뮤니티가 가장 활발한 장소 인근으로 설정

※ 사업부지의 입지선정에 관한 주요 확인사항

① 마을 공공시설과의 입지관계

- 사업부지 : 마을 공공시설(마을회관, 노인정, 보건진료소 등)과의 거리는 약 10m 내외를 기준으로 고려하되, 고령자의 보행이동 가능거리 및 주민의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가능한 마을 중심부에 위치하여 마을 내에서 주민의 이동 동선 또는 경로를 고려하고 유지 및 관리가 유리한 곳을 위주로 선정할 것을 권장

② 도로와의 관계

- 기본적으로 건축법 상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도로에 접한 부지를 대상으로 하며, 폭원 4m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한 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장
- 화재 등의 재해를 고려하여 피난 및 소방차 진입이 원활한 위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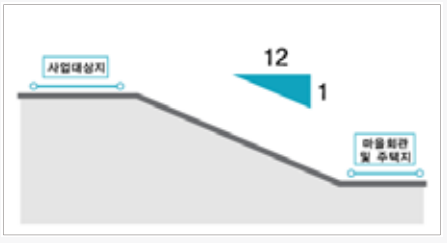

③ 고령자를 고려한 부지선정

- 부지선정 시 시설 이용자가 대부분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장애자가 스스로 이동 가능한 경사도인 1/12이하인 곳을 고려

④ 기존 공동시설물의 리모델링 원칙

- 현재 사용 중인 마을 회관 등을 리모델링할 경우, 마을회의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 공동생활 공간과 분리
- 신축은 지역 여건에 따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추진
- 빈집 활용 시 지자체·마을회 등에서 소유하거나 장기임대가 가능한 경우 등으로 한정

⑤ 작은목욕탕

- 해당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민간 목욕탕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
- 해당 지역(읍·면·동) 관내 및 인접지역(읍·면·동)의 민간 목욕탕까지 확인 필요(특히, 대상지가 인접지역의 경계와 가까이 위치하는 경우)

○ 사업부지는 마을 또는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기간은 20년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

(표 4-3) 토지 및 건축물의 임대 관련 참고 법령

관련사업 법령	주요내용
새만금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토지·건물 등의 임대특례)새만금사업지역 내 국공유 토지 및 건물 등의 임대 특례에 대하여 50년 이상 장기임대 가능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 (토지의 임대기간 등)토지 소유자와 주택을 분양받는 자 간의 임대기간은 40년 이내 가능

○ 임대의 경우에는 임차인과 맺은 임대계약서와 더불어 이를 지자체가 확인한 지자체확인서를 별도로 첨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

2014년 시범사업에서 사업비 확보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진행과정에서 사업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사업자체가 취소된 사례가 여러 건 발생. 따라서 사업신청 전까지 부지확보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대상지 발표일 이후 30일 내에 매입 또는 장기임대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권장

2)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 마을회는 사전에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 주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마을단위로 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 효율적 의사결정 등을 위해 마을이장 또는 노인회장 등 마을리더를 중심으로 구성

2014년 시범사업에서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녀회, 노인회 등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마을 전체주민의 의견수렴에 한계가 발생하고 마을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사례가 발생

○ 마을리더는 사전 주민의견 청취 및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시설종류, 시설의 입지조건, 부지확보(매입 또는 임대), 사업방식(신축, 증축, 개축 등), 시설규모, 운영방식, 관리조직 등에 관한 내용을 도출·합의

○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에 관한 지자체 사업설명회, 전문가 초청교육, 선진지 답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 사업추진에 관한 이해도를 증진하는 한편,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

3) 주민 역량강화

○ (필요성) 마을 또는 시·군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역량강화를 실시하여 공동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의 주체로서 이해도 및 인식을 확대

○ 지자체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역량강화 사업, 현장포럼 등 관련 사업을 활용하여 마을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지원

○ 사전 주민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자체는 설명회 개최, 전문가 초청교육, 선진지 답사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 역량강화 주요내용

○ 사업목적

- 창의적인 S/W 중심 사업추진을 통한 문화적, 공익적,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
  사업효과의 시·군 전체 파급과 시·군 자체의 역량강화

○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단위	세부유형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시행기간(년)
시·군	시·군창의	20 이하	5년 이내
	시·군 역량강화	**1.5 이하**	**1년**

○ 지원대상 및 유의사항

중규모 사업	지원대상	유의사항
시·군 역량강화	· 시·군 공무원 및 사업 준비지구의 마을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S/W 사업지원 - 마을 역량진단, 역량강화, 주민주도 마을 발전계획 수립 및 중간지원 조직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현장포럼 지원 가능) - (농식품부가 선정하는)총괄계획가 운영 - 관계자 사전교육 - 사업준비를 위해 필요한 전문 컨설팅 - 시·군 내 권역 간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 시설물 설치비용 지원불가 · 준공지구의 운영비 (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경상비)는 지원불가

□ 신청절차 및 방법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신청 절차 및 방법과 동일

* 단,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전문가 대면평가 생략(서면평가 실시)

* 중복지구 및 단계별 지원체계 내 부적합 지구는 선정 제외

※ 농촌 현장포럼 주요내용

○ **사업개요**

- 농촌 마을·권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과 역량을 분석·진단하고 마을·권역의 색깔있는 발전과제를 발굴하고 계획화를 지원하는 활동

○ **현장포럼 대상마을**

- 색깔있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
-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된 권역으로 사업추진을 준비하는 마을·권역
-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주민 주도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마을·권역
- 사업추진 중 애로가 발생하여 이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을·권역
- 농식품부에서 교육·운영하는 현장활동가가 동일 시·군에 소속되어 지원할 수 있는 마을·권역

○ **운영방법**

- 퍼실리테이션 워크숍을 통한 주민들의 전체 참여, 공감대 형성과 사업역량 제고, 마을 문제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 참여 방식
  - 1회(교육) : 마을자원·주민역량 분석, 마을사업 이해 교육
  - 2회(워크숍) : 주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발전과제 발굴
  - 3회(벤치마킹) : 테마와 관련된 선도마을 견학을 통해 주민역량 강화
  - 4회(전문가네트워킹) : 전문가 종합토론을 통한 마을 발전 과제 보완

○ **추진절차**

- 전문가 POOL 구성(출향인사, 학계, 컨설턴트 재능기부 등) → 대상마을 선정(지자체 추천 → 필요사항, 적합성 등 검토) → 자원분석 및 역량진단 (포럼 개최 전 현장활동가 방문하여 실시) → 참여전문가 및 진행자 선정 (자원분석, 역량진단 결과로 마을 대표와 협의 후 선정) → 현장포럼 실시 (자원 및 역량진단, 토론 구성)

3. 사업선정 단계

가. 심사위원회 구성

○ 시·군은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 전담 부서장 및 협조 부서장 등
- (민간) 총괄계획가, 건축, 도시, 조경, 공공디자인, 지역개발, 복지 전문가 등

○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는 설계(기획설계 제외), 시공 등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일체의 용역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 마련

나. 현장 실사

○ 시·군은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 서면심사를 보완하며, 특히, 시설의 노후화 정도(신축, 증축, 개축 등의 여부 결정), 입지여건, 주민역량 등을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여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

2014년 시범사업에서 각 대상지에서 제출한 제안서 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대상지 방문 결과, 실제 여건과 맞지 않고 유지·관리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한 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 발생

구분	사 례
공동 생활홈	기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건축물을 살펴보면 노후화 정도가 심해 구조적으로 내·외부 벽체를 철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신축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기존 유휴시설이 마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 발생
공동 급식 시설	시설의 입지가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과는 거리가 있어 주민의 접근이 매우 어려우며, 부지형상 또한 마을공동창고와 아동보호센터 사이에 위치하여 폭이 좁아 시설 설치 및 활용(사유화의 우려도 있음)에 문제점 발생(사업취소)
작은 목욕탕	당초에 기존 마을회관 옆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심사 당시 주변 마을과의 입지를 고려해 볼 때 중심성이 인정되었으나, 현장방문 결과 주변 마을에서 지방도를 거쳐 목욕탕을 이용하게 되어 고령자의 이동거리 및 안전성 측면에서 부적절(사업취소)

(표 4-4) 현장실사 점검표(예시)

항목	점 검 내 용	점수
사업 이해도	1. 시범사업의 취지 및 지침을 숙지하고 있는가?	( )/10
	2. 주민과 지자체의 사업이해도와 소통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 )/10
대상지 여건	3. 사업부지는 지침에 맞게 확보되었는가?	( )/10
	4. 시설의 위치 및 입지 여건은 적절한가?	( )/10
	5. 시설조성에 법적 제도적 제약사항은 없는가?	( )/10
추진 역량	6. 주민 스스로가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은 구성되어 있는가?	( )/10
	7. 시설 이용자 및 입주자는 결정되어 있는가?(이용자 면담확인)	( )/10
	8. 시설유지 및 관리를 감안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10
건축 방식	9. 건축방식(신축/리모델링)과 사업비 배분은 합리적인가?	( )/10
	10. 주변 공공시설과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하였는가?	( )/10
합 계		( )/100

다. 사업 타당성 검토 및 대상지 선정

○ 기 수립된 기본계획과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 고려

○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주민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사업 대상지를 최종적으로 선정

○ 최종 선정결과는 주민공람 및 이의제기 기간을 두고 확정

※ 주민공람 및 이의제기 절차 및 내용

○ 후보지 검토(기본계획과 현장실사 결과반영) → 대상지 선정(사업추진 가능성, 주민역량 등 종합적 심사) → **주민의견 청취(설명회 개최 → 주민공람 → 이의제기)** → 최종 대상지 결정 → 사업시행

○ 설명회 개최는 개최 14일전 통지(행정절차법 제38조 관련)

○ 주민공람 및 이의제기 기간은 지자체 여건에 맞추어 설정

4. 사업계획 수립 단계

가. 기획 설계(시·군·구)[필요시]

○ 필요 시 시행계획 수립 이전에 총괄계획가를 활용하여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각 시설물에 대한 기획설계를 시행

2014년 시범사업에서 각 지자체의 행정여건 및 추진방식에 따라 총액입찰, 수의입찰 등 자유롭게 설계자를 선정·진행하였으나, 당해 사업 취지에 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양질의 설계안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어 건축물의 공간 및 형태에서 그 품질이 낮은 경우가 발생. 이에 따라 2015년 시범사업에서는 총괄계획가가 기획설계를 담당하고 설계안을 실시설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 ○○군에서는 공동생활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총괄계획가의 자문 및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내부 칸막이벽을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설계하였고, ○○군에서는 현관부 및 내부공간 출입문에 단차를 없게 설계할 것을 자문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음

○ 총괄계획가에 의한 기획설계를 실시할 경우에는 2015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의 “총괄계획가 기획설계 추진 주요내용”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3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기획업무”를 참고하여 추진

○ 총괄계획가는 사전조사(현지답사 포함) 및 주민 추진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기획설계안을 도출

○ 총괄계획가의 기획설계 업무내용에 관한 보수는 지자체의 관련규정 등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 또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553호의 “기획업무”를 준용하여 추진

※ 총괄계획가에 의한 기획설계 주요내용(안)

○ 기획설계의 근거기준

-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553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기획업무"를 준용

○ 기획설계의 정의

-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기획설계의 정의
  - 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획업무"**로서, 실시설계 발주 이전 기본계획에 준하는 내용으로서 실시설계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설계업무로 정의

○ 기획설계의 내용

- 국토해양부 고시 제6조제2항 및 별표1, 기획업무의 내용을 근거로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기획설계의 내용을 제시

구분	업무의 내용		
기획설계	규모검토서(공간계획)	법규검토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제반 법규검토
		개략 배치도	건축물의 개략배치
		대지 종횡단면도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개략 평면도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각층 평면도
		개략 단면도	층수 및 층고 표시의 개략 단면
	현장조사	대상지 및 주변현황 확인	대지상태, 주변현황, 인접 도로 및 건축물 등
		사용자 조사	면담, 행태조사, 회의
		기존 시설물 분석	설계도서, 설비용량
	설계지침서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공사 관련 적정예산 제시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규모, 층수, 용도 및 공사비 비교
모형제작	Study 모형 제작(축척 1/50 이상)		

※ 참고) 국토해양부 고시(제2012-553호) 별표1 재정리

※ 주1) 대상지 여건 및 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획설계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주2) 필요한 경우, 기본설계 수준의 배치, 평면, 입면, 단면, 재료계획 등의 건축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 및 대가는 지자체와 총괄계획가가 협의하여 결정

○ 시·군은 총괄계획가가 기획설계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특히, 리모델링을 위한 기획설계에 있어서 요구되는 건축물의 기본도면 등 기초자료를 총괄계획가에게 제공
- 대지측량도, 기존건축물의 현황도면 등 대지의 측량, 실측자료 등

○ 각 지자체는 기획설계의 내용을 실시설계에 충실히 반영

나. 시행계획 수립

1) 설계업체 선정(시·군·구)

○ 각 지자체는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역량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

※ 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업체 선정방식에 관한 참고사항

○ 지자체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공동시설 계획 및 설계도서 등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을 참고하여 추진

① 일반입찰
- 총액계약, 수의계약 등이 해당되며, 계약이행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능

관련법령	조항	관련 내용 요약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	①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가능 ②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것이 가능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계약이행의 전문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자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

② 지명경쟁입찰

- 지자체의 실무자 판단에 따라 농촌여건 및 농촌건축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업체를 5개소 지명하여 입찰 가능

관련법령	조항	관련 내용 요약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23조 (지명입찰 대상자의 지명)	①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을 받아야 함.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 ② 입찰대상자를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는 바하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

③ 지자체 내에서 여러 건의 공동시설을 시행할 경우에는, 상기의 입찰 방식 등을 참고하여 **일괄 발주**하는 것도 가능

2) 시행 계획 수립(업체)

○ 지자체는 업체가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의 각 호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사업계획 내에는 시설계획 뿐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고령자 대상 서비스 프로그램 연계 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
- 국토계획법, 건축법, 소방법 등 관련 법적 협의사항 이행(필요시 인·허가 절차 이행)

절차	업무내용	근거법령	행위주체	담당기관	비고 (처리기간)
1	건축허가(신고)	건축법제11조 건축법제14조	건축주	시·군·구 (건축허가부서)	7일 (건축사 대행 3일)
	<복합민원심의> 개발행위허가 사도개설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의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배수설비신고 오수설치신고 상수도공급신고	건축법제12조	-	시·군·구	부서협의: 15일 실무협의:1일
2	철거신고	건축법제36조	소유주·관리자	시·군·구 (건축허가부서)	1일
3	착공신고	건축법제21조	건축주		1일
4	사용승인	건축법제22조			7일
5	유지관리	-		취득세 : 사용승인일 30일 이내	

건축계획/ 입지단계	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공원법 농지법, 산림법, 초지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수도법 자연환경보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 한특별조치법 학교보건법 습지보전법
기본설계	건축 허가	
↓	건축법, 주택법 ,주차장법, 도로법, 수도법, 하수도법,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 등 전 단계에서 관련된 모든 법령 건축용도에 따른 개별법상의 시설기준 적용	
실시설계	착공신고	
↓	건축법,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환경, 전기, 통신, 가스, 소방, 위생 등 건축물 공사와 관련된 법령	
건축공사(시공)	공사감리	
↓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 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가스안전관리법, 소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소음 진동규제법 등 환경 관련법령 등	
공사완료	사용승인	
↓	건축,통신,소방,정화조,상하수도,통신 등 준공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법령	
건물사용	유지관리	
↓	건축법 환경 관련법령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건축물의 용도기준 관련 모든 법령 전기, 가스, 소방, 정화조 등 설비점검 관련 모든 법령 등	

- 고령자 생활을 고려한 무장애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 무장애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참고사항

○ 지자체는 고령자 생활을 고려한 시설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 ·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을 참고하여 추진

구분	관련항목	관련 주요내용
접근로	유효 폭 및 활동공간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도록 1.2m이상 계획
	기울기 등	1/18이하(지형상으로 곤란한 경우 1/12이하)
	경계	접근로와 차도 경계에 연석 등 분리시설 설치
	재질과 마감	미끄러지지 않은 재질 사용
	보행장애물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설물 설치
주차구역	설치장소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
	주차공간	3.3×5m이상
	유도 및 표시	장애인 전용표시 의무화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턱 낮추기	2㎝ 이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세부기준 제11호 및 제12호 적용
출입구	유효 폭 및 활동공간	통과유효폭 0.8m이상
	문의 형태	회전문은 금지하고, 이용성 고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레버형 또는 막대형으로 설치
	기타설비	점형블록 등 설치
복도 및 통로	유효 폭	1.2m이상
	바닥	높이차 금지
	손잡이	복도측면에 연속하여 설치
	보행장애물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고려
	안전성 확보	킥 플레이트 설치
계단	계단의 형태	높이 1.8m마다 계단참 설치
	유효 폭	1.2m이상
	디담판과 챌면	디딤판 너비는 0.28m, 챌판 높이는 0.18m이하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연속하여 설치

구분	관련항목	관련 주요내용
	재질과 마감	미끄러지지 않은 재질 사용
	기타 설비	추락방지턱 설치 가능
승강기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
	크기	1.1×1.35m이상(신축의 경우 폭 1.6m이상)
	이용자 조작설비	바닥에서 0.8~1.2m 범위
	기타설비	수평손잡이 등 설치
경사로	유효 폭 및 활동공간	1.2m이상
	기울기	1/12이하
	손잡이	양측면에 연속하여 설치
	재질과 마감	미끄러지지 않은 재질 사용
	기타시설	지붕 및 채양 등의 설치
화장실	일반사항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
	대변기	유효바닥면적 1.4×1.8m/수평·수직손잡이 설치
	소변기	바닥부착형으로 하고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세면대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욕실	설치장소	접근이 용이한 통로에 설치
	구조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설치
	바닥	욕실의 바닥면 높이를 탈의실과 동일하게 유지
	손잡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장소	접근이 용이한 통로에 설치
	구조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설치
	바닥	바닥기울기 1/30이하
	손잡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기타설비	수도꼭지는 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채용
기타	점자블록, 객실 및 침실, 접수대 및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및 음료대, 우체통 등	

※ 배리어프리 및 유니버설디자인 참고자료

* 본 자료는 배리어프리 및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내용으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관련항목의 적용 예시이며,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을 조성할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의무적인 기준이 아님

1. 현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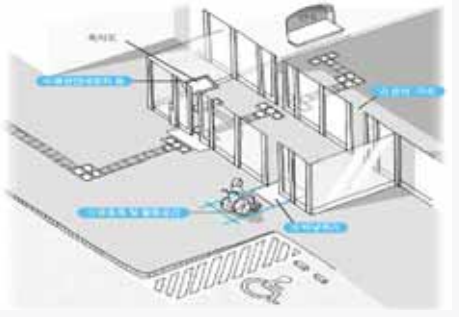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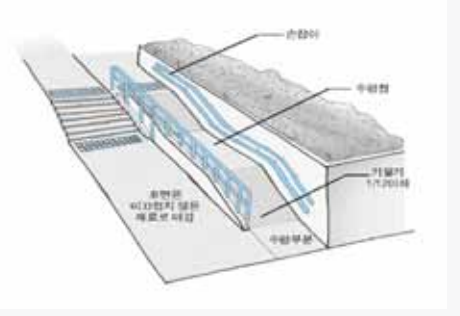

<외부 경사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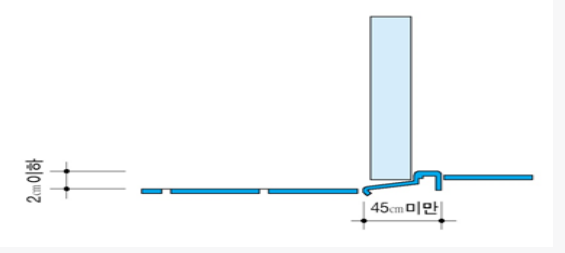

<단차 허용기준>

2. 통행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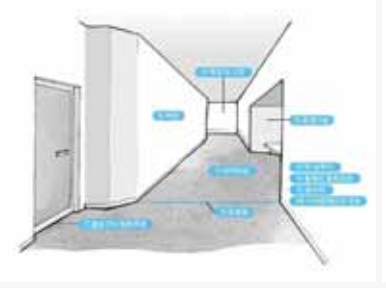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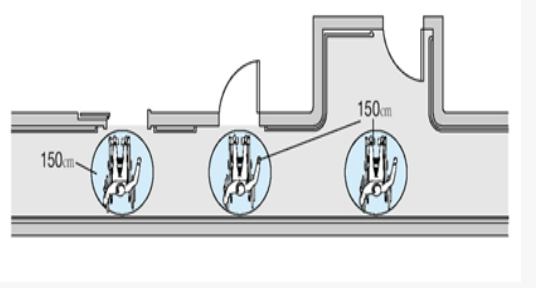

<복도의 유효 폭>

3. 출입구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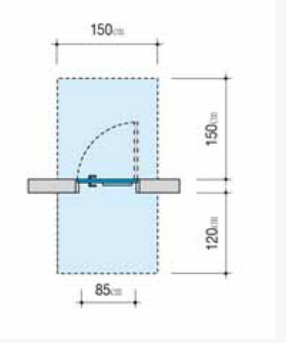

<여닫이 문 확보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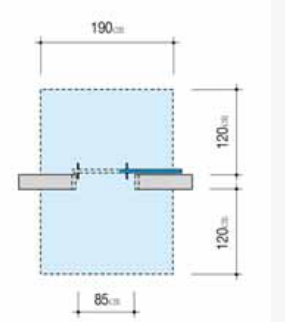

<미닫이 문 확보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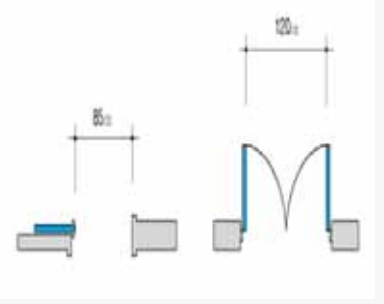

<미닫이 및 여닫이 문의
최소 폭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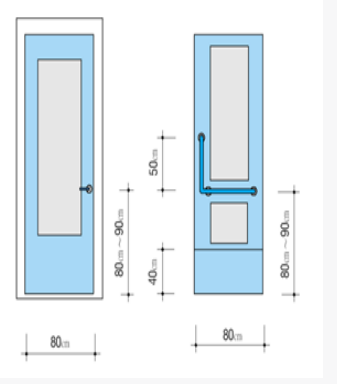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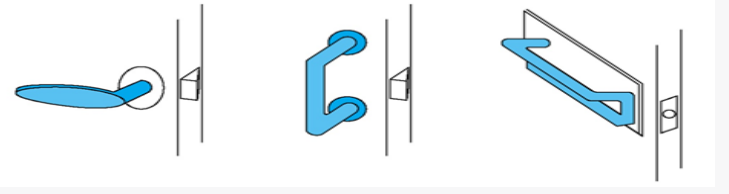

<손잡이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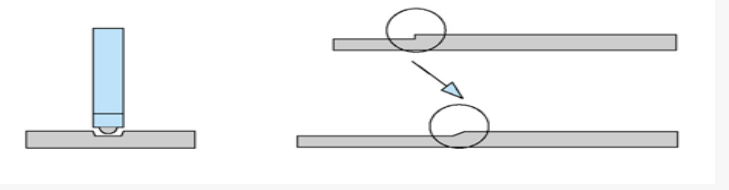

<단차 없애기>

4. 경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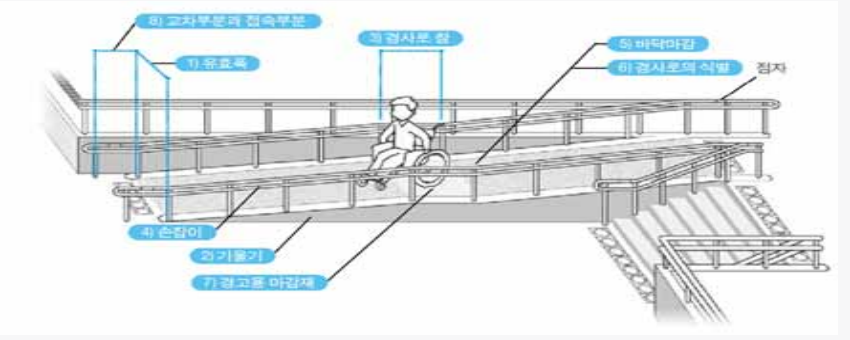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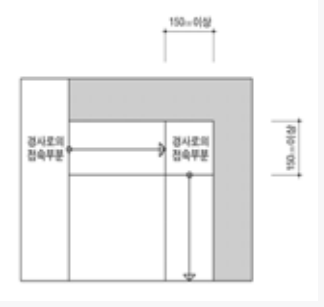

<경사로 접속 및 최소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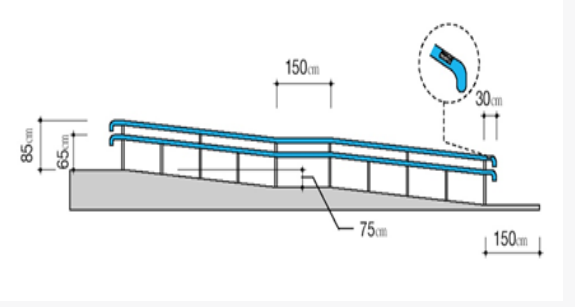

<단면형태 기준>

5.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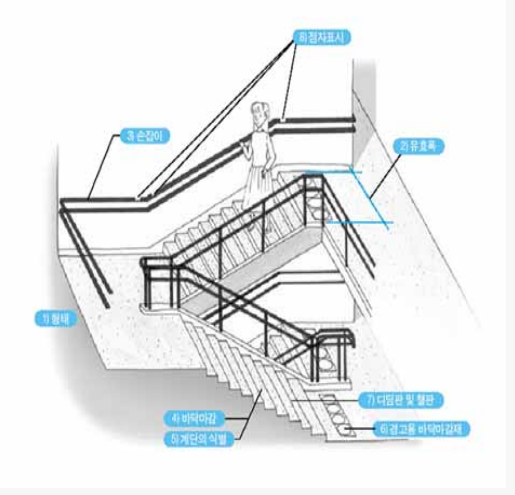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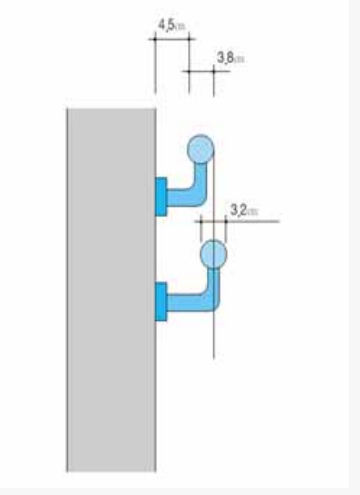

<손잡이의 규격>

6.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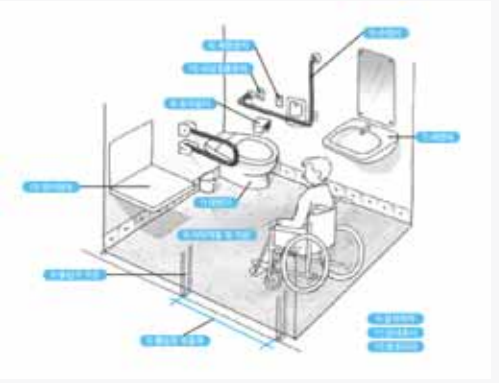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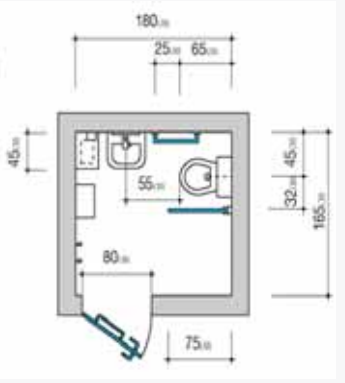

<단위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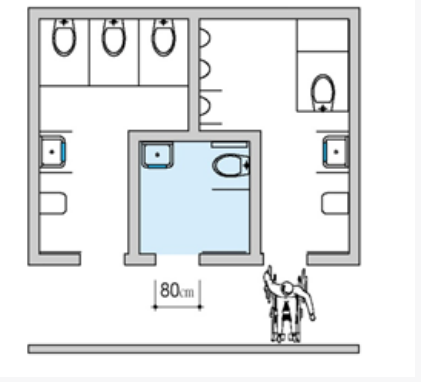

<남녀 공동사용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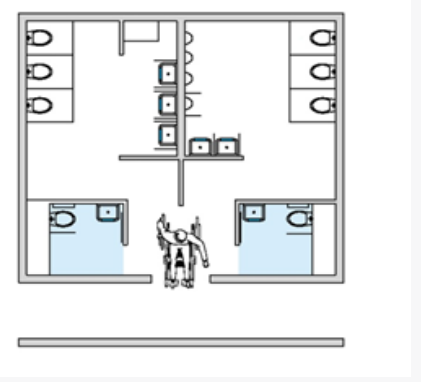

<남녀 구분사용 예>

7. 기타

<편의시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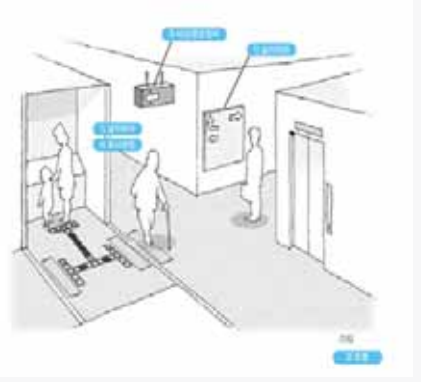

<피난에 관한 안내 등>

- 관련사업 및 복지·문화 프로그램 연계방안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군에서는 작은목욕탕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범사업 관련 예산 2억원(국비 1억원+지방비 1억원)에 군 자체사업비 5억원을 추가하는 한편, 읍면소재지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상시 운영하는 목욕탕(남녀구분형)을 건립하였음
> 또한, 주민이 인접한 지역보건소의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쿠폰(2천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사업비를 고려한 합리적 투자계획 수립
- 상기 각 항목을 포함한 세부설계, 시설물 배치, 운영계획 등 시행계획 전반을 총괄계획가 및 주민 추진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결정

○ 시행계획에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합의하여 유지관리, 수혜자 선정, 이용료 부과 등 시설 운영·관리 시스템을 고안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이를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안에 최대한 반영

○ 지자체는 시행계획 수립과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련 부서가 포함된 추진협의체 구성 결과 및 연계 지원계획을 시행계획에 명시
- 건축·농정·복지·문화 등 관련 부서 협의체 구성
- 관련 사업 및 복지·문화 프로그램 등 연계 지원계획 수립

※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공모제안서와 사업성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계획서를 작성하며, 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

① 대상지 및 지역의 현황, 지역특성 분석내용
② 관련계획 및 법령, 유사사례 등 검토, 시설이용의 중장기 지표 설정
③ 시설계획의 기본방향 설정
④ 시설 유형별 법적 규제사항 검토, 시설물 구조안전여부 확인
⑤ 건축설계도서(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 시방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
⑥ 무장애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계획 및 내용
⑦ 타 관련사업 및 복지·문화 프로그램 연계 지원 계획
⑧ 공동체 기반 운영·관리체계 및 운영 효율화 등 사후 운영·관리 계획
⑨ 사업비 투자계획 및 조달계획
⑩ 기타, 지자체 또는 총괄계획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시행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① 시설물 조성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건축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관련법, 전기·통신시설관련법, 지자체 조례 등
② 마을회관 등 기존시설 리모델링 또는 증축을 우선 추진하되, 시설물 신축 혹은 빈집 등 기존시설을 활용해야 할 경우 조성예정 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매각 또는 장기(20년 이상) 임대사용 등 동의서(확약서)를 반드시 확인
③ 추진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회의록 등을 반드시 첨부
④ 마을에서 유지관리 및 운영이 가능한 규모로 계획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설명
⑤ 관련사업 및 복지·문화 프로그램 연계방안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획수립
⑥ 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타당한 주민의견은 계획에 반영

○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는 경우, 총괄계획가의 자문의견을 검토·반영하며, 그 내용을 시행계획에 명시

※ 시행계획 수립 시 총괄계획가의 기본적 확인 및 자문사항

① 건축계획의 적정 여부

- 공간계획 및 동선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기본계획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특히, 사용자의 입장을 가장 먼저 고려하여 마을의 여건 및 인근 공공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② 배리어프리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여부

- 2014년 시범사업에서 배리어프리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고려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토가 미비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령자의 신체 및 행동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디자인 디테일에 관한 자문 및 현장 확인이 필요

③ 내·외부 건축자재의 적정 여부

- 2014년 시범사업에서 농촌경관 및 자재의 내구성 등을 고려한 내·외부 건축자재 적정 여부에 대한 자문이 다소 미흡하였으므로, 기획설계안 작성 및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

④ 구조계획(안전도 포함)의 적합 여부

-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계획 수립업체와 협의하여 진행

⑤ 부대 설비계획의 적정 여부

- 향후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시설이용의 편리성, 운영비 절감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특히 냉난방 설비계획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

⑥ 예정공사비(원가계산 포함)의 적정여부

□ 공동생활홈 조성 시 별도 고려 사항

○ 사업 대상지와 입주자 수에 맞는 거주방식을 검토하고, 1인 평균 필요면적에 주의하여 계획

- 1인 최소 필요면적은 평균 16~18㎡의 범위 내에서 각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

※ 1인 평균 필요면적

① 표준 1인 거주면적 : 16.5㎡/인(이광로외 4인, 건축계획, 문운당, 1988)

- 주거시설의 1인당 거주면적은 적어도 10㎡/인은 되어야 하며, 표준으로는 16.5㎡/인이 요구

② 일본의 최저한도 : 9~10.5㎡/인

- 타다미(900×1,800㎜)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 1인당 3.0~3.5조를 최저한도의 소요면적으로 규정

③ 세계가족단체협회의 콜로뉴 기준 : 16㎡/인을 권장

- 실의 수, 거주인원 수, 주거면적 당으로 구분하여 주생활 수준 및 건축면적의 기준을 제시

④ 프랑스 송바르 드로우 기준 : 16㎡/인을 권장

- 주택 건축면적의 유효기준을 1인당 16㎡이상이면 개인적 혹은 가족적인 융통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한계기준은 1인당 14㎡이하이면 거주의 융통성 보장이 불가능한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병리기준은 1인당 8㎡이하로 거주자의 신체적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언급

⑤ 영국의 일반주택 수준(1988) : 17~18㎡/인

⑥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 15.9㎡/인 이상 확보

○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공동생활홈은 가급적 독립침실형 또는 독립거주형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동거주형으로 계획하는 것을 권장

○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 남녀의 생활공간을 명확히 구획

*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독립거주형을 주로 고려

○ 독립거주형의 경우 입주자 공동의 친교공간(공동거실 등) 계획 수립

○ 마을의 다른 시설과 공유하는 경우, 공동생활홈의 기능에 집중하고, 동선 및 거주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입주자의 프라이버시 고려

* 마을 내 공공시설의 일부를 공동생활홈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기존 공공시설과 공동생활홈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벽으로 공간을 명확히 구획하는 한편,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획

□ 공동급식시설 조성 시 별도 고려 사항

○ 공동급식시설의 조리구역과 식사구역을 구분하되 조리구역과 식사구역을 동일 공간 내에 설치하며, 가급적 바닥난방(바닥 패널히팅)의 좌식 식사 공간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

> ○○군의 경우, 2014년 시범사업을 통하여 입식위주의 바닥난방이 되지 않는 공동급식시설을 건립하였으나, 평소 고령자가 입식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점과 급식시설 내 별도의 난방기구에 의한 전기요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점 등의 이유로 시설의 활용도가 매우 미약함. 따라서 공동급식시설은 고령자가 익숙한 좌식위주의 공간계획이 필요하며, 난방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바닥난방(패널히팅)방식으로 계획하는 것을 권장

○ 환기 및 습도조절에 용이하도록 급식, 조리, 식자재 창고 등의 배치에 주의(일사가 긴 서쪽은 음식물이 부패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피하도록 함)

○ 조리대 규모 및 가구 배치는 공간의 전체적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 식자재 보관 시설을 별도로 마련하고, 식자재 보관을 위한 냉장고 및 창고시설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계획되지 않도록 주의. 특히, 환기 및 통풍이 용이하도록 계획

* 특히, 식자재 창고는 환기 및 습도조절을 위하여 출입문과 별도로 반드시 외부와 면하는 창문을 설치

□ 작은목욕탕 조성 시 별도 고려 사항

○ 건축물 규모가 매우 작아 남탕과 여탕을 구분하여 시설을 조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일제 또는 격일제로 성별을 구분하여 운영하며, 일정 규모 이상으로써 남탕과 여탕을 구분하여 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남탕면적보다 여탕면적을 크게 계획하는 것을 권장

> ○○군의 경우, 2014년 시범사업에서 지자체 예산을 더욱 투입하여 남탕과 여탕이 구분된 작은목욕탕을 설치하였고, 하루 이용객 수가 150~170명에 이르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 작은목욕탕의 경우, 여성욕탕은 매우 붐비는 반면 남성욕탕은 비교적 한산한 실정으로, 향후 남탕과 여탕이 구분된 목욕탕을 설치할 때에는 남성욕탕 보다 여성욕탕의 면적을 크게 설정하는 것을 권장(남성욕탕:여성욕탕=2:3)

○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도입

(표 4-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기준단가(참고)

구 분				기준단가(천원)
태양광	일반건물	고정식		4,972/kW
		추적식		5,604/kW
		BIPV		9,553/kW
	주택	고정식		3,913/kW
		추적식		4,647/kW
태양열	일반건물	평판형 · 이중진공관형		1,012/㎡
		단일진공관형		1,160/㎡
	주택	평판형 · 이중진공관형	10㎡ 이하	1,189/㎡
			10㎡ 초과~30㎡ 이하	1,012/㎡
		단일진공관형	10㎡ 이하	1,359/㎡
			10㎡ 초과~30㎡ 이하	1,160/㎡
지열	일반건물	수직밀폐형		1,260/kW
	주택	수직밀폐형	10.5kW이하	1,981/kW
			10.5kW초과~17.5kW이하	1,690/kW
집광채광	프리즘형			8,496/㎡
	광덕트형			4,536/㎡
소형풍력	3kW이하			9,520/kW
연료전지	1kW이하			51,100/kW

주)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설치의 기준단가이며, VAT포함금액임
자료)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46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관련 기준단가

○ 고령자 이용시설임을 고려하여, 미끄럼 방지가 가능한 바닥 마감재를 적용

(표 4-6) 욕실바닥 마감재 참고자료

구분	종류	설명	단가	비고
타일	논슬립 타일	무유 타일 중에서도 자기질타일 또는 석재질타일로써 표면이 거칠어 미끄럼방지처리가 된 타일	20~25만원 /3.3㎡	시공비, 재료비 포함 (욕조 있는 경우 추가)
건식	나무 발판	나무(방부목, 편백나무, 삼나무 등)로 타일바닥 위나 방수마감 위에 데크를 깔아 마감	15~17만원 /3.3㎡	시공비, 재료비 포함 - 타일 및 방수 마감 위 시공
코팅	코팅제	기존 타일위에 투명한 코팅을 하는 방식으로 특수수지로 미끄럼방지 재료를 바닥면에 접착시켜 일체감을 이루고 다양한 색상 및 질감으로 코팅하는 방법	5~7만원 /3.3㎡	시공비, 재료비 포함 수명(3~5년)
테이프	접착	존 타일 위에 다양한 무늬 혹은 투명한 코팅지를 붙이는 방법	2만원/개	직접 시공

○ 화장실의 위생기기(대·소변기, 세면대 등)는 장애인용으로 설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료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의 <13.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참고하여 설치

다. 시행계획 검토 및 모니터링(시·군·구)

○ 지자체는 시행계획 내용에 관하여 사업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사업내용의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며, 필요 시 협의·조정

○ 총괄계획가를 위촉한 경우에는 총괄계획가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

○ 지자체는 시행계획 수립 과정을 점검·지원하는 한편, 각 과정별로 모니터링을 수행

라. 시행계획 설명 및 주민 협의(시·군·구, 읍·면·동)

○ 지자체는 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된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협의 진행, 설명회 후 15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주민 의견 수렴

○ 주민의 이견이 있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에는 시행 계획 변경·반영, 부적정한 경우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

○ 향후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 설명 및 협의 시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주민 확인 후 비치

마. 시행계획 승인(시·군·구)

○ 시행계획 검토 및 주민 협의 최종 완료 후 사업 승인

5. 시공 단계

가. 시공 계획 수립

1) 시공 전 유의 사항

○ 지자체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사업발주와 병행 처리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함

○ 소속 관련 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수시로 현장을 확인, 공사과정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전·후의 현장사진 등을 보관

○ 시행계획 및 시·군 추진협의체에서 계획한 복지·문화 등 연계지원 프로그램 및 관련 사업을 준공일정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관련부서, 기관 등과 사전 협의하여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 시공과정 진행 중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총괄계획가를 위촉한 경우에는 총괄계획가의 자문결과를 검토·반영

2) 시공 업체 선정(시·군·구)

○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공사 시행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공능력이 충분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

○ 시·군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 시행자를 선정하는 기준 등을 마련하여 반영

* 사업규모가 작아 시설별 개별 발주(계약)가 어려운 경우에는 묶음 발주(계약)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시공업체 선정은 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시공품질의 향상을 도모

※ 시공업체 선정기준(안)

① 기술능력(70점)
- ○ 시공실적(최근 ○년 이내에 준공된 단일 공사실적 등) : 20점
- ○ 해당분야 기술자 보유현황(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 등) : 10점
- ○ 시공능력평가(추정금액 대비 건축공사업 시공능력 평가액 등) : 20점
- ○ 회사 신용도(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 등) : 20점

② 입찰가격(30점)
- ○ 제안금액(입찰가격 등) : 30점

③ 가감점(±3점)
- ○ 가감점(수상실적 가점, 법령위반 사실 감점 등) : ±3점

3) 시공계획 수립(업체)

○ 시공업체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참고하여 시공계획을 수립

○ 시공계획은 공정 및 예산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 공정 및 예산계획에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공사감독 및 수급자 조치사항
- ○ 종합 공정계획의 수립(공정상호간 선행, 동시 및 완료 후의 작업 구분)
- ○ CPM공정표 작성(중간관리일 명기)

② 공정율 진도관리
- ○ 주요 개별공정에 관한 일정계획 수립
- ○ 공사 준비사항 점검 등

③ 공정추진 관리
- ○ 공사 추진내용(월별),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 계획, 장비 투입계획 등

④ 예산집행 관리
- ○ 공종별 예산계획, 월별 예산계획 등

4) 시공계획 검토·승인(시·군·구)

○ 지자체는 시행자에게 시공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 시공계획 검토 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과의 상충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며, 이상이 없는 경우 계획 승인, 시공 착수

나. 시공(시·군·구)

1) 시공 과정 모니터링

○ 시·군은 다음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사를 중지하고 주민, 총괄계획가(위촉 시), 시행계획 수립업체, 공사 감리자, 시공업체 등과 협의하여 최종 수정안을 도출

- 시공 과정에서 현장여건 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행계획의 내용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 시공과정에서 예측되는 문제점

① 기존의 노후화된 건축물을 활용할 때 주요 구조재의 강도저하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보강 등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신축 및 증축의 경우에는 지반의 지내력이 부족하여 기초 보강공사에 상당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마을의 여건변화에 의하여 시설의 종류 및 건축방식 등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④ 기타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공사기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등

- 주민 또는 추진위원회 등이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시행계획 또는 시공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공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2) 준공 및 사용 승인

○ 지자체는 공사계약에 의거하여 준공기일에 앞서 사전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시공품질에 만전을 기함

○ 지자체는 공사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공사 시행자 또는 위탁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

○ 지자체는 복지·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연계 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신청 등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프로그램 연계 지원

○ 각 시설별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물 대장에 등록
- 리모델링인 경우 : 기존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고려할 때 리모델링 후 공동시설(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의 운영 방향, 목적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 기존 시설물의 등록 유지
- 신축 또는 리모델링 후 용도가 달라진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설로 등록할 것을 권장

2014년 시범사업에서는 각 시설유형의 리모델링에 있어서 대부분의 대상지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노유자시설로 기존용도를 유지하였으며, 신축의 경우는 해당부지의 법적제약요건 및 유형별 시설의 활용도에 따라 적정용도(제1종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등)로 등록하여 시설을 조성함

(표 4-7) 공동시설의 용도 검토

구분	가능용도	근거법령	주요내용	비고
공동생활홈	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1. 노유자시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화재감지 장치 설치 의무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1종근린생활시설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주거시설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
공동급식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1종근린생활시설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작은목욕탕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1종근린생활시설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6. 입주 및 평가

가. 입주

○ 준공 및 사용승인 후 시설 이용 또는 입주 개시
- 입주 및 이용비, 입주 후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관리 항목 참고

나. 연계 프로그램 지원(시·군·구, 읍·면·동)

○ 지자체는 복지·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연계 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프로그램 진행(연계 가능한 복지·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은 부록. 고령자 공동시설 연계 가능 사업 참조)

○ 프로그램 연계를 위해 지자체는 프로그램 운영 부처와 개별 접촉(사업 신청 등), 지자체 내 공동시설 전담 부서와 프로그램 연계 부서 간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연계 사례

○ 2014년 시범사업에서 전북 김제시의 경우, 2015년 3월부터 공동생활홈 입주자를 대상으로 지역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케어봉사활동(김제시 여성가족과 주관) 등 연계추진

※ 관련부서 간 협업 사례

○ 강원 인제군의 경우, 2014년 시범사업에서 경로가족과(주관부서), 건축과(공사감독), 경제협력과(태양열 관련 예산지원)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 사업추진을 도모

다. 사용 후 평가(시·군·구, 읍·면·동)

○ 지자체는 입주 후 최소 6개월이 경과한 후, 공동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 항목의 사용(거주) 후 평가를 실시

일반적으로 건축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주 후 평가(POE)에서는 구체적으로 최소한의 거주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마을공동체 기반의 공동시설의 운영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 후 평가는 최소 6개월 이상을 권장

- 주민 만족도 조사, 사업평가 및 의견수렴 사항
- 운영·관리 상 발생 문제점 및 해결방안 검토
- 고령자 대상 서비스 프로그램 연계 상황 검토
- 계획수립, 시공, 운영·관리 등 단계별 모니터링 검토

○ 지자체는 사용(거주) 후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차년도 사업 시행, 기존 공동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 보완 등에 활용

* 사용(거주) 후 평가의 주요내용 및 세부항목은 본 연구의 「제3장 제2절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평가」의 주민만족도 조사 참조

7. 운영 및 관리 단계

가. 마을 및 시설이용자 측면

○ 공동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을공동체 협의에 따라 유지관리, 수혜자 선정, 이용료 부과 등 시설 운영·관리 시스템을 고안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 주민자치회(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등)가 주체가 되어 공동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도록 유도

※ 주민 자치회의 자율적 역할분담을 통한 운영사례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회안마을에서는 공동급식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마을회와 부녀회가 자율적으로 업무 및 역할을 담당하여 운영

○ 마을회에서는 공동급식시설의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고, 부녀회에서는 식사준비, 영양관리, 음식 및 위생관리, 식사장소 및 조리장소의 청소 등을 담당하고 있음

○ 필요 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동체회사 등 지역 내 봉사 단체 또는 주요 활동 단체의 협조를 얻어 운영·관리

○ 각 시설별로 주민 협의를 통한 운영 규약 제정·이행

○ 마을 및 주민들은 고령자 공동시설의 목적 외 사용, 사유화 등에 유의하여 시설을 이용

나. 지자체(시·군·구, 읍·면·동) 측면

○ 지자체는 시행계획에 명시된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는 지 지속 점검
- 시설물의 기능유지,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위생환경에 관한 관리 등을 위한 수시 또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의 일반사항

○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의 설치목적 및 기능, 운영방안, 구조, 규모 등을 정리·파악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함

○ 유지관리 내용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고, 특히 주 이용대상자인 고령자의 안전관리 등에 유의하여야 함

○ 유지관리자는 준공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적절히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하여야 함

○ 유지관리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노인복지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지자체 조례 등 관련법의 규정에 유의하여 관리

○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주요 제원, 점검계획과 결과, 대책수립과 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함

○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구분	분야	적용대상	관리주체
청소관리	생활폐기물 배출 등	모든 건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주차관리	주차장 관리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건물하자보수 등	건물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모든 건물	소유자
건물의 유지·관리	건축법 에 따른 건물의 유지·관리	모든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건축물의 유지·관리
-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건축법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건축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건축법」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함(건축법 제35조제1항)

○ 청결 유지 의무
-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해야 함(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2. 이를 위반해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2호)

-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 개인 사유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 및 주민에 대한 교육,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문제 확인 시 시정 조치 등 관련 규정을 이행

○ 지자체는 공동시설 유형별 조례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에 철저

○ 마을 자체 운영·관리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 예산 및 관계 부처 사업 등을 확인하여 지원 방안 검토

(표 4-8) 공동시설 지자체 지원내용 권장사항

구분	주요내용
공동 생활홈	1. 전기료·전화료 등 각종 공공요금 2. 냉난방비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3.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보험료 가입 경비 4.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5. 이용자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등
공동 급식시설	1. 취사도구 구입지원 2. 부식비 일부 보조 3. 시설정비 보조
작은목욕탕	1. 운영보조금 지원 2. 시설정비 보조 3. 각종 지자체 문화·복지프로그램 연계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시설 유형별 고령자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

* 공동시설과 연계 가능한 고령자 서비스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및 연계방법은 「부록. 고령자 공동시설 연계 가능 사업」 참조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5장 결론 및 제언

○ 농촌 지역은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독거노인이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생활여건은 주거·영양·위생 여건이 열악한 실정임. 이러한 시점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의 추진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동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농촌의 복지향상과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사업 준비기간의 부족, 주민의 사업 이해도 부족, 사업비의 한계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시설조성 미흡, 지자체의 사업비 확보 어려움과 대상지 여건에 따른 전체적인 사업기간 지연, 운영·관리 방안 마련 미흡 등을 들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특히, 농촌 지역에 양질의 공동시설 확충·보급을 위해서는 우수한 설계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전문가에 의한 사전 기획설계를 실시하고 설계안을 실시설계와 연계되도록 한다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사료됨

○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은 201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됨에 따라 향후 추진 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자체가 활용하고 확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시범사업은 지역의 개별 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중앙정부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공동시설 확충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지차체가 자율성을 갖고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추진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지자체 자체 예산 활용 또는 중앙정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관련 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향후 농촌지역의 여건변화와 함께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수요에 미리 대비하고 관심도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한편, 시범사업의 추진 상 문제점으로 시설 조성 이후의 운영·관리 방안 마련과 실제 프로그램 연계가 미흡한 점은 향후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 본 연구의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주민들은 운영·관리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해당 지자체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사업추진 가이드라인을 통해 준공 이후 운영·관리 단계에서의 주체별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나, 실제 운영·관리 단계에 있는 시범사업 준공 대상지가 많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반적인 사항들을 제시하는데 그친 한계가 있음.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지자체의 시설 준공 이후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적 사항들과 연계프로그램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부록

고령자 공동시설 연계 가능 사업

<부록> 고령자 공동시설 연계 가능 사업

부처	사업명	주요 내용
복지부	건강100세 노인운동서비스 (건보공단)	○ 건강100세 운동교실 -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경로당 등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건강운동프로그램 등 지도(주 1~2회)
	경로당 활성화지원 서비스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관에서 관련인력 파견, 경로당이 지역의 노인복지·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평생교육(한글교실, 정보화교육, 외국어교실 등) - 정서생활지원(노인문제상담, 복지정보 및 상담, 심리상담, 죽음준비교육 등)
	생활터전 건강지원서비스 (보건소)	○ 보건소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건강증진프로그램 기획 → 어르신이 모여계신 곳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 치매조기검진, 만성질환 관리방법 교육, 영양관리 교육 등
문화부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방문화원)	○ 지방문화원을 통해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방문화원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마을에 어르신 대상 풍물강습을 지원 * 어르신 문화학교, 찾아가는 문화학교, 문화동아리 지원 등
	문화 이모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지역문화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자기진단 및 학습을 통한 창의적 능력 향상 - 주요내용 : (교육)기초과정→(교육)집중과정 →(지원·컨설팅)기획사업·지식실행공동체
	농산어촌 이동형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아동·노인 복지시설(경로당 포함) 등 대상, 버스 활용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국민생활체육회)	○ 노인복지시설 순회지도 및 용품 보급, 노인맞춤형 체조 보급 등 - 주요내용 : 어르신 생활체육종목 보급, 노인주거복지시설 체력관리 집중지원 등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국민생활체육회)	○ 노인 생활체육 방향 정립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 주요내용 : 65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지도활동 제공
농식품부	가사도우미 (지역농협)	○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기초적인 가사생활유지를 위해 가사도우미를 지원
	농촌사랑 의료지원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	○ 의료낙후지역 마을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촌 취약계층 어린이 대상으로 의료활동 지원

1	건강100세 노인운동 서비스(복지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운동 참여 활성화를 통한 노인 건강 증진

□ 지원대상 및 조건

○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중 운동에 참여하기 원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 사업수행기관 : 건강보험공단 지사

□ 사업내용

○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경로당에 운동강사를 파견하여 건강운동 프로그램 교육 실시(주 1~2회, 5~6개월)

- 표준 운동 프로그램, 요가, 실버체조,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운동+영양강좌+건강측정) 제공

2. 서비스 프로그램 연계 방법

□ 연계 가능 시설 : **공동생활홈**

□ 연계 가능 시기 : 입주 즉시

□ 연계 및 신청방법

○ 서비스 지원 필요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건강관리팀 건강증진 담당자)와 연락하여 일정 조율, 서비스 지원 요청

- 유선 : 1577-1000(대상지 인근 지사 건강증진 담당자 연결 요청)

2 경로당 활성화지원 서비스(복지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경로당이 지역의 노인복지·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의 전문 프로그램과 연계

□ 지원대상 및 조건 : 시군구에 설치된 경로당으로서 운영이 취약한 경로당에 우선 제공

□ 사업수행기관 : 시군구 노인종합복지관

□ 사업내용

○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정서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지원

- (평생교육 지원) 한글교실, 외국어교실, 교양교실, 정보화교육
- (취미여가 지원) 음악, 미술, 원예, 다도교실, 바둑장기 등
- (정서생활 지원) 노인문제상담, 복지정보 및 상담, 전문상담(경제, 법률, 성 등) 심리상담, 죽음준비교육, 자살예방사업 등

2. 서비스 프로그램 연계 방법

□ 연계 가능 시설 : **공동생활홈**

□ 연계 가능 시기 및 연계방법 : 시군이 시군에 설치된 노인복지관과 연계 프로그램 및 연계 시기 등을 협의

○ 시군별 지역특성 및 공동생활홈 거주 노인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관에서 수행중인 프로그램 중 연계 프로그램 선택

3 생활터전 건강지원 서비스(복지부)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실정에 맞는 건강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역 주민 누구나

□ 사업수행기관 : 보건소

□ 사업내용

○ 각 보건소는 연간계획에 기반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 지역주민이 모여있는 곳(학교, 어린이집,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찾아가서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제공

- (어르신) 건강운동 프로그램, 치매조기검진, 만성질환 관리법, 영양교육 등 제공

2. 서비스 프로그램 연계 방법

□ 연계 가능 시설 : **공동생활홈**

□ 연계 가능 시기 : 입주 즉시

□ 연계 방법

○ 시군별 관할 보건소 '생활터전 건강지원서비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서비스 지원 요청

4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어르신문화활동가 양성(문체부)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어르신문화활동가 양성 및 공감적 참여를 통한 어르신들의 자발적·자생적 문화생태계 조성

□ 지원대상 및 조건 : 60세 이상 어르신

□ 사업수행기관 : 한국문화원연합회

□ 사업내용

○ 어르신들이 문화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 분야별 전문강사에 의한 음악, 연극, 무용, 사진, 공예, 문화해설사 등 어르신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문화소외지역·시설 등의 어르신을 위한 강사 파견 가능

* 어르신문화프로그램 : 어르신문화활동가양성, 어르신 문화나눔 봉사단, 어르신 문화동아리, 어르신 문화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어르신 문화일자리, 어르신 문화콘텐츠 개발

2. 서비스 프로그램 연계 방법

□ 연계 가능 시설 : **공동생활홈**

□ 연계 가능 시기 : 매년 상반기

□ 연계 방법

○ 사업추진단체인 각 지역의 지방문화원과의 협의하여 상반기(2~3월 중) 사업 공모 시 지방문화원을 통해 한국문화원연합회로 사업신청 가능

○ 어르신 참여인원 및 교육시수 등의 프로그램운영 최소기준(19명-43시간, 27명-61시간)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지방문화원과 협의된 사업계획서 심사 진행 후 지원여부 결정

(문의처 :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 02-704-4311)

5	문화 이모작(문체부)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의 문화·인력 자원 활용, 문화자생력 확보 및 지역문화 활성화

□ 지원대상 및 조건 : 권역별 공모로 선정

□ 사업수행기관 : 지역문화재단

□ 사업내용

○ 교육과정 운영

- 기초교육과정 : 권역별 지역단위로 지역문화기관과 함께 예비 문화활동가, 지역주민, 마을리더 등을 대상으로 기초교육 시행(지역별 40명, 총 160명 규모)
- 집중교육과정 : 기초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사업 개발 워크숍진행(지역별 20명, 총 80명)

○ 기획사업

- 집중과정에서 작성된 사업계획서 중 심사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자원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민의 자발적인 문화발전 의지를 신장시킬 수 있는 실현가능한 사업 지원(지역별 4~5개 사업 내외)

2. 서비스 프로그램 연계 방법

□ 연계 가능 시설 : **공동생활홈**

□ 연계 가능 시기 : 매년 하반기

□ 연계 방법 : 기획지원사업 선정 시 공동생활홈에서 진행계획 사업에 대해 우선 선정

○ 집중과정이 하반기(5월~7월 중)에 추진되므로 교육 기간 중 고령자 지원 사업설명을 통해 연계 추진

(문의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이모작담당 02-2669-9827)

6 농산어촌 이동형 문화예술교육(문체부)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문화적 기반이 취약한 농산어촌 및 기타 문화소외지역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

□ 지원대상 및 조건 : 접근성이 취약한 농산어촌의 아동 및 노인

□ 사업수행기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사업내용

○ 버스의 공간적 특수성을 활용하여, 참여자에게 짧지만 인상 깊은 경험으로 남을 수 있는 독특하고 흥미로운 문화예술체험 활동 진행

- 세부 사업내용은 추후 확정예정

- '14년 사례

권역	세부지역	대상	기관	모집방안
A권역	**강원, 경북**	노인	노인복지기관, **경로당**	- 기초지자체 협조 (예정)
B권역	경기, 충청	아동	아동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협조 (예정)
C권역	전라, 경남	아동		
ㅇ 농산어촌 : 행정주소 상 읍·면·리 보유 지역 ㅇ 기타 문화소외지역 :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서비스 프로그램 연계 방법

□ 연계 가능 시설 : **공동생활홈**

□ 연계 가능 시기 : 매년 하반기

□ 연계 방법

○ 하반기(6월~7월 중)에 신청서 접수(한국문화예술진흥원) 및 선정, 예술체험버스 노선도에 반영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회교육팀 02-6209-5952)

(공식홈페이지: http://artebus.arte.or.kr , 검색어-움직이는 예술정거장)

7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문체부)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 지원

□ 지원대상 및 조건 : 60세 이상 어르신

□ 사업수행기관 : 국민생활체육회

□ 사업내용

○ 어르신 생활체육종목 보급

- 어르신 대상 교실 강습 : 13종목 568개소 운영 사업기간 : 교실별 주 1~2회 / 3~6개월 운영

○ 종목별 지도자 강습회 : 종목별 어르신 지도자 강습회 실시

- (종목) 게이트볼·에어로빅스체조·정구·당구·국학기공·우슈·그라운드골프·파크골프·댄스스포츠·검도

○ 어르신야외체력교실 운영 : 16시·도 100개소 운영

○ 야외체력교실 어르신전담지도자 교육 실시 : 3월 중, 150여명

2. 서비스 프로그램 연계 방법

□ 연계 가능 시설 : **공동생활홈**

□ 연계 가능 시기 : 매년 4월~11월

□ 연계 방법

○ (참여절차)

- 지원단체 추천(해당 지자체 →시군구 국민생활체육회) → 검토 및 승인(국민생활체육회→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시행

○ (참여방안)

- 지원단체 선정을 위해 해당 시군구 생활체육회에 추천
- 어르신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시, 직접 참여 및 소관분야 전문가 지원
- 지자체 및 보건소의 '어르신돌봄서비스'와 연계한 야외이동식체력향상교실 등 사업 안내 및 홍보 지원
- 시군구청 및 관할 보건소에 어르신 체육상담사 배치 지원

* 어르신 교실 운영현황,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등 상담
(문의처 : 국민생활체육회 종목육성부 02-2152-7328)

8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문체부)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생활체육 현장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 참가자에게 체육 활동 참여 동기부여 및 체계적인 생활체육 지도

□ 지원대상 및 조건 : 자치단체경상보조(정률 50%)

□ 사업수행기관 : 17개 시·도/시도 및 시군구 생활체육회

□ 사업내용

○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지도

- 지도시간 : 1일 4시간 이상(2개소)
- 지도장소 : 경로당, 노인복지관, 양로원 등
- 지도종목 : 지도자 전공종목 및 지역주민 선호종목 함께 지도가능

2. 서비스 프로그램 연계 방법

□ 연계 가능 시설 : **공동생활홈**

□ 연계 가능 시기 : 연중

□ 연계 방법 : 고령자가 모이는 공동시설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지도

○ (지원절차) 지자체 지도자 배치 수요 조사 → 문체부 지도자 배치 계획 확정 통보 → 지자체 사업비 지원 → 사업실시 → 평가 및 환류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4-203-3133)

9	가사도우미(농식품부)

<담당부서 :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농어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 지원대상 및 조건 :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읍·면지역 경로당 등

□ 사업수행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내용

○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취사, 세탁, 청소, 목욕 등 가사서비스 제공

- 가사도우미 활동비 10,000원/일 기준 국고 70%(농협 30%)
- 지원기간 : 최대 12일(경로당은 24일)

2. 서비스 프로그램 연계 방법

□ 연계 가능 시설 : 고령자 **공동생활홈**(경로당) 시설

□ 연계 가능 시기 : 연중

□ 연계 방법

○ 지역농협 또는 농협 농촌지원부(02-2080-5635) 에 가사도우미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시 지원 가능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5)

10 농촌사랑 의료지원(농식품부)

<담당부서 :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의료서비스 낙후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으로 농업인의 건강증진, 보건향상 등 농촌복지 구현

□ 지원대상 및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장애우 및 지역적, 경제적, 건강상 등의 이유로 평소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촌취약계층 농업인 등

□ 사업수행기관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 사업내용

○ 의료기관이 직접 농촌현장을 방문하여 진료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고령 어르신 등 농촌 취약계층 농업인 우선 지원

2. 서비스 프로그램 연계 방법

□ 연계 가능 시설 : **의료지원 실시장소에 인근에 있는 시설**

□ 연계 가능 시기 : 농촌사랑 의료지원 실시 중(3~12월)

□ 연계 방법

○ 농촌사랑 의료지원 사업 실시지역 내에 공동생활홈 등의 시설이 있을 경우 **지역단위 농협과 협조**하여 해당시설 이용자 의료지원 가능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5)

□ 참고문헌

○ 강병필 외. 2005. 농촌마을 공동시설의 계획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 김강섭 외. 2010. 농어촌지역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주거 모델 개발 연구.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 김광선 외. 2012. 농촌 공동시설의 유휴화 실태와 활용 증대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 외. 2012. 농촌지역 마을회관 이용 실태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복희. 2007. 농촌지역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맞춤형 집단공동급식 프로그램 모형 개발. 보건복지부.

○ 김승근. 2013. 재생을 통한 농어촌 마을형 공동생활 홈 조성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5권제1호

○ 김승근 외. 2013.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모델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김진환 외. 2013.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농촌 공동이용시설물 리모델링 방안.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 김태완 외. 2009. 농어촌의 보건복지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 김현진 외. 2006. 농촌노인의 노인공동주거에 대한 의식 및 요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17권제3호

○ 남윤철. 2012. 농촌지역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사례와 개선방향.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제14권제2호

○ 농림축산식품부. 2014. 고령자 지원시설 현황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 농림축산식품부. 201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 박찬성. 2008. 커뮤니티센터로서 농촌 마을회관의 복합화에 따른 이용실태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박헌춘 외. 2014. 농촌지역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 송미령 외. 2001. 농촌공동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찬옥 외. 2006. 농촌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마을회관의 공간 활용방안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이기용. 2015. 고령화시대 농촌마을 공동생활 공간 개발에 관한 연구. 동신대 박사학위논문
○ 최병숙 외. 2006. 농촌 마을회관의 노인복지서비스 공간으로의 활용방안 - 평면의 이용행태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 홍찬선 외. 2005~2006. 고령화 농촌마을 주민의 상호care 시스템 및 주거개선에 관한 연구. 농림부·한국농어촌공사

연 구 참 여 자

목 차	소 속	참여자
1장 서론	농어촌연구원	김진환
2장 농촌 공동시설 관련 이론적 고찰	농어촌연구원	김진환 윤상헌
	㈜마을제작소 강동대학교	박중신 김승근
3장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농어촌연구원	김진환 이정환 이일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강동대학교 영남대학교 경남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카톨릭관동대학교 한경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양금석 김승근 도현학 박선욱 정건채 조원석 이을규 남해경 장택주 길종원
4장 단계별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농어촌연구원	김진환
	㈜마을제작소	박중신
5장 결론 및 제언	농어촌연구원	김진환

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발 행 처

연구과제명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건축계획기준 개발	
발 행 일	2014. 12
발 행 인	박 정 환
발 행 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해안로 391번지
	전 화 031 - 400 - 1700
	FAX 031 - 409 - 6055

■ 이 책의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단, 이 책의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이 가능합니다.